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5. 2

금융위원회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내실있는 평가시스템 구축

○ **(자문 기능 강화)** 각계의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전현직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위원을 위촉**하여, 금발심 회의와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간 **연결성 강화**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컨설팅 기능 제고**

⇒ 단순 사후 평가에 그치지 않고,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피드백기능 강화

○ **(종합적 평가지표) 계획의 이행도, 성과지표 달성도** 뿐 아니라, **정성적인 효과**나 **계획·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중간점검 활성화

○ **(지속적 내부점검) 매주 위원장 주재**로 개최되는 **「주간업무회의」**(국장급 이상 간부 참석)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요 정책의 이행실적을 점검**('24년 총 51회 개최)

- 미진 사항에 대해 **부처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회의 직후 **주요 내용을 각 실·국에 전파**하여 후속조치 촉구

□ 사후적인 환류 시스템 강화

○ **(정책 반영)** 자체평가 결과를 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반영, '25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에 참고하는** 등 정책의 환류기능 강화

- 미흡과제의 경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제언** 등을 토대로 **보완·개선방안을 제시** 및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고 **과제간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평가항목**의 점수는 **평가자별 및 구간별로 강제배분**(상대평가)

- 필요시 관리과제의 문제점 진단, 성과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가 가능하도록 **정성적 측정방법을 병용**

□ 평가방법

○ 정책담당자 및 평가총괄팀의 **내부적인 평가지원**과 함께 자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

○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배분

< 평가등급 분포 기준(국조실 지침 의거) >

※ 동점 과제는 「2024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의 '5% 범위 내 탄력적 적용 원칙(46쪽)'에 따라 같은 등급 부여

순위 누적 %	등급명	총 34개 관리과제
~상위 5%이내	매우 우수/ 1등급	1위
5%초과 **~20%이내**	우수 / 2등급	2 ~ 7위*
20%초과 **~35%이내**	다소 우수/ 3등급	8 ~ 11위
35%초과 **~65%이내**	보통 / 4등급	12 ~ 23위**
65%초과 **~80%이내**	다소 미흡/ 5등급	24 ~ 27위
80%초과~**95%이내**	미흡 / 6등급	28 ~ 32위
95%초과 ~	부진 / 7등급	33 ~ 34위

* 공동 6위(86.25점) 과제 2개 '우수' 등급 부여

** 공동 22위(72점) 과제 2개: '보통' 등급 부여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총 34개 관리과제 38개 성과지표

○ 평가지표

- Ⅰ계획수립의 적절성*(30점), Ⅱ계획대비 성과 달성도(50점), Ⅲ포괄적인 정책효과성(2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계획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 계획 수립 단계에서 외국 사례·통계 현황 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적 충실성**을 확보했는지 여부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 상대평가 항목**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 상대평가 항목**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계획대비 성과달성도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 과제별 **추진계획의 준수** 여부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 상대평가 항목**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지표 개선** 및 **정성적 정책효과 발생** 여부

I. 계획 수립의 적절성

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table>
<tr>
<td>측정방법</td>
<td>
○ 계획수립 단계에서 외국 사례·통계 현황 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적 충실성을 확보했는지 여부

<table>
<tr><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td></tr>
<tr><td>ⓑ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실시 (공청회, 현장간담회 등)</td></tr>
</table>

* ‘23년도 이전부터 진행해오던 정책과제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24년 이전)에 실시한 것을 실적으로 인정
⇒ 상황변화로 새로운 조사·의견수렴이 필요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감점 요인

<table>
<tr><th>판단근거</th><th>점수</th></tr>
<tr><td>- ⓐ, ⓑ 모두를 실시했으며
- 사전조사·의견수렴이 충분히 계획수립에 반영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td><td>8~10점</td></tr>
<tr><td>- ⓐ, ⓑ 모두를 실시했으나
- 형식적으로 시행되어 계획수립에 실질적인 반영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td><td>4~7점</td></tr>
<tr><td>- ⓐ, ⓑ 중 하나라도 시행되지 않은 경우</td><td>1~3점</td></tr>
</table>

○ 과제의 특성상 사례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의견수렴이 불필요한 경우, 계획수립 과정 전반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여 점수부여
</td>
</tr>
<tr>
<td>실적 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td>
<td>
- ⓐ, ⓑ 관련 실적을 각각 요약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 통계자료나 사례조사 등 분석결과
공청회/현장간담회/협의회/전문가회의 등 개최계획 또는 결과보고서

※ 과제의 특성상 사례분석이 불가능 하거나 의견수렴이 불필요한 경우
①불가능/불필요한 사유와 ②전반적인 계획수립과정을 작성
</td>
</tr>
</table>

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

측정방법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강제배분(상대평가) 지표**

판단근거	배분비율	점수
- 과제 간 **「2024년도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과제추진계획(분기별)을 비교	**30%**	**8~10점**
- 추진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이행난이도가 적절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순위를 나열하여	**50%**	**4~7점**
상위 30% → 8~10점 중간 50% → 4~7점 하위 20% → 1~3점 부여	**20%**	**1~3점**

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

측정방법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강제배분(상대평가) 지표** - 단, 사회적 가치 실현(18페이지 참조) 관련 성과지표라 판단되는 경우 상대평가에 따른 배점 배분 후 추가적으로 0.5점 가점 부여

판단근거	배분비율	점수
- 과제 간 **「2024년도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비교	**30%**	**8~10점**
- 지표가 **정책목표를 잘 대표하고 있는지 목표달성 난이도가 적절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순위를 나열하여	**50%**	**4~7점**
상위 30% → 8~10점 중간 50% → 4~7점 하위 20% → 1~3점 부여	**20%**	**1~3점**

II. 계획대비 성과 달성도

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

<table>
<tr>
<td>측정방법</td>
<td>
ㅇ 과제별「2024년도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분기별)의 준수 여부
<table>
<tr><th>판단근거</th><th>점수</th></tr>
<tr><td>-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에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을 완료한 경우</td><td>14~20점</td></tr>
<tr><td>-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 이상인 경우</td><td>7~13점</td></tr>
<tr><td>-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 미만인 경우</td><td>1~6점</td></tr>
<tr><td>[가점] 3조항 이상의 법률 제·개정 완료
3조항 미만의 법률 제·개정 완료
시행령·규정 제·개정 완료
내부지침·기준 제·개정 완료</td><td>+5점
+3점
+2점
+1점</td></tr>
</table>
ㅇ 일정지연이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
</td>
</tr>
<tr>
<td>실적
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td>
<td>
- 추진계획 이행 실적을 각각 요약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 가점요인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을 경우 별도로 강조하여 기재 필요
※ 일정지연이 발생했고 이것이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상세히 작성
</td>
</tr>
</table>

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

<table>
<tr>
<td>측정방법</td>
<td>
○ 과제별「2024년도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목표 목표치 달성 여부

* 성과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
성과지표 목표 달성율은 여러 지표의 '평균치'로 계산

** 성과지표가 수치가 아닌 '000 방안 마련', '000 시행령 개정' 등
All or Nothing의 성격을 가진 경우
목표를 달성했으면 100%
달성하지 못했으면 기울인 노력을 토대로 달성율을 판단

<table>
<tr><th>판단근거</th><th>점수</th></tr>
<tr><td>-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 했으며
- 목표치 달성 이후 모니터링·홍보활동,
법안통과를 위한 대국회활동, 하위규정 제·개정준비 등
사후적인 관리 노력이 충실히 이루어진 경우</td><td>25~30점</td></tr>
<tr><td>-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 했으나
- 목표치 달성 이후 모니터링·홍보활동,
법안통과를 위한 대국회활동, 하위규정 제·개정준비 등
사후적인 관리 노력이 부족하다 판단되는 경우</td><td>20~24점</td></tr>
<tr><td>-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90% 이상 ~ 100% 미만 달성</td><td>16~19점</td></tr>
<tr><td>-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90% 미만 달성</td><td>15점 이하</td></tr>
</table>

○ 목표치 달성 실패가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
</td>
</tr>
<tr>
<td>실적
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td>
<td>
-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과 관련된 증빙자료 첨부

※ 목표치 100% 달성에 실패했고 이것이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상세히 작성
</td>
</tr>
</table>

III. 포괄적인 정책 효과성

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

<table>
<tr>
<td>측정방법</td>
<td>
ㅇ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지표 개선 및 정성적 정책효과 발생 여부
<table>
<tr><td>ⓐ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td></tr>
<tr><td>ⓑ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td></tr>
</table>
- ⓐ 성과지표로서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관리과제 추진으로 개선되는 계량화된 지표
ⓑ 통계·수치 등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 기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
※ 강제배분(상대평가) 지표
<table>
<tr><th>판단근거</th><th>배분비율</th><th>점수</th></tr>
<tr><td rowspan="3">- ⓐ, ⓑ 두 가지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순위를 나열하여
상위 30% → 14~20점
중간 50% → 7~13점
하위 20% → 1~6점 부여</td><td>30%</td><td>14~20점</td></tr>
<tr><td>50%</td><td>7~13점</td></tr>
<tr><td>20%</td><td>1~6점</td></tr>
</table>
</td>
</tr>
<tr>
<td>실적 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td>
<td>
- 계량화된 성과 작성시 '개선'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작성
* 예) 최근 5년치 수치 제시
- 국민불편 해소·국민편익 증진 관련 성과 작성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 위주로 작성
</td>
</tr>
</table>

2. 평가결과

(1) 총 평

□ ‘24년도 총 22개 과(3팀)의 34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1개(3%), 우수 6개(18%), 다소 우수 4개(12%), 보통 12개(35%), 다소 미흡 4개(12%), 미흡 5개(15%), 부진 2개(6%)로 나타남

- **우수 이상 과제**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금융·통신채무의 일괄 채무조정」, 「DSR 규제 내실화」, 「마이데이터 2.0 추진」 등이며,

- **미흡 이하 과제**는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 다양화」,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온라인 금융상품·서비스의 다크패턴 제한」, 「신탁·랩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외국계 금융사의 애로사항 해소」,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 활성화」,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등인 것으로 평가됨

⇒ 미흡 이하 과제의 보완필요사항을 분석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관리함으로써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 **금융안정을 위한 관리과제**(「DSR 규제 내실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등)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관리과제**(「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마이데이터 2.0 추진」 등)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가 우수평가를 받아 지난해의 노력을 인정받음

□ 총 34개 관리과제의 38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약 82%로

- 31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7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22년도	23년도	24년도
성과목표 달성률	91%	95%	82%
총성과지표 개수	42개	39개	38개
총성과관리 과제수	34개	31개	34개

-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통계 집계 지연**(「차주의 상시적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공동조사 건 우선 처리로 인한 진행 지연**(「불공정거래 사전감시·사후제재 강화」), **입장 차이 해소 및 법령 개정 일정 조정**(「기업 내부관리체계 개선」)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지표명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미달성 원인
은행권 자체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중 주기형/순수고정 비중	21%	집계중	-	- 현재 금감원을 통해 관련 통계를 집계 중이며, 금융권 업무보고서에 기반하여 통계를 산출하므로 2월 중 집계가 완료될 전망임 - 다만, 저번('24.6월 기준) 반기실적상 은행권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 고려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2월 집계될 은행권 자체 주담대에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건수	30만명	25만명	83%	- 신청 확대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한 집중 홍보 * 옥외, 포털사이트, 눈(카카오·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라디오, 일간지 광고 등 ** 사업홍보 및 신청절차 안내 영상(KTX 역사, 서울지하철), 온라인 배너, 카드뉴스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 등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접점 홍보(포스터, 리플렛 배포 등)
예금중개서비스 제도화 TF 개최 횟수	6회	4회	67%	- '24년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예금 중개 관련 리스크 관리방안 등 추가 정비 필요
채무자대리인 법률구조실적	3,236건	2,934건	91%	- 잠정 실적으로 추후 수정 예정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방안 마련	마련	마련	일부 완료	-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방안의 경우, 법령정비 기한(~25.9월)까지 운영과정상 제도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마련할 예정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발굴 건수	4건	3건	75%	- 금융위·금감원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既착수된 공동조사 건을 우선 처리(공동조사 사건 종결 : '23년 1건 → '24년 3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개정 완료	방안 발표 후 입법 예고 준비중	일부 완료	- 주기적 지정유예에 대한 기업계와 회계업계의 입장 차이가 첨예했던 만큼 '24년 내 합의된 방안 마련도 큰 의의가 있음 -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기업계, 회계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상황 - '25.10월 중 지정유예를 결정할 것인 만큼 '25년 상반기 중 외부감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음

(2) 주요성과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등 **7개 과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추가의견도 제시됨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 '24.5월 말 밸류업 공시 시행 이후 102사,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 41% 이상의 기업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는 등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가 우수하다는 평가

- 장기적으로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된다는 점을 시장에 인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24.10월 말 시행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맞춰 TF·간담회를 개최하여 하위 법규를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평가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경쟁 원리를 활용하여 '24.12월 기준 대출 금리가 평균 1.53%p 하락하였고 약 30만명이 16.4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하는 등 서비스 이용 성과가 우수하다는 평가

- 특정 금융기관으로의 자금 집중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

○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24년 5개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추천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과계획을 초과 달성하는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

○ **(금융·통신채무의 일괄 채무조정)** '24.6월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이 시행된 후 '24.12월 말까지 38,037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본 점에서 국민편익 증진 정도가 우수하다는 평가

○ **(DSR 규제 내실화)** '24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여 기준금리 인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정책효과가 우수하다는 평가

- 향후 DSR 규제의 예외 항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추가 의견

○ **(마이데이터 2.0 추진)** '24년 1분기 동안 TF 회의를 7회 개최하여 이용자 편의성, 정보보호, 업권의 이해관계를 두루 고려해야 하는 제도적 장벽에도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

❶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Ⅳ-1-①)

【 주요 성과 】

□ **(밸류업 지원) 상장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2.26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 ㅇ **(지원체계 구축)** 거래소 **"밸류업지원부", "밸류업자문단"** 신설(3.7일)
- ㅇ **(인센티브)**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및 **8종 인센티브** 방안 발표(4.2일)
- ㅇ **(밸류업 공시)**「기업가치 제고 계획」**가이드라인·해설서** 마련(5.27일)
- ㅇ **(교육·홍보)** 중소기업 대상 밸류업 공시 **맞춤형 컨설팅** 및 **영문번역**, 공시담당자·이사회 대상 **교육·안내** 프로그램 개시(5.28일)

□ **(밸류업 투자유도)** 기업의 **밸류업 노력·성과**에 대해 **시장의 평가** 및 **투자**를 **유도**하여 **선순환 체계 구축**

- ㅇ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밸류업 계획 수립·시행·소통 여부를 고려하며 투자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3.14일)
- ㅇ **(투자지표 비교)** 기업별 주요 **투자지표**(ROE·PBR·PER·배당성향 등)를 **비교 공표**하는 통합홈페이지 개설(5.27일)
- ㅇ **(밸류업 지수 및 연계 ETF)** 밸류업 우수·기대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9.24일), 연계 ETF·ETN 및 선물 상장(11.4일)
- ㅇ **(밸류업 펀드)** 거래소·증권금융·예탁원·코스콤·금투협회 공동으로 **밸류업 펀드**를 **조성**하여, **밸류업 공시기업** 및 **밸류업 ETF** 등에 **투자**

【 달성 원인 】

□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우수**

- ㅇ `24.5월말 밸류업 공시 시행 이후 102사*,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 41% 이상의 기업이 밸류업 공시 참여(12.31. 기준)

  * 본공시 94개사, 예고공시 8개사
- ㅇ 기업간담회(33회), 교육·설명회(43회), 중소기업 대상 1:1컨설팅(55개사) 등 밸류업 지원 노력 추진

□ **정책의 추진 목적 우수**

- ㅇ 기업의 주주환원·소통 문화 확산* 및 증시 체질개선을 통한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기여

  * `24년 자사주매입 전년대비 2.3배 증가(10.6조원↑, `09년 이후 최고치), 자사주소각 2.9배 증가(9.1조원↑, 최근 7년 중 최대), 상장기업 현금배당 45.8조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

❷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Ⅱ-1-③)

【 주요 성과 】

□ **15년간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이 개정('23.10월) 된 이후, **실제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

- ㅇ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의료계, 보험업계**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운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 이슈를 조정
- ㅇ **'이해관계자 협의체 TF'**를 구성·운영하여 **전송대행기관 지정,**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비용부담** 등 **주요 쟁점사항**을 **협의**
- ㅇ **EMR**(전자의무기록) **업체 간담회**('24.9.12., 11.5.) 등을 통해 **EMR업체** 및 **요양기관**의 **참여 유도방안**을 논의
- ㅇ **보건소**는 **관계부처**(복지부 등) **협의**('24.8월)를 통해 **모두 참여 합의**

□ **'24.10.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과 **보건소**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실손24")**를 **전격 시행**

- ㅇ **'25.1.17일 기준 총 4,406개 요양기관**(병원 916개, 보건소 3,490개)이 **참여**를 **확정** → **전체 요양기관**(7,725개)의 **62.3%** 수준(청구비중 기준)
- ㅇ **회원가입자 수 94.8만명, 청구 완료건수 9.7만건, 노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녀·부모** 등 **제3자 청구기능** 제공(약 1.4만건 청구)

【 달성 원인 】

□ **분기별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ㅇ **(구체성)** 개정 보험업법 위임사항 등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법상 시행시기('24.10.25일)에 맞추어 실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을 적기에 개시하여 정책과제의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
- ㅇ **(적극성)** 보험업계,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책과제로서, 법 개정 취지를 지속 설득하는 등 갈등을 조정하여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실제 시스템을 오픈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우수**

- ㅇ 보험업계는 물론, 의료계, EMR업체와 적극 소통하여 보험업법상 시행일인 '24.10.25일에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을 적기에 오픈

(3) 개선·보완 사항

□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 활성화」 등 7개 과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고려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보완 추진

○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 다양화)**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는 높으나, 계량적인 성과 제시 부족하다는 평가

- 향후 플랫폼 운영경과 등을 토대로 ATS 및 비상장주식 플랫폼 관련 운영실적 등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모색하여 추가 예정

○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관련된 실제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 금융사의 애로사항·개선 필요사항 검토를 포함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목표치를 더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검토할 예정

○ **(온라인 금융상품·서비스의 다크패턴 제한)** 금융업권에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초안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가이드라인 보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가시적인 성과 발표가 미흡하다는 평가

- 금융업권 특성을 잘 반영한 온라인 금융상품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

○ **(신탁·랩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은 우수하나, 성과지표를 단순하게 규정 개정으로 설정한 것은 개선 필요하다는 평가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이후 제도안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위법·위규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

○ **(외국계 금융사의 애로사항 해소)**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사항 관련 구체적인 건의내용 및 검토결과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평가

- 금융소비자 보호완화 등 수용곤란 과제에 해당하는 외국계 금융회사 건의사항에 대해 향후 금융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애로해소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와 지속 소통할 예정

○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 활성화)** STR 건수는 전년 대비 22.3% 증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보고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하다는 평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년 경과 이후 실시되는 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안건을 추가하여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의심거래보고를 활성화할 예정

○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미흡하고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는 평가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 및 대부업법 시행 등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실태조사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용자에 대한 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을 진행할 예정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평가결과
DSR 규제 내실화	우수
차주의 상시적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보통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우수
금리공시제도 보완 통한 은행권 금리경쟁 촉진	보통
중소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	다소 미흡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새출발기금)	다소 우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5대 중점분야 정책자금공급액 확대	다소 미흡
중소·중견기업 지원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보통
미래성장동력 제고 및 혁신적 벤처육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조성	보통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제도화 추진	다소 우수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우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우수
마이데이터 2.0 추진	우수
핀테크 기업 육성 및 제도적 기반 강화	보통
가상자산 규율체계 확립	다소 우수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미흡
외국계 금융사의 애로사항 해소	미흡

관리과제명	평가결과
온라인 금융상품·서비스의 다크패턴 제한	미흡
2030 청년 대상 금융교육 추진	보통
금융·고용 복합 지원	보통
금융·통신채무의 일괄 채무조정	우수
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다소 우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부진
신·변종 보이스피싱 대응	보통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 활성화	부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	매우 우수
ATS,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 개선	미흡
불공정거래 사전감시·사후제재 강화	보통
공매도 제도개선	보통
신탁·랩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미흡
상장 공모펀드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다소 미흡
전환사채(CB) 불공정거래 방지	다소 미흡
주주·기업가치 제고 위한 자사주 제도개선	보통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독립성 강화 등 기업 내부관리체계 개선	보통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Ⅰ-1-①	DSR 규제 내실화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스트레스 DSR 도입**(2월) 등 **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24년 중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 관리***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 ('21)98.7 ('22)97.3 ('23)93.6 **('24.3Q)90.8**

- **글로벌 기준금리 피벗***(Pivot) 등 **어려운 관리여건** 하에서도 '24년 **금융권 가계대출**은 **+41.6조원 증가**(전년대비 +2.6%)

* 시장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연초부터 대출금리 하락
예금은행 주담대금리 (%) : ('23.12)4.16 → ('24.2)3.96 → (4)3.93 → (6)3.71 → (8)3.51

○ **2단계 스트레스 DSR**(9월) **및 탄력 운영***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서울 APT**가 **하락 전환***하는 등 **부동산 과열 방지**

* 당시 수도권 중심 부동산 과열에 대응하여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 → 1.2%로 상향 적용하는 등 규제를 탄력 운영

** 월별 가계대출 증감(조원): (4)+4.1 (5)+5.3 (6)+4.2 (7)+5.2 (8)+9.7 **(9)+5.2 (10)+6.5 (11)+5.0 (12)+2.0**

*** 전월比 실거래가 증가율(%): ('24.1)+0.3 (2)0.5 (3)0.1 (4)0.7 (5)0.9 (6)1.6 (7)2.2 (8)1.5 **(9)△0.01**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정책효과 및 금융권 자율관리 등에 기인

○ 이와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통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10.11, 11.28 각 △25bp)할 수 있었던 **기반**을 **조성***

*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한은, 10.11일 기준금리 인하 결정 배경 中)

** 주택가격 및 가계대출도 **거시건전성정책이 원활히 작동**하면서 당분간은 **가계부채 리스크가 관리**되고 있다고 보았음(한은, 11.28일 기준금리 인하 결정 배경 中)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8.25/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全 금융권의 업권별·대출종류별 가계대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 : I-1-①-I-1-ⓐ-1~12-(보도자료) 월별 가계대출 동향 발표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관계부처(기관)·금융권과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 : I-1-①-I-1-ⓑ-1~2- (보도자료)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8.5/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시 금융업권별 준비상황, 금융소비자의 적응도,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용범위와 강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 스트레스 DSR 제도를 세 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은행권 주담대부터 도입한 이후 2금융권 및 기타대출로 순차적 확대
<table>
<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
<tr><td rowspan="3">1/4분기</td><td>DSR 적용범위 확대 방안 검토</td><td>‘24.1월~</td></tr>
<tr><td>스트레스 DSR 1단계 도입</td><td>’24.2월</td></tr>
<tr><td>자행대환/재약정시 기존 DSR 적용되는 한시조치 종료</td><td>’24.3월</td></tr>
<tr><td>2/4분기</td><td>스트레스 DSR 1단계 안착상황 점검</td><td>’24.4~6월</td></tr>
<tr><td>3/4분기</td><td>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td><td>‘24.9월</td></tr>
<tr><td>4/4분기</td><td>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준비 등</td><td>‘24.9~12월</td></tr>
</table>
- DSR 제도를 통한 대출한도 산정시 현재금리만을 근거로 판단하므로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산출할 수 없음 →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최초로 도입</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8/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DSR, 즉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 정착을 통해 달성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가계대출을 하향 안정화하여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고, 가계의 소비제약을 완화하려는 것임
- (적극성) 동 목표수준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속 하향 안정화(‘24년 기재부 예상 경상성장률 4.9%)하기 위한 수치로서 ‘24년 중 기준금리 인하 시작 등 관리 여건이 녹록치 않음 등을 고려시 도전적인 목표임</td></tr>
</table>

<table>
<tr>
<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8.25/2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스트레스 DSR 1단계 도입</td><td>(2.26) 스트레스 DSR 1단계 도입</td><td>완료</td></tr>
<tr><td>스트레스 DSR 1단계 안착상황 점검</td><td>(8.00) 가계부채 점검회의</td><td>완료</td></tr>
<tr><td>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td><td>(9,1일)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td><td>완료</td></tr>
</table>
☞ I-1-①-II-1-1-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
I-1-①-II-1-2- (보도자료)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I-1-①-II-1-3-(보도자료) 가계부채 점검회의 (ST DSR 시행상황 점검 및 2단계 시행 발표)
I-1-①-II-1-4-’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 (하반기 도입방안)
</td>
</tr>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7.25/3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예시: I-1-①-II-2-1- ‘24년 금융권 대출종류별 가계대출 증감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가계대출 잔액</td><td>1,706.7조원</td><td>1,668.6조원</td><td>달성</td></tr>
</table>
ㅇ 추가 설명 사항 (필요시 작성)
- ’24년 가계부채을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
</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16/2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DSR 내실화 등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반을 조성
☞ I-1-①-III-1-ⓐ-1-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8월 동결)
I-1-①-III-1-ⓐ-2-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10월 인하)
I-1-①-III-1-ⓐ-3-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11월 인하)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통한 대외 신인도 제고
☞ I-1-①-III-1-ⓑ-1-(보도자료) 2024년중 가계대출 증감
</td>
</tr>
</table>

Ⅰ-1-②	차주의 상시적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에 기여

*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22말 43.9% → '23말 51.8% → '24.6 55.0% ('24년말 통계는 감독원 집계중) 통상 금융회사 업무보고서를 기반으로 통계를 집계하므로 산출까지 시차 존재 (2월 산출 可)

-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新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은행별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 부여**

* 정책성 주담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의 고정금리 목표비율(30%) 신설 분할상환 목표 비율 설정 (은행)62.5 (보험)77.5 (상호)55.0 등

·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는 **예금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료 산정체계 개편**(3월)

· **고정금리·분할상환 취급실적 우수 금융회사**의 **주신보 출연료율 우대폭**을 0.06%p에서 **0.1%p**로 확대(5월)

- **장기 고정금리 대출 공급**을 위해 **금융회사**가 **장기·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발표**(5월)

* 발행기관 상환청구권, 기초자산집합(주담대)에 대한 우선변제권, 주금공 보증 등 은행채 보다 저리 발행 → 은행은 보다 저금리로 자금조달 可

· **한은 적격담보 인정**(6월), 발행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에 대한 **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9월) 등 **커버드본드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정부 노력** 등으로 **'22~'23년 중 발행량**이 全無했던 **커버드본드**가 '24년 중 **1.68조원** 발행

○ **은행권**에서도 **10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이 **최초**로 **출시***되는 등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시장**의 **저변**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

* 신한은행(8월), 기업은행(12월)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8.5/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변동금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현황·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발굴
☞ I-1-②-I-1-ⓐ-1-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가계부채 점검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
☞ I-1-②-I-1-ⓑ-1-가계부채 점검회의 보도자료</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6.5/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금융권이 고정금리 대출을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감원 행정지도를 통해 목표비중을 설정하고, 실적 달성도에 따라 예보료 차등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
· 커버드 본드 활성화를 추진하여 금융권의 장기·고정금리 자금조달 기반 마련을 지원
<table>
<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
<tr><td rowspan="2">1/4분기</td><td>신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행정지도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td><td>‘24.3월</td></tr>
<tr><td>고정금리 실적에 따른 예보료 차등화 관련 의견수렴</td><td>‘24.2~3월</td></tr>
<tr><td rowspan="3">2/4분기</td><td>신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행정지도 실시</td><td>’24.4월</td></tr>
<tr><td>고정금리 실적에 따른 예보료 차등화 실시</td><td>’24.4월</td></tr>
<tr><td>커버드본드에 대한 주금공 지급보증 규제특례 실시</td><td>‘24.4월</td></tr>
<tr><td>3/4분기</td><td>커버드본드 시가평가테이블 공시</td><td>‘24.9월</td></tr>
<tr><td>4/4분기</td><td>신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행정지도 실적 점검</td><td>24.12월잠정</td></tr>
</table>
- (난이도) 변동금리 위주의 대출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7.25/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그간 금융원은 변동금리 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순수고정금리 대출은 정책모기지 중심으로 운영
· 금융권의 구조개선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 자체 주담대 비중으로 평가 필요
- (적극성)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 자체 주담대 평가는 금년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며, 은행권 순수고정 주담대 비중이 5% 미만(‘23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시 도전적인 목표에 해당</td></tr>
</table>

<table>
<tr>
<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5.25/2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금융권 의견수렴</td><td>2.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td><td>완료</td></tr>
<tr><td>목표비중 행정지도 실시</td><td>4월 4일 행정지도 시행</td><td>완료</td></tr>
<tr><td>커버드본드 시가평가 테이블 공시</td><td>6월 공시 개시</td><td>완료</td></tr>
</table>
☞ I-1-②-II-1-1-(보도자료)가계부채 점검회의
I-1-②-II-1-2-(보도자료)행정지도 시행
I-1-②-II-1-3-금투협 시가평가테이블 공시 추진현황
</td>
</tr>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4.25/3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은행권 자체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중 주기형/순수고정 비중</td><td>21%</td><td>집계중
(2월 중 집계완료)</td><td>-</td></tr>
</table>
ㅇ 추가 설명 사항 (필요시 작성)
- 현재 금감원을 통해 관련 통계를 집계 중이며, 금융권 업무보고서에 기반하여 통계를 산출하므로 2월 중 집계가 완료될 전망임
- 다만, 저번(‘24.6월 기준) 반기실적상 은행권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 고려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2월 집계될 은행권 자체 주담대에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
☞ I-1-②-II-2-1-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실적 (금감원)
</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13.5/2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24년 커버드본드 발행 내역
- 은행권 10년 주기형 주담대 출시
☞ I-1-②-III-1-ⓐ-1-2024년 커버드본드 발행 현황
I-1-②-III-1-ⓐ-2-10년 주기형 주담대 출시 기사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따라 미래 금리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이자부담 변동 리스크 축소
</td>
</tr>
</table>

Ⅰ-2-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23.5.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 **'24.1월**,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을 **주택담보대출('24.1.9~) 및 전세대출('24.1.31~)까지 확대**

○ '24년 중, 서비스 개선과제 지속 발굴·추진

- **4.1일**부터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도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

* 차주 명의의 소유권 등기 및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

- **6.3일**부터는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을 확대**(09~16시→09~22시)

* (현재) 전세계약 2년 가정시,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후~12개월 도과 전까지 가능
(개선) 3개월 이후~18개월 도과 전까지로 갈아타기 기간을 확대

- **9.30일**부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이용 대상에 포함**

○ **'24.12.31일** 누적 기준, 약 **30만명**이 **16.4조원** 규모 대출을 이동

-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한 결과 **대출 금리가 평균 약 1.53%p 하락**하여 **1인당 연평균 174만원 대출 이자 절감**

< 대출 유형별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24.12.31일 누적 기준) >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3개 대출유형 합산(평균)
대출이동 차주	242,014명	40,758명	17,520명	300,292명
대출이동 규모	5조 6,991억원	7조 7,310억원	2조 9,220억원	16조 3,522억원
평균 금리인하폭*	1.60%p	1.47%p	1.47%p	1.53%p
1인당 이자절감액*	60만원	278만원	246만원	174만원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8.75/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23년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주담대·전세대출 등 이용대상 확대방안 마련·추진
☞ I-2-①-I-1-ⓐ-1-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 대환 인프라 운영방안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서비스 이용자 대상 간담회
- 금융위원장 주재, 서비스 이용자 및 금융권 현장 실무자 대상 간담회 개최
☞ I-2-①-I-1-ⓑ-1-[보도자료] 대환대출 개선과제 및 정책담당자 성과보상
I-2-①-I-1-ⓑ-2-[보도자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9/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서비스 이용자 및 금융권 현장 실무자 의견 수렴을 통해 분기별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
<table>
<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
<tr><td rowspan="2">1/4분기</td><td>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td><td>’24.1월</td></tr>
<tr><td>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td><td>’24.1월</td></tr>
<tr><td rowspan="3">2/4분기</td><td>아파트 잔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td><td>’24.4월</td></tr>
<tr><td>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확대 (09~16시→09~22시)</td><td>‘24.6월</td></tr>
<tr><td>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 확대(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td><td>‘24.6월</td></tr>
<tr><td>3/4분기</td><td>실시간 시세 조회 가능 빌라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td><td>‘24.9월</td></tr>
<tr><td>4/4분기</td><td>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 확대 및 편의성 개선방안 지속 모색</td><td>계속</td></tr>
</table>
- (난이도) 기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분기별로 차질없이 이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금융회사,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결제원 등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여 난이도가 높음</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6.25/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중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이용규모, 파급효과가 가장 대표적
- (적극성) ‘23년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규모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td></tr>
</table>

<table>
<tr>
<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9.25/2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td><td>'24.1.9일 출시 완료</td><td>완료</td></tr>
<tr><td>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td><td>'24.1.31일 출시 완료</td><td>완료</td></tr>
<tr><td>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 확대</td><td>'24.4.1 잔금대출 이용대상에 포함
'24.6.3 신용대출 운영시간 확대, 전세대출 이용기간 확대
'24.9.30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td><td>완료</td></tr>
</table>
☞ I-2-①-II-1-1-[보도자료] 대환대출 개선과제 및 정책담당자 성과보상
I-2-①-II-1-2-[보도자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td>
</tr>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8.5/3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I-2-①-II-2-1-[보도참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현황(6.17일 기준)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실적</td><td>4조원</td><td>7.7조원 (6.17일 기준 4.9조원)</td><td>달성</td></tr>
</table>
</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16.25/2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24.12.31일 누적 기준, 약 30만명이 16.4조원 규모 대출을 이동
-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한 결과 대출 금리가 평균 약 1.53%p 하락하여 1인당 연평균 174만원 대출 이자 절감
☞ I-2-①-III-1-1-[보도참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현황(6.17일 기준)
</td>
</tr>
</table>

Ⅰ-2-②	금리공시제도 보완 통한 은행권 금리경쟁 촉진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금융소비자**의 은행간 **금리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은행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추진**

*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22.7월),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방안('23.3월)

○ 금융위·금감원 및 은행권이 TF를 구성하고 **금리공시제도 개선방안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보완 필요과제 추가 발굴·개선** 완료

-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 **구분 공시시 은행별 반영항목**의 **일원화***를 통해 은행간 **비교가능성 제고**

* ❶대출·예금 수요관리 목적으로 반영하는 금리를 우대금리에 가감토록 일원화
❷특정 상품 이용에 따른 우대금리를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않도록 보완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7.5/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금융위, 금감원 및 은행권과 실무 TF를 구성하고. 금리공시제도 보완과제 발굴 추진
☞ I-2-②-I-1-ⓐ-1-대출금리 운영현황 점검결과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은행권 TF를 통해 개선방향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은행별 내부기준 반영 통해 자율개선 유도</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5.75/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은행권 협의를 거쳐 사전에 개선 필요과제 및 이행시기를 구체화하여 추진
· 은행별 금리공시현황 점검결과를 토대로 보완 필요과제를 발굴하고, 발굴과제에 대한 은행별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식 등 확정
· 은행별 내부기준 수정 등 이행 가능시기 등 협의하여 은행별 이행시기 확정
<table><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tr><td>1/4분기</td><td>개선 필요한 은행별 공시방식 보완</td><td>'24.1월말~</td></tr></table>- (난이도) 은행별 금리내역을 공시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음 → 최초로 은행별 공시현황을 세부항목별로 비교하여 합리적 기준을 도출함에 있어 어려움 직면</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6.5/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금리 공시제도의 목적은 소비자의 금리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은행간 금리경쟁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
· 소비자의 금리 비교가능성을 위해서는 은행간 통일된 기준에 따라 금리를 공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목표에 부합
- (적극성) 은행별 금리공시현황 점검을 통해 공시기준을 보완하는 것은 해외 또는 국내 다른 업권에서 유사사례를 찾을 수 없음</td></tr>
</table>

<table>
<tr>
<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6/2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20개 국내은행 공시 방식 보완</td><td>(1.24일) 은행별 내부기준 개정 등 거쳐 보완기준에 따라 모든 은행이 공시 완료</td><td>완료</td></tr>
</table>
</td>
</tr>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4.75/3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리 비교공시 참고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개선사항 반영한 금리현황 공시</td><td>12회</td><td>12회</td><td>달성</td></tr>
</table>
</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11.5/2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금리공시 확대 등 그간의 은행권 경쟁촉진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은행권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는 하락세 지속중
* 은행권 대출금리 추이(신규취급액 기준, %) : (’ 21말)3.25 (’ 22말)5.57 (’ 23말)5.14 (’ 24.11월)4.76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금리공시제도 지속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금리 비교가능성 제고
☞ I-2-②-III-1-ⓑ-1-(보도자료)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I-2-②-III-1-ⓑ-2-(보도자료)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방안
</td>
</tr>
</table>

Ⅰ-3-①	중소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코로나19 이후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은행권이 이자환급 추진

▶ **은행권은 자체재원**을 통한 **소상공인 이자환급 시행**

- **금리 4%를 초과**하는 대출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한 **개인사업자**에게 4%를 초과하여 **1년간 납입한 이자의 90%**를 환급(최대 300만원)

▶ **중소금융권 차주를** 위해서는 **정부가 이자보전 예산*** **3천억원** 확정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최대 150만원)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5.0~5.5%	5.5~6.5%	6.5~7%
환급 규모	0.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1.5%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신청이 필수**이므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전산시스템 구축**(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및 **다중채무자도 1개 금융회사에만 신청**하도록 하여 **이용편의성 제고**

신청서 제출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카드사·캐피탈사	그 외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거래 금융기관 방문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은행권은 4회에 걸쳐 1.47조원* 환급완료하였으며, 중소금융권은 25만여 차주에 총 2,106억원을 환급하여 평균 82만원을 지원

* 총 환급예상액인 1조 5,035억원 중 잔여분에 대한 환급은 '25.1월 내 집행

- 금융권과 정부의 상생금융 확대노력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소상공인·민생경제의 활력을 도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과 집행이 적시에 이루어졌으나 홍보 및 신청 독려 부족으로 신청건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미신청 차주를 대상으로 한 원인분석 후 맞춤형 홍보 방안 마련

- 대출유형별·차주별 맞춤형 안내 메시지 발송 및 안내채널 다양화 추진 등 전략적 홍보 방안

○ 잔여 예산의 효과적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 필요

□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Ⅰ-3-①	잔여예산 활용방안 마련	데이터 오류 등 환급 누락 차주에 추가 지급 ('25.2월말)
		보조금 정산 이후 국고 반납('25.6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8.25/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2금융권 대출현황 전수 조사, ‘중소기업 기본통계’ “산업대분류별·조직형태별·기업규모별 기업수” 등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확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 실시
☞ I-3-①-I-1-ⓐ-1-업권별 대출현황조사
I-3-①-I-1-ⓐ-2-소상공인 기본통계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TF 운영하였으며, 1분기 신청기간 동안에도 일일점검회의(영상)을 통해 이슈발생에 신속대응, 분위원장 주재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4.4)
☞ I-3-①-I-1-ⓑ-1-자영업자·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TF 운영계획
I-3-①-I-1-ⓑ-2-중소금융권 이자지원 사업준비 실무회의 개요
I-3-①-I-1-ⓑ-3-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점검회의(부위원장 점검)</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6.25/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소상공인의 대출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제외업종 등 구별하였으며, 신청방식·재정집행 사후점검 등에 대한 결정 후 분기별 집행방식 결정
<table>
<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세부일정</th></tr>
<tr><td rowspan="3">1분기</td><td>이자환급 신청 방법 등 안내 (시스템 구축 및 매뉴얼 배포 등)</td><td>’24.3.11(월)</td></tr>
<tr><td>이자환급 신청 개시 및 1분기 신청 접수</td><td>’24.3.18(월)~3.26(화)</td></tr>
<tr><td>1분기 이자 환급</td><td>3.29(금)~4.12(금)</td></tr>
<tr><td rowspan="2">2분기</td><td>2분기 신청 접수</td><td>4.1(월)~6.24(월)</td></tr>
<tr><td>2분기 이자 환급</td><td>6.28(금)~7.5(금)</td></tr>
<tr><td rowspan="2">3분기</td><td>3분기 신청 접수</td><td>7.1(월)~9.24(화)</td></tr>
<tr><td>3분기 이자 환급</td><td>9.30(월)~10.8(화)</td></tr>
<tr><td rowspan="2">4분기</td><td>4분기 신청 접수</td><td>10.1(화)~12.31(화)</td></tr>
<tr><td>4분기 이자 환급</td><td>2025.1.7.(화)~1.14(화)</td></tr>
</table>
- (난이도) 사업추진을 위해 금융위·중기부 외뿐 아니라 중진공과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 등 다양한 참여자가 협력해야하므로 원활한 협력을 위한 조율이 필요, 3,600여개 금융회사 창구 교육 및 차주의 신청 독려</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6.5/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차주의 신청’이 필수이므로 이자환급 신청건수는 고금리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의 직접적 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 지표</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적극성) 은행권 이자환급은 자체 재원의 활용으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예산사업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차주의 신청이 필요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신청 독려 필수**</td></tr>
<tr><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6.5/20</td><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 colspan="2">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이자환급 신청 방법 등 안내</td><td>'24.3.11(월)</td><td>'24.3.8</td><td>완료</td></tr>
<tr><td>이자환급 신청 개시 및 접수</td><td>3.18(월)~3.26(화)</td><td>'24.3.18(월)~3.25(월)</td><td>완료</td></tr>
<tr><td>1분기 이자 환급</td><td>3.29(금)~4.12(금)</td><td>3.29(금)~4.5(금)</td><td>완료</td></tr>
<tr><td>2분기 신청 접수</td><td>4.1(월)~6.24(월)</td><td>4.1(월)~6.24(월)</td><td>완료</td></tr>
<tr><td>2분기 이자 환급</td><td>6.28(금)~7.5(금)</td><td>6.28(금)~7.5(금)</td><td>완료</td></tr>
<tr><td>3분기 신청 접수</td><td>7.1(월)~9.24(화)</td><td>7.1(월)~9.30(월)</td><td>완료</td></tr>
<tr><td>3분기 이자 환급</td><td>9.30(월)~10.8(화)</td><td>10.8(화)~10.15(화)</td><td>완료
(신청기한 연장)</td></tr>
<tr><td>4분기 신청 접수</td><td>10.1(화)~12.31(화)</td><td>10.8(화)~12.31(화)</td><td>완료</td></tr>
<tr><td>4분기 이자 환급</td><td>'25.1.7.(화)~1.14(화)</td><td>'25.1.9(화)~1.16(화)</td><td>완료</td></tr>
</table>
☞ I-1-①-II-1-1-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 안내 및 신청개시 보도자료(1분기)
I-1-①-II-1-2-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분기 신청안내
I-1-①-II-1-3-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분기 신청안내
I-1-①-II-1-4-중소금융권 이자환급 4분기 신청안내</td></tr>
<tr><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td>21.5/30</td><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I-1-①-II-2-1-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실적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이자환급 신청건수</td><td>30만 명</td><td>25만 명</td><td>83%</td></tr>
</table>
ㅇ 추가 설명 사항 (필요시 작성)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혜택은 **차주의 신청**이 **필수**인만큼 언론 홍보 외 **별도의 홍보채널이 필수**
- 신청 확대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와 **콘텐츠**** 를 활용한 집중 홍보
* 옥외, 포털사이트, SNS(카카오·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라디오, 일간지 광고 등
** 사업홍보 및 신청절차 안내 영상(KTX 역사, 서울지하철) , 온라인 배너, 카드뉴스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 등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접점 홍보** (포스터, 리플렛 배포 등)</td></tr>
</table>

		- 미신청 차주 샘플링조사를 통해 **미신청사유를 분석**하고 **'24.11월 추가 집중홍보기간** 중 **차주맞춤형 안내(문자 또는 유선전화)** 실시 ☞ I-1-①-Ⅱ-2-2-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집중홍보 회의
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	*12.5/20*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1~4분기 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총 2,106억원** 환급금 지급, **일인당 약 82만원** 이자지원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전산 시스템 구축 및 다중 채무자도 1개 금융회사에만 신청하도록 하여 이용편의성 제고 -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민생경제 활력 제고하였으며, 금융권의 상생금융 확대로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기여 ☞ I-1-①-Ⅲ-1-ⓑ-1-소상공인 이자환급 언론보도

Ⅰ-3-②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새출발기금)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내수회복 지연, 고금리 장기화** 등 **금융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채무조정 신청요건 완화, 취약차주 지원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시행

- (**대상자 확대**) 코로나 이후 계속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원 대상을 **'20.4월 ~'24.6월 중 사업영위자로 확대***

* **(당초)** 코로나19 피해 입증 차주 → **('24.2월)** '20.4월~'23.11월 중 사업영위 차주 → **('24.9.12일) '20.4월~'24.6월 중 사업영위 차주**

- (**폐업자 지원**) 채무조정 대상자의 **실효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의 **취업·재창업 교육과 연계**하여 **원금감면율 우대***(최대 10%)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등 이수시 원금감면율 우대

- (**홍보강화**) 정책을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정책대상자 맞춤형 홍보 진행***

* 새출발기금 협약가입 금융기관, 소상공인 이용 간편결제 서비스(제로페이 등) 등과 연계

- (**신용불이익 해소**) **채권자 변동**에 따라 발생가능한 **신용평점상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정원·CB사와 협력하여 **신용평가모형을 정비**

* 채무조정 과정에서 새출발기금이 매입하는 것이 불리한 채권자 변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존재

○ 새출발기금 **이용자** 및 **상담사 등**이 참여한 **현장소통**을 활용하여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제도보완 추진**

- (**협약기관 확대**)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가입을 독려**하여 **'24년 1000여개** 기관 추가가입(총 3,321개)

* (출범시) 960개 → ('22년말) 1,829개 → ('23년말) 2,340개 → **('24년말) 3,321개**

- (**채무조정 기준정비**) 신규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정비하여, **신규대출 비중이 30% 미만**인 경우 **채무조정을 허용***

* 당초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신규대출은 채무조정에서 제외

○ **전년대비 신청규모 81% 증가**('23년 3.2조원 → '24년 5.7조원)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7.75/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새출발기금 민원 및 한국은행 나이스 등의 통계자료 등을 통해 정책대상자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설정
☞ I-3-②-I-1-ⓐ-1-금융안정보고서(한국은행, '23.12월)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현장소통) 여러차례 현장소통을 진행하여 이용자 및 상담사가 체감하는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
- (실무협의회) 대표 협약기관들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방향성 및 필요성 등 지속 논의
☞ I-3-②-I-1-ⓑ-1-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의 첫걸음, 채무조정 소상공인 직접 만나 어려움 들어(8.1일 보도자료)</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7.75/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중되는 상황을 반영, 지원대상 확대, 홍보강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차주에게 채무조정 지원 필요
- 채무조정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소통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성 모색</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7/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제도개선 및 홍보의 방안의 효과를 적실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 '신청자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
- '23년 신청 실적대비 10% 이상 증가된 목표를 설정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지 피력</td></tr>
<tr><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7.25/20</td><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td><td>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2.1일, 9.12일)</td><td>완료</td></tr>
<tr><td>새출발기금 재도개선</td><td>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시행 (4월, 9.12일)</td><td>완료</td></tr>
<tr><td>새출발기금 홍보 강화</td><td>유투브, 카드뉴스 등 활용하여 홍보 (9월)</td><td>완료</td></tr>
<tr><td>새출발기금 간담회</td><td>금융위원장 현장소통 (8.1일, 10.22일)</td><td>완료</td></tr>
</table>
☞ I-3-②-II-1-ⓐ-1-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9.12일 조기 시행합니다. (9.11일 보도자료)</td></tr>
</table>

<table>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8.25/3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새출발기금 신청 차주 수</td><td>3.5만명</td><td>5.7만명(잠정)</td><td>달성</td></tr>
</table>
☞ I-3-②-II-2-ⓐ-1-(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및 약정 실적(캠코, 12월말기준)
ㅇ 추가 설명 사항 (필요시 작성)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응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대상자 맞춤형 홍보를 통해 당초 목표대비 높은 수준의 성과 달성
</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17.25/2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추이
<table>
<tr><th>구 분</th><th>'22년</th><th>'23년</th><th>'24년</th></tr>
<tr><td>협약기관</td><td>1,829개</td><td>2,340개</td><td>3,321개</td></tr>
</table>
- 협약가입기관을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지원
☞ I-3-②-III-1-ⓐ-1-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9.12일 조기 시행합니다. (9.11일 보도자료)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홍보 강화) 대상자 맞춤형 홍보를 통해 효과성 제고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자주 활용하는 프로그램(제로페이 등)과 연계하고, 신청자의 인지경로를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홍보 진행
- (신청 인프라 강화) 온라인 홈페이지의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시간을 연중무휴로 확대하여 신청자 편의성 제고
☞ I-3-②-III-1-ⓑ-1-새출발기금 신청인프라 강화(캠코)
</td>
</tr>
</table>

Ⅰ-4-①	정책금융지원협의회 5대 중점분야 정책자금 공급액 확대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추진배경) **무역기조 변화, 빠른 기술발전과 산업변화** 속에서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밀착된 집중지원 필요**

○ 그간 **양적성장에 치우쳤던 정책금융의 한계를 개선**하고, **산업현장의견 반영**하여 **민관협력의 효율적인 산업금융공급 긴요**

□ (추진결과) **산업부처* 및 민간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수요에 맞는 **맞춤형 산업금융 공급** 및 **기후위기대응·지역균형발전 자금 적극지원**

*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문체부, 복지부, 해수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특허청, 방사청

○ **금융위-산업부처간 협의기구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내실화**하여 **범부처적 지원**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공급**을 **집중***(102조원+@) 하면서, **수시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산업부처의 자금수요를 취합하여 전년(91조원)대비 +11조원 증액된 수준으로 결정
☞ (실적) `24.12월까지 133조원 공급하여 (연간) 목표치를 30% 이상 초과달성

<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내실화의 의의 >

· **각 사업부처**는 **정책금융**에 대한 이해 없이 **재정**만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
☞ **정책금융도 정책수단**으로 활용토록 **이해 확대**, 과도한 재정투입 예방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소관부처**가 **다르면 별도로 업무계획 수립, 중복 등 비효율 야기**
☞ 금융위 소관기관인 산은·기은·신보 뿐만 아니라 **중기부 소관기관인 기보**까지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여**, `25년부터 업무계획 함께 마련하는 등 정책금융 효율성 제고

○ 별개로 **현장의견 적극 청취**※ ☞ **AI·반도체* 지원책도 기민하게 마련**

※ (장관) 중소기업 금융현장 간담회(`24.4.5), 첨단산업영위기업 간담회(8.6.), 중견기업 간담회(11.5.)
(차관) 수출금융 이용기업 간담회(`24.4.9.)

* 17조원 반도체 프로그램 출시(`24.6월), AI 전후방산업 지원 3.5조원 특별자금 마련(`24.7월)
(실적) `24.12월까지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1.05조원 공급, AI 프로그램 0.86조원 공급 完

○ **정책금융만으로는 부족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과 함께 **'맞춤형기업금융지원방안'**을 마련('24.2월)했으며, **'24.9월까지 20조원**이 **신성장동력 확충·중소기업 재기지원** 등에 활용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기존 분기별 추진계획이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일정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어 추진절차 등 구체성 보완 필요

ㅇ 각 부처의 수요를 조사하고 회의체 일정도 다부처간 사업인 관계로 사전적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대략적 일정 기재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개최일정 외 안건 수요조사, 관계부처 및 참여기관 의견취합 등 추진 일정을 개략적으로라도 보완

□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Ⅰ-4-①	분기별 추진계획의 구체성 보완 필요	'25년 자체평가 계획 수립시 분기별 추진계획 상세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7/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각 부처가 제출한 주요 산업정책, 지원필요성, 정책금융 수요 등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대 중점분야 선정 및 공급목표 설정
☞ I-4-①-I-1-ⓐ-1 관련 보도자료(2024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 발표)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5대 중점분야 선정 및 공급목표 설정 관련하여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의견수렴 등 협의 진행
☞ I-4-①-I-1-ⓑ-1 관련 보도자료(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4.75/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5대 중점분야 앞 공급실적의 분기별 점검 등을 통한 구체적 목표달성 방안 마련
<table>
<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
<tr><td>1/4분기</td><td>'24년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td><td>3월</td></tr>
<tr><td>2/4분기</td><td>'24년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td><td>6월잠정</td></tr>
<tr><td>3/4분기</td><td>'24년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td><td>9월잠정</td></tr>
<tr><td>4/4분기</td><td>'24년 제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td><td>12월잠정</td></tr>
</table>
- (난이도)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수요 등을 조율하고 관련한 금융지원 정책 발표 병행하는 등 적절한 난이도 설정</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7/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5대 중점지원분야로의 공급목표(102조원) 설정은 타당시됨
- (적극성) 5대분야 앞 공급목표(102조원)는 3개 정책금융기관의 총 공급목표액(212조원)의 약 48.1% 수준 → 적극적인 공급 추진</td></tr>
</table>

<table>
<tr>
<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4/2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24년도 제1차 협의회 개최
('24.3월)</td><td>▪ '제6차 정책금융협의회 개최('24.3.6)
* 중견기업 전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24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발표
정책펀드 등 정책금융 성과점검 방법론
자금공급 1분기 내 조기집행 추진방안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td><td rowspan="4">완료</td></tr>
<tr><td>'24년도 제2차 협의회 개최
('24.7월)</td><td>▪ 제7차 정책금융협의회 개최('24.7.4)
* '24.2분기중 자금공급 실적(5월말) 점검
산은 초격차프로그램 AI분야 지원확대 방안
우수기업 우대프로세스 개선방향</td></tr>
<tr><td>'24년도 제3차 협의회 개최
('24.9월)</td><td>▪ 제8차 정책금융협의회 개최('24.9.25)
* 기술보증기금 정금협 참여방안
'25년도 정책금융 부처 수요조사 계획
성장지원펀드 투자대비 성과 실증분석</td></tr>
<tr><td>'24년도 제4차 협의회 개최
('24.12월)</td><td>▪ 제9차 정책금융협의회 개최('24.12.24)
▪ 2025년 산업전망
'24.4분기중 자금공급 실적(11월말) 점검
2025년도 정책금융 공급방안
혁신프리미어 1,000 도입방안
2025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 개편안</td></tr>
</table>
☞ I-4-①-II-1-1 24년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보도자료 일체
</td>
</tr>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6/3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5대 중점분야 자금공급액</td><td>102조원</td><td>133조원</td><td>달성</td></tr>
</table>
☞ I-4-①-II-2-1 24년 정책금융지원협의회 5대 중점분야 자금공급액
</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12.5/2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발표 (4개*)
* 24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25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혁신성장공동기준 개편방안,
산은 초격차프로그램 AI분야 지원 확대 방안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산업정책과 정책금융 공급간 연계성 및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체계 확립
<아주경제('24.9.25> 초격차·유망투자 정책금융에 기보도 합류 … 총 240.5조원 공급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과 미래유망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에 기술보증기금도 참여한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이어 네 번째 정책금융기관 참여다. 이로써 올해 총 공급 규모는 212조원에서 240조원으로 늘어난다.
☞ I-4-①-III-1-1 관련 기사
</td>
</tr>
</table>

Ⅰ-4-②	중소·중견기업 지원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보통

(1) 평가결과

□ 추진배경

○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산업구조 재편·글로벌 경쟁 심화**로 **선제적 투자 필요성 증가**

○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투자 및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금융 지원이 필수적**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24.2월)

□ 주요성과

◇ **❶신산업 혁신성장, ❷밸류체인 강화 및 산업구조개선 지원, ❸경영애로 해소 및 재기지원**에 **총 68.9조원 지원(목표 75.8조원 比 90.8%)**

- **속도감 있는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중소→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성장사다리 안착** 등에 기여

❶ (신산업 혁신성장) 초격차·주력산업 영위 기업에 총 11.6조원 지원

☞ 신산업·첨단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공급망안정기금) 수입선 다변화·대체기술 개발·국내 유턴기업** 및 **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선도사업자 등*)에 **기금** 기반 자금 지원('24.6월 신설)

  * 경제안보품목의 안정화계획을 소관부처에 제출하여 선정된 사업자

- **(초격차 주력산업)** 주력산업 및 신수출 동력산업 중 **향후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5대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디스플레이)에 지원

-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최초로 민간은행 중심**의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최대 1,500억원, 금리 △1%p) **마련**

❷ (산업구조개선) 국내산업 밸류체인강화 및 산업구조 개선에 38.3조원을 지원 ☞ 우리경제의 단단한 하부구조를 확립

- **(중견기업 전용펀드) 은행** 출자금 기반 **중견기업** 펀드 **1조원 조성**(5조원까지 확대)

  → **1호 투자기업(텍슨)**에 **방문**하여 중견기업연합회 등과 **'중견기업 간담회' 개최** 등 기업과 직접 소통('24.9월)

- **(중소기업 우대 대출) 설비투자 확대, 사업재편** 및 **미래혁신산업 진출,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등**에 **우대금리***로 **대출** 제공

  * 시중은행 : 최대 1,500억원, 금리 △1.0%p / 정책금융기관 : 금리 최대 △1.5%p, 보증료 감면 등

- **(매출채권 유동화)** 기존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 **(성장사다리)** 원활한 **스케일업**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성장 단계별로 최대 500억원**까지 **보증 제공**

  * 5대은행 출연금 등을 바탕으로 총 2.3조원 지원

❸ 위기기업의 신속한 정상화 등에 18.9조원 공급

☞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실패 후 재기 지원

- **(고금리 부담 경감) 매출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경영 영위 중소기업**에 대해 **고금리 대출 금리 감면***, **우대조건 정책자금** 등 제공

  * 금리 5% 초과 대출을 5%까지 금리인하(최대 2.0%p)

- **(유동성 지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유예·이자감면 지원** 및 구조조정 목적의 **기업구조 혁신펀드 1조원** 추가 조성

- **(재창업 지원) 신용회복절차**에 따른 채무변제 계획을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한 차주에 **신규 보증 제공**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7.25/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은행권 기업 대출 금리, 기업경기 실사지수, 기술수준별 매출·고용 비중 등을 분석하여 금융지원방안 마련
☞ I-4-②-I-1-ⓐ-1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중견기업 간담회 개최(11.5일)를 통해 기업, 정책금융기관 의견 청취
☞ I-4-②-I-1-ⓑ-1 중견기업 간담회 보도자료</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5.5/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중견기업 펀드 관련 운용사 선정 소요기간 및 민간자금 조달기간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구체적인 계획 수립
<table>
<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
<tr><td rowspan="2">1/4분기</td><td>‘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발표</td><td>2월</td></tr>
<tr><td>‘중견기업 전용펀드’ 조성계획 및 운영방안 발표</td><td>3월</td></tr>
<tr><td rowspan="3">2/4분기</td><td>‘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출시</td><td>4월</td></tr>
<tr><td>‘중소기업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 운영개시</td><td>4월</td></tr>
<tr><td>‘중견기업 전용펀드’ 모펀드 결성</td><td>4월</td></tr>
<tr><td>3/4분기</td><td>‘중견기업 전용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td><td>6월</td></tr>
<tr><td rowspan="2">4/4분기</td><td>자펀드별 민간출자자 모집 및 자펀드 결성진행</td><td>7~12월</td></tr>
<tr><td>자펀드 결성 완료 및 투자개시</td><td>10~12월</td></tr>
</table>
- (난이도) 통상 민간자금 조달기간이 6개월이나, 운용사 선정 후 4개월부터 투자개시를 계획하는 등 도전적으로 목표 설정</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5.75</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최초로 민간은행 출자금 기반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그간 정책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던 중견기업에 대한 대표적·상징적인 신규 지원 정책임
- (적극성) 펀드운용사 선정, 민간출자자 모집 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연내 자펀드 5천억원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행 노력 필요</td></tr>
</table>

<table>
<tr>
<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7.25/2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추진계획</th><th>이행</th></tr>
<tr><td rowspan="2">1/4분기</td><td colspan="2">‘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발표</td><td>2월</td><td>2.29.</td></tr>
<tr><td colspan="2">‘중견기업 전용펀드’ 계획 및 운영방안 발표</td><td>3월</td><td>2.29.</td></tr>
<tr><td rowspan="3">2/4분기</td><td colspan="2">‘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출시</td><td>4월</td><td>4.1.</td></tr>
<tr><td colspan="2">‘중소기업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 운영 개시</td><td>4월</td><td>4.1.</td></tr>
<tr><td colspan="2">‘중견기업 전용펀드’ 모펀드 결성</td><td>4월</td><td>5.7.</td></tr>
<tr><td>3/4분기</td><td colspan="2">‘중견기업 전용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td><td>6월</td><td>6.28.</td></tr>
<tr><td rowspan="2">4/4분기</td><td colspan="2">자펀드 민간출자자 모집 및 자펀드 결성진행</td><td>7~12월</td><td>8.30.</td></tr>
<tr><td colspan="2">자펀드 결성 완료 및 투자개시</td><td>10~12월</td><td>10.23.</td></tr>
</table>

☞ I-4-②-II-1-1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
I-4-②-II-1-2 중견기업 전용펀드 추진실적

</td>
</tr>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6/3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중견기업 전용펀드 조성실적</td><td>5,000억원</td><td>6,472억원</td><td>달성</td></tr>
</table>

☞ I-4-②-II-2-1 중견기업 전용펀드 추진실적

</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20점)</td>
<td>12.5/2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중소기업 금융애로점검협의체(11.20일), 기업금융상황점검회의(12.9일) 등 기업·금융회사·전문가와 정책방향·현장애로 관련 적극 소통

☞ I-4-②-III-1-1 중기금융애로협의체 보도자료
I-4-②-III-1-2 기업금융상황점검회의 보도자료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76조원에 달하는 기업금융 지원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악화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상황 해소에 기여

<매일경제('24.2.14.)> ‘금리 고통’ 중견·중소기업에 76조원 긴급 수혈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총76조원에 달하는 기업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11년만에 최고치인 연5%대로 올라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중략)
물가상승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방안은 경기부양 효과도 있다.

☞ I-4-②-III-1-3 관련 기사

</td>
</tr>
</table>

Ⅰ-4-③	미래성장동력 제고 및 혁신적 벤처육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조성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연간 3조원씩 5년간 15조원의 **신성장, 유망벤처** 분야에 투자하는 **대규모 정책펀드**를 조성하여 **민간**의 **모험자본 참여 활성화** 촉진

- 최근 **고금리** 등 **자본시장 여건 위축**으로 민간 모험자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중물 역할** 수행

○ **'23년도 1차년도 사업**은 **목표 3조원 대비 131%인 3.9조원**을 **결성**하여 **혁신산업 및 사업 스케일업 지원에 활용**되고 있음

< '23년 혁신성장펀드 조성 및 투자실적(억원, 개) >

구 분	조성 목표(A)	조성실적					투자실적		
		재정	산은	민간	합계(B)	비율(B/A)	금액(C)	비율(C/B)	업체수
혁신산업	15,000	2,000	3,000	15,827	20,827	139%	3,983	19%	51
성장지원	15,000	1,000	3,000	14,600	18,600	124%	3,249	17%	41
합 계	30,000	3,000	6,000	30,427	39,427	131%	7,232	18%	92

○ 2차년도('24년) 사업 역시 공모절차를 거쳐 모펀드 결성 및 자펀드 결성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였음

- '24년말 기준 **총 3.08조원*을 결성 완료**하여 **목표**(재정출자 0.3조원으로 총 3조원 펀드 결성)** **초과달성**

* 추가 출자자 모집중으로, 현재자 기준 4조원 이상 조성할 것으로 예상(추가 출자자 모집 기한 '25.5월)

- 전반적인 **투자자금시장 위축**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펀드결성

○ **母-子펀드 구조**는 **작은 재정투입**에 반해 **정책효과가 큰 효율적인 정책수단**이지만, 자금모집에 불가피하게 시차가 소요*되는 측면(약 1년)
☞ '25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前 사업공고 추진**** 통해 **조속한 결성 추진**

* 모펀드 모집공고- 모펀드 결성- 자펀드 모집공고- 자펀드 결성 등에 시간 소요
** `24.12월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사업추진공고 완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7.5/10*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21~' 22년 뉴딜펀드 조성 및 투자 실적을 통계 자료화하여 관리·분석하여 원활한 펀드 조성 및 실적 관리 추진 ☞ I-4-③-1-1-ⓐ-1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투자 현황(산은)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신성장 4.0 등 국가산업전략과의 연계성 강화 및 민간 자문단 참여 확대 등을 반영한 「혁신성장 공동기준(5차 개정)」으로의 개편(' 23.2)을 통해 투자 기준으로 활용 중 - 연중 시장참여자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4회) 등을 개최하여 시장 친화적인 펀드 조성계획 수립에 반영 ☞ I-4-③-1-1-ⓑ-1 혁신성장 공동기준(' 23.2) ☞ I-4-③-1-1-ⓑ-2 투자설명회 자료
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	*6/10*	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통상적인 운용사 선정 소요기간(2개월) 및 선정 운용사의 민간자금 조달기간(6개월)을 고려하여 연말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분기별 추진 계획을 수립함 - (난이도) 전반적인 자금시장 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펀드시장 특성을 고려하고 연내 펀드 결성 및 투자개시를 위한 적절한 분기별 추진계획 수립
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	*6.75/10*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신산업·전략산업 분야 및 성장단계 유망 중소·중견기업 앞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유동성 조기확보 촉진 측면에서 펀드 조성실적을 설정한 것은 합리적 * 정책펀드(모태펀드 등)은 주로 펀드 조성금액을 성과지표로 적용 중이며, 조성실적을 목표로 설정하는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펀드 조기결성 유도로 본건 사업이 국가 중점사업이라는 시그널을 시장 앞 전달 가능 - (적극성) 모험자본시장 투자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 펀드 조성목표를 3조원(전년 동일)로 유지하였으며, 기존 재정모펀드 회수재원(0.06조원)을 활용하여 정부재정건정성에 기여

<table>
<tr>
<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6/2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혁신산업/성장지원 모펀드 민간 운용사 모집공고 ('24.3월)</td><td>모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24.3.7)</td><td rowspan="7">완료</td></tr>
<tr><td>혁신산업/성장지원 모펀드 민간 운용사 선정 ('24.4월)</td><td>모펀드 운용사 선정 ('24.4.4, 2개사)</td></tr>
<tr><td>모펀드 운용사가 자펀드 민간운용사 모집 공고 ('24.4~5월)</td><td>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1차-'24.4.18, 2차-'24.5.30)</td></tr>
<tr><td>정부재정의 혁신성장 모펀드 앞 출자 및 모펀드 결성 ('24.4월)</td><td>출자 및 모펀드결성 ('24.4.30)</td></tr>
<tr><td>자펀드 민간운용사 선정 ('24.5~6월)</td><td>자펀드 운용사 모집선정 (1차'24.5.31, 9개사 2차'24.6.28, 4개사)</td></tr>
<tr><td>자펀드별 민간출자자 모집 및 자펀드 결성진행 ('24.6~12월)</td><td>정상추진 ('24년말 목표 초과달성 조성)</td></tr>
<tr><td>자펀드 결성 완료 ('24.12월)</td><td>정상추진 ('24년말 목표 초과달성 조성)</td></tr>
</table>
☞ I-4-③-2-1-1 운용사 선정 공고문 등 일체
</td>
</tr>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4.5/3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24년도 혁신성장펀드 총 결성액</td><td>3조원</td><td>3.08조원</td><td>달성</td></tr>
</table>
☞ I-4-③-2-2-1 ' 24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투자 현황(산은)
</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15.75/20</td>
<td>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정성) 벤처투자 시장 유동성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국가 주요정책(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등) 분야로의 모험자본 공급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
☞ I-4-③-3-1-ⓑ-1 혁신성장펀드 운용사 관련 기사
</td>
</tr>
</table>

Ⅱ-1-①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제도화 추진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현재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중개)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나, 소비자 편익 제고 효과가 인정됨에 따라 정식 제도화*를 추진('24.4월~)

*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등에 예금상품 중개업 등록을 위한 요건을 구체화

- '24.10월*까지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를 통해 총 5만건 이상의 예·적금 가입을 중개하여 소비자의 원활한 상품 탐색 및 가입을 지원

【 금융업권별 예금중개 서비스 이용실적('23.6월 ~ '24.10월, 단위 : 억원·건) **】**

구분	판매상품 수(예금/적금)	가입금액	가입건수
은행(9개사)	9 / 18	1,782	53,887
저축은행(8개사)	24 / 13	62.3	1,429
합계	33 / 31	1,844.3	55,316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2.11월, '23.6월) 이후 서비스를 출시한 4개 플랫폼 점검 결과
- 신한은행('23.6월), 네이버파이낸셜('23.9월), 카카오페이('23.12월), 토스('24.4월)

- 그간 금융소비자가 회사별 상품조건을 비교해 보려는 수요가 높았던 은행권 예·적금에 대한 이용실적이 크게 나타남

○ 시범운영 중에는 수신기관(은행·저축은행·신협) 간 과도한 자금이동 등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부가조건(금융혁신법)을 부과

→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부가조건 완화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

❶ 비교·추천 상품 범위를 "저축성 예·적금 상품"으로 한정하였으나, 소비자 관심이 증대 중이며 플랫폼을 통해 더욱 많은 금융회사가 경쟁할 수 있는 "수시입출식 예금상품"까지 확대 추진

※ 사업자 및 소비자 수요 등에 따라 기업예금 등까지 확대하는 안도 함께 검토

❷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해 모집 가능한 예·적금 금액을 제한하

였으나, 각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유동성 관점에서 자율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율체계를 정비해 나갈 예정

※ 해당 금융회사의 전년도 예·적금 신규취급액의 일정 비율(은행 - 5%, 저축은행·신협 - 3%) 이내

※ 초반에는 각 금융협회 등을 통해 모집금액을 상시 모니터링, 향후 각 금융회사가 자본규제, 유동성 규제(예: LCR, 예대율 등)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주요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간 비교 】

구분	운영	관련 규율	운영상 제한	
			취급한도	중개상품
대출	'19.5월~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관련 혁신서비스 → 「**금소법**」(대출성상품판매중개업자 등록)	제한없음*	제한 없음
예금	'23.6월~	「**금소법**」 관련 혁신서비스 → (제도화 시) 「**금소법**」(예금성상품판매중개업자 등록)	은행 5% 저은신협 3%	저축성 상품

*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한 대환상품 신규취급 규모만 **자율협약**을 통해 제한 중

➡ 제도화 방안 초안 마련('24.11월) 이후 이해관계자(예금상품 취급 금융회사 등) 의견 수렴 중, '25년 상반기 내 발표·규정개정을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9/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은행·저축은행별 예금금리 동향 및 플랫폼 이용 통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 여건 및 금융시장 안정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제도화 착수를 결정하고 제도화 방안 마련 시 반영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금융위, 금감원 외에도 금융업권별 협회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효과성 높은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
☞ II-1-①-I-1-ⓑ-1-예금중개서비스 제도화TF 회의 개요</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7/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관련 TF 진행 및 제도화 방안 마련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판단
- (난이도)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관련 규제샌드박스 서비스의 제도화는 최초 진행 사안이며, 수신기관의 건전성 등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는 점을 감안 시 도전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table>
<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
<tr><td>2/4분기</td><td>「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제도화 TF」(가칭) 구축</td><td>5월</td></tr>
<tr><td>3/4분기</td><td>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제도화 방안 관련 현장 의견수렴 진행</td><td>9월</td></tr>
<tr><td>4/4분기~</td><td>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제도화 추진</td><td>계속</td></tr>
</table></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6.75/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핵심 목표는 방안 마련에 해당하여 대표성을 가진 목표인 것으로 판단
- (적극성) 금융혁신법상 규제개선 기한이 도래하거나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이 있지 않았음에도 소비자 편익 제고 효과를 확인하고 선제적 규제 개선에 착수</td></tr>
<tr><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7.25/20</td><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제도화 TF 구축</td><td>‘24.4.30. TF 1차회의 개최</td><td>완료</td></tr>
<tr><td>현장 의견수렴 진행</td><td>‘24.6.28. TF 4차회의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진행</td><td>완료</td></tr>
<tr><td>제도화 방안 추진</td><td>방안 초안 마련 이후 의견수렴 진행(‘25.1.17. 은행연 등) 등 방안 정비 지속 추진 중
* ‘24.하반기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예금중개 관련 리스크 관리방안 등 추가 정비 필요</td><td>추진 중</td></tr>
</table>
☞ II-1-①-II-1-1-예금중개서비스 제도화TF 회의 개요
☞ II-1-①-II-1-2-예금중개서비스 제도화 방안 초안</td></tr>
</table>

<table>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6/3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II-1-①-II-2-1-예금중개서비스 제도화TF 회의 개요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TF 개최 횟수</td><td>6회</td><td>4회</td><td></td></tr>
</table>
ㅇ 추가 설명 사항 (필요시 작성)
- '24.하반기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예금중개 관련 리스크 관리방안 등 추가 정비 필요
</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14.5/2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제도화 과정에서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의 안정적 이용을 지속적으로 지원, 서비스 개시 이후 총 5만건의 누적 이용실적 확인
☞ II-1-①-III-1-ⓐ-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이용실적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그간 소비자의 간편 비교 및 가입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예·적금 상품 판매를 중개하여 소비자의 원활한 상품 탐색 및 가입을 지원하는 예금중개서비스의 제도화에 선제적으로 착수, 서비스 개선 필요 지점(이용대상 확대 등)을 발견하고 제도화 방안을 정비하여 제도화 이후 서비스가 안착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
</td>
</tr>
</table>

Ⅱ-1-②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우선 출시**(‘24.1.19), 이후 **저축보험**(6.27일), **펫보험·여행자보험**(7.18일) 등을 **출시**

➡ 출시 이후 약 1년여간 **118.1만명**이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11.5만건**의 실제 **보험계약**이 **체결**

<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운영현황 >

구분	자동차('24.1월)	용종('24.1월)	저축('24.6월)	펫('24.7월)	여행자('24.7월)
사업자	9개 핀테크사	쿠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보험사	全 손보사	5개 생보사	4개 생보사	4개 손보사	7개 손보사

○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추진계획 발표(9.26일/3차보험개혁회의)

* ❶ **플랫폼 보험요율**을 CM채널 보험요율과 **동일하게 변경** ❷ 정확한 보험료 계산 등을 위해 **핀테크사**에 **정보공유 확대** ❸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UI 개선** 추진 등

○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예금·보험상품**에 **가입**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

- 각 금융회사의 **상품 간 비교**가 쉬워짐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되는 **부수적 효과**도 발생

☞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간편하게 비교**하고 **가입**이 가능하져 **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

*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용자의 **약 60%**가 **기존계약 보다 30% 정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네이버페이 분석결과)

** 플랫폼을 통해 보험을 갱신한 소비자의 경우 78%가 보다 저렴하거나 상품조건이 적합한 보험사로 변경(전체 소비자의 17.5%만이 갱신시 보험사 변경)

☞ 보험사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 → **가격 경쟁력** 있는 **중소형사 참여**가 **확대**되며 **시장경쟁 촉진**(4개 대형사 기존 점유율 : **91%** → 플랫폼 점유율 : **60.3%)**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9/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매주 비교추천서비스 현황 통계를 취합하여 통계 분석 등 실시
- 출시 1달 성과분석 자료 보도자료 배포
☞ I-1-①-I-1-ⓐ-1-실적현황표
I-1-①-I-1-ⓐ-2-보도자료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실시
☞ I-1-①-I-1-ⓑ-1-점검회의개요</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8.75/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소비자가 쉽게 비교하여 가입할 수 있는 대표상품 4종 출시하여 비교・추천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선방안을 지속 모색

<table>
<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
<tr><td rowspan="2">1/4분기</td><td>플랫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td><td rowspan="2">'24.1월</td></tr>
<tr><td>플랫폼 용종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td></tr>
<tr><td>2/4분기</td><td>플랫폼 저축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td><td>'24.6월</td></tr>
<tr><td>3/4분기</td><td>플랫폼 펫보험·여행자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td><td>'24.7월</td></tr>
<tr><td>4/4분기</td><td>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지속 모색</td><td>계속</td></tr>
</table>

- (난이도) 설계사(도입 반대), 보험사(대형사 도입반대, 중소형사 도입찬성), 플랫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으로 이해관계자 조정 및 협의에 있어 난이도가 상당한 정책</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7.5/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소비자에게 보험상품별로 비교·추천하는 서비스이므로, 소비자 효용을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중요 → 성과목표 대표성 충족
- (적극성)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2년의 기간동안 5개 군의 보험상품 중 상품별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으로, 1년차에 5개의 상품을 출시하는 계획은 적극적인 정책목표 설정로 인정</td></tr>
</table>

<table>
<tr>
<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8.75/20</td>
<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td><td>‘24.1.19일 출시</td><td>완료</td></tr>
<tr><td>용종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td><td>‘24.1.19일 출시</td><td>완료</td></tr>
<tr><td>펫·여행자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td><td>‘24.7.18일 출시</td><td>완료</td></tr>
<tr><td>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등 개선방안 발표</td><td>‘24.9.26일 발표</td><td>완료</td></tr>
</table>
☞ I-1-①-II-1-1-비교추천서비스 출시 보도자료 1(준비상황점검), 2(이용현황 점검), 3(저축보험, 펫보험, 여행자보험 추가), 4(플랫폼 2.0 서비스 출시)</td>
</tr>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8.75/30</td>
<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비교추천서비스 보험상품 수</td><td>3개 상품</td><td>5개 상품</td><td>초과 달성</td></tr>
</table>
ㅇ 추가 설명 사항 (필요시 작성)
- ‘24년 적극적인 협의와 지원으로 당초 목표하였던 3개 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출시 보다 목표를 초과 달성</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13.75/20</td>
<td>ⓐ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24.1 ~ ‘24.12월 약 118.14만건 비교추천 이용, ’24.1~12월 중 가입 건수는 약 11.5만 건
☞ 예시: I-1-①-III-1-ⓐ-1-실적현황표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자동차보험을 플랫폼을 통해 보험을 갱신한 소비자의 경우 78%가 보다 저렴하거나 상품조건이 적합한 보험사로 변경
-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용자의 약 60%가 기존계약보다 30% 정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 보험사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여 가격 경쟁력 있는 중소형사가 참여 확대(자동차보험 4개 대형사 기존 점유율 : 91% → 플랫폼 점유율 : 60.3%)
☞ 예시: I-1-①-III-1-ⓑ-1-성과분석 보도자료</td>
</tr>
</table>

Ⅱ-1-③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15년간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이 개정('23.10월) 된 이후, **실제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의료계, 보험업계**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운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 이슈를 조정

- **'이해관계자 협의체 TF'**를 구성·운영하여 **전송대행기관 지정**,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비용부담** 등 **주요 쟁점사항**을 **협의**

- EMR(전자의무기록) **업체 간담회**('24.9.12.) 등을 통해 **EMR업체** 및 **요양기관**의 **참여 유도방안**을 논의

* **민간병원**에 대하여 전산솔루션 **개발비, 서버 설치비**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참여유인**을 제고하도록 결론 도출

- **보건소**는 **관계부처**(복지부 등) **협의**('24.8월)를 통해 **모두 참여 합의**

○ **'24.10.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과 **보건소**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실손24")**를 **전격 시행**

* (병원) '24.10.25일부터, (의원·약국) '25.10.25일부터 시행

- **'25.1.17일 기준 총 4,406개 요양기관**(병원 916개, 보건소 3,490개)이 **참여**를 **확정** → **전체 요양기관**(7,725개)의 **62.3%** 수준(청구비중 기준)

- 회원가입자 수 94.8만명, 청구 완료건수 9.7만건

- **청구건수**는 **약 9.5만여건**이고, **노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녀·부모** 등 **제3자 청구기능** 제공(약 1.4만건 청구)

* App 안내 전문콜센터(1811-3000)를 설치·운영하여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 지원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9.5/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운영에 있어 요양기관별 EMR(전자의무기록) 업체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분석
- 시스템 구축·확산·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준비
☞ I-1-①-I-1-ⓐ-1 실손 청구 전산시스템과 병원 EMR 연계 진행상황
I-1-①-I-1-ⓐ-2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현황 보고
I-1-①-I-1-ⓐ-3 전산화 시스템 구축 비용 검토
I-1-①-I-1-ⓐ-4 전산화시스템 구축,확산,운영 예산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24.1.11.)하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는 EMR업계와 데이터 전송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TF를 운영
☞ I-1-①-I-1-ⓑ-1 (보도자료)「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개최
I-1-①-I-1-ⓑ-2 EMR업계 전산시스템 구축 TF 구성(안)
I-1-①-I-1-ⓑ-3 (보도자료) 실손청구 전산화 EMR 간담회</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9/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개정 보험업법 위임사항 등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실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을 적기에 구축・운영하여 정책과제의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
<table><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tr><td>1/4분기</td><td>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td><td>3월</td></tr><tr><td>2/4분기</td><td>보험업감독규정 입법예고</td><td>5월</td></tr><tr><td>3/4분기</td><td>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td><td>10월</td></tr><tr><td>4/4분기</td><td>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병원급)</td><td>10월</td></tr></table>- (난이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가 최초 도입되는 사례로서, 시스템 구축 책임 및 의료 개인정보 공유 등에 대해 전반적인 의료계와 보험업계간 이견 조정이 매우 어려운 과제
→ 전송대행기관 지정, 시스템 구축비용 부담, 전송되는 서류의 범위(의료개인정보 전송 범위) 등에 대해 의료계와 보험업계간 이견 지속</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9.5/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보험업법 개정(’23.10월)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오픈이 ’24.10월로 정해졌으며,
· 이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적기에 전산시스템을 구축·시행하는 성과지표는 대표성을 충족</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적극성) 보험업계,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책과제로서, 법 개정 취지를 지속 설득하는 등 갈등을 조정하여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실제 시스템을 오픈</td></tr>
<tr><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8.5/20</td><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tr><td>보험엄법 시행령 입법예고</td><td>‘24.3~4월</td><td>완료</td></tr><tr><td>보험업감독규정 입법예고</td><td>‘24.7월</td><td>완료</td></tr><tr><td>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td><td>‘24.10.25일</td><td>완료</td></tr></table>☞ I-1-①-II-1-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I-1-①-II-1-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호(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I-1-①-II-1-3 (보도자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td></tr>
<tr><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td>29/30</td><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I-1-①-II-2-1 (보도자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table><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tr><td>실손청구 전산 시스템 구축</td><td>구축 완료</td><td>구축 완료</td><td>달성</td></tr></table>- 보험업계는 물론, 의료계, EMR업체와 적극 소통하여 보험업법상 시행일인 ‘24.10.25일에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을 적기에 오픈</td></tr>
<tr><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td>16.75/20</td><td>ⓐ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법 시행 후 총 총 4,406개 요양기관(916개 병원, 3,490개 보건소)이 참여를 확정하였으며, 청구비중 기준 참여율은 62.3%
- 회원가입자 수는 94.8만명으로 대국민 호응도가 높으며, 청구완료 건수는 9.7만건(‘25.1.17일 기준)
☞ I-1-①-III-1-ⓐ-1 실손24 요양기관 참여 등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국민이 병원 창구 방문 또는 복잡한 서류 요청 없이 ‘실손24‘ 앱을 통해 실손 보험금을 손쉽게 청구
- 국민은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기관은 서류발급 업무 부담을 경감
- 특히 앱 활용이 어려운 노년층 및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녀·부모 등 제3자 청구 기능을 개발·운영 → 제3자 청구 약 1.4만건
☞ I-1-①-III-1-ⓑ-1 (매일경제) “작년에 3210억 그냥 날렸는데”… 4천만명 가입 ‘이것’ 이젠 쉽게 받으세요
I-1-①-III-1-ⓑ-2 (한국경제TV) 부모님 핸드폰에 꼭 실치해 드리세요[슬기로운 금융생활]</td></tr>
</table>

Ⅱ-2-①	핀테크 기업 육성 및 제도적 기반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❶ **[자금공급 강화]** 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핀테크 기업**이 고금리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공급 확대**

- **(투자자금)** **「핀테크혁신펀드」** 제1호('20~'23년, 5,000억)에 이어 제2호 펀드('24~'27년)를 **추가 조성**하여 **총 1조원 규모 확충**

  * ('24.12월말 기준) 총 5,558억원 조성, **총 166개 기업에 3,694억원 투자완료**

- **(정책금융)** **연간 2,2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핀테크 특화상품 등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산은, 기은, 신보)

  * '24.12월 기준, 대출·보증 등 **총 2,598억원의 정책금융상품 공급**('23년 - 2,055억원)

❷ **[지원체계 고도화]** 핀테크 기업이 가진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변화하여 **창업·성장 기반 확대**

- **(컨설팅)** 핀테크 **통합상담창구 및 「전문가지원단」**을 구성하여 법률·회계 등 전문분야 **종합컨설팅 제공**(핀테크지원센터 內 종합지원실)

  ※ 핀테크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개발 여건**(평균 10명 이내의 개발인력)이 **취약**하고, 서비스 출시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력**과 **노하우 부족**

- **(박람회)** 글로벌 트렌드 공유 및 사업모델 홍보,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한 대국민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핀테크위크 2024*」 개최**

  → **전시부스** 운영, **금융회사·투자기관 미팅** 등 핀테크 산업에 대한 홍보 및 네트워킹 기회 등 제공

  * **(일시/장소)** 8.27~2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성과) 오프라인 방문객 수: ('23) 11,000여명 → ('24) **12,500여명**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 109개 기업·기관의 전시 참여, 총 11개 핀테크 전문 세미나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4」 관련 언론보도 >

<조선비즈(9.19)>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성료… 유망 핀테크, 투자유치 기회 1만2500명 관람객 방문

(···) 금융위는 "관람객들의 높은 만족도 속에서 마무리 된 이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에서 제시된 의견과 수요를 내년도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행사와 향후 핀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정책 수립에 다각도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네트워킹) 금융회사와의 협업 및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핀테크-금융회사-투자기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

* 반기별 행사로 정례화하여 '24.1월, 11월 총 2회 개최

<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관련 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1.26)>"핀테크 협력 기회 확대" 금융위, '제1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열어

(···) 금융위는 반기별로 개최 예정인 이번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비롯해 대국민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4',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 행사 등 핀테크 생태계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킹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9/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준비 T/F 구성·운영을 통해 해외 사례 등을 조사
☞ II-2-①-I-1-ⓐ (보도자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최 안내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2024년도 핀테크 정책방향 설명 및 현장간담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진행
☞ II-2-①-I-1-ⓑ-1 240126 (보도자료) 제1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
☞ II-2-①-I-1-ⓑ-2 240409 (보도자료) 핀테크 투자 생태계 지원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II-2-①-I-1-ⓑ-3 241119 (보도자료) 제 2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5.75/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연단위로 한 해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전략 운영
<table>
<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
<tr><td>1/4분기</td><td>핀테크 오픈네트워킹 데이 개최</td><td>1월</td></tr>
<tr><td rowspan="2">2/4분기</td><td>핀테크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td><td>4월</td></tr>
<tr><td>'24년 상반기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td><td>6월</td></tr>
<tr><td>3/4분기</td><td>「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최</td><td>8월</td></tr>
<tr><td>4/4분기</td><td>'23년 하반기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td><td>12월</td></tr>
</table>
- (난이도) 연단위, 반기단위 등 일련의 과정이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계획으로 반영</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5.75/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핀테크 지원 정책의 직접 대상자인 기업의 만족도는 과제에 대한 대표적 성과지표
- (적극성) '20년부터 총 3개년 실적의 평균치(87.2)를 기준점으로 하여 상승 추세 및 개선 의지를 반영</td></tr>
</table>

<table>
<tr>
<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7.75/2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h>비고</th></tr>
<tr><td>1/4 분기</td><td>핀테크 오픈네트워킹 데이 개최</td><td>1월</td><td>완료</td></tr>
<tr><td rowspan="2">2/4 분기</td><td>핀테크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td><td>4월</td><td>완료</td></tr>
<tr><td>'24년 상반기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td><td>6월</td><td>완료</td></tr>
<tr><td>3/4 분기</td><td>「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최</td><td>8월</td><td>완료</td></tr>
<tr><td>4/4 분기</td><td>'23년 하반기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td><td>12월</td><td>완료</td></tr>
</table>
☞ II-2-①-II-1-ⓐ-1 240126 (보도자료) 제1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
☞ II-2-①-II-1-ⓐ-2 240409 (보도자료) 핀테크 투자생태계 지원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II-2-①-II-1-ⓐ-3 240920 (보도자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최 결과
☞ II-2-①-II-1-ⓐ-4 241119 (보도자료) 제 2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
</td>
</tr>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7.5/3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핀테크 지원 대상 기업 만족도(공통)</td><td>87.5점</td><td>89.3점</td><td>달성</td></tr>
</table>
</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12.75/2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해 총 5,558억원 조성하여 총 166개 기업에 3,694억원 투자완료
-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에서 '24년 한해동안 대출·보증 등 총 2,597억원의 정책금융상품 공급
-(코리아 핀테크위크) 3일간 12,5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 109개 기업·기관의 전시 참여, 총 11개 핀테크 전문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 II-2-①-III-1-ⓐ-1 240920 (보도자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최 결과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최를 통해 국민들의 핀테크에 대한 접근성 제고

<디지털투데이(8.21)> 자체금융 AI로 이상거래 24시간 실시간 탐지
모든 거래 내용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해 거래량의 과다 증감, 거래 오류 및 성공률 변동, 동일 오류 연속 발생등 이상 거래 발생 시 즉시 알림을 보내 결제 오류나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정우성 헥토파이낸셜 마케팅본부장 상무는 "헥토파이낸셜은 높은 서비스 신뢰도와 안정성을 강점으로 온라인 결제 및 정산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핀테크
</td>
</tr>
</table>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통해 최신 AI기술을 적용한 금융 솔루션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가맹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투데이(8.21)> 핀다, AI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 테마 체험존 선보여** (…) 핀다는 대출 플랫폼 '핀다' 앱과 AI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을 주력으로 하는 핀테크사다. 창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픈업은 약 1억3000만개 이상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상권 특성을 분석해 알려주는 서비스다. 핀다는 지난 2022년 7월 오픈업 인수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같은 씬파일러들의 금융 격차 해소에도 앞장서오고 있다. 핀다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코리아 핀테크 위크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핀다는 이번 행사에서 오픈업의 AI 기술력을 전면에 내세워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핀다가 코리아 핀테크 위크 행사에서 오픈업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핀다 홍보 부스는 관람객들이 오픈업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 현장 관람객들은 핀다 부스 체험 존 내에 설치된 PC와 태블릿으로 상권 분석, 주거 및 유동인구 파악, 외식업 창업 계산기 등 오픈업의 다양한 기능 들을 자유롭게 경험해볼 수 있다. 사업 협력을 원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는 현장 상담도 진행된다.

Ⅱ-2-②	마이데이터 2.0 추진	우수

(1) 평가결과 *(1~2페이지)*

□ 주요성과

○ 금융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4대 목표, 15대 과제를 마련('24.4월)

*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해 금융회사에 흩어진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통합 제공·조회하는 서비스 →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연금상품, 전자금융, 통신, 공공정보 등 720개 정보항목 제공중

- 마이데이터의 종합 금융플랫폼으로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주요 내용

1 **(정보확대)** ❶전체 금융자산 조회, ❷결제내역 상세 정보 제공, ❸공공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2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 ❶오프라인 가입·조회·활용, ❷겸영·부수업무 유연화, ❸결합기준 명확화, ❹정기적 전송범위 구체화

3 **(이용자 편의성 제고)** ❶어카운트인포 연계, ❷동의 절차 간소화, ❸본인정보 관리 강화, ❹가입 유효기간 연장, ❺청소년 이용 개선

4 **(정보보호)** ❶제3자 제공시 보안 강화, ❷미활용 마이데이터 삭제, ❸장기 미접속자 보호

○ 또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제도 개선사항을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반영('24.9월)하고 시행령·감독규정 등 법령 개정을 동시에 추진('25.1월)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금융위·신정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금융위·보안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API 규격(금융위·보안원)

○ 그 결과,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도입('22.1월) 이후 '24년말 기준 이용자(1.53억명)와 데이터 전송량(일평균 6.97억건)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금융 정보 종합플랫폼으로 자리매김

- 아울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집적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출현하며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

* (예) 대환대출 서비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신용점수 올리기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9.5/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매월 마이데이터 이용자 수, 데이터 전송량, 데이터 전송 성공률 등을 파악하며, 마이데이터 이용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중
☞ II-2-②-I-1-ⓐ-1-마이데이터 2.0 추진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24.1분기 유관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협회 등이 참여한 마이데이터 2.0 TF를 총 7회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 실시
☞ II-2-②-I-1-ⓑ-1-마이데이터 2.0 추진</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7.5/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유관기관, 사업자 등이 참여한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등
<table><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tr><td>1/4분기</td><td>마이데이터 이해관계자 및 유관기관 TF 개최·논의</td><td>3월</td></tr><tr><td>2/4분기</td><td>「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마련</td><td>4월</td></tr><tr><td>3/4분기</td><td>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td><td>9월</td></tr></table>- (난이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면서도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다양한 업권이 참여하며, 기술적인 문제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등 적합한 추진과제 마련이 다소 도전적</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8/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성과지표는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 금융정보 종합플랫폼으로서 정책목표를 대표
- (적극성) 마이데이터 도입 후 2년만에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고도화를 위한 과제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개선 요구에 대응</td></tr>
<tr><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9/20</td><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tr><td>마이데이터 2.0 TF 개최</td><td>(‘24.1~3월) 총7회 개최
(유관기관, 사업자 등 참여)</td><td>완료</td></tr><tr><td>「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마련</td><td>(‘24.4.4.)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4대 목표 15대 과제 발표</td><td>완료</td></tr><tr><td>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td><td>(‘24.9.30.)가이드라인 개정 및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25.1.15. 개정 완료)</td><td>완료</td></tr></table>☞ II-2-②-II-1-1-마이데이터 2.0 추진</td></tr>
</table>

<table>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8.25/3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II-2-②-II-2-1-마이데이터 2.0 추진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마련</td><td>방안 마련</td><td>방안 마련</td><td>달성</td></tr>
</table>
ㅇ 추가 설명 사항 (필요시 작성)
- 해당사항 없음
</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14/2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24년말 기준 마이데이터 사업자 수 66개사, 이용자 수(중복 포함) 1.53억명, 일평균 데이터 전송량 6.97억건 등 꾸준히 증가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마이데이터 2.0 도입 이후 2년만에 이용자 수가 1.53억명에 이르고, 대환대출, 보험비교·추천, 신용점수 올리기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현에 기여
</td>
</tr>
</table>

Ⅱ-2-③	가상자산 규율체계 확립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규율체계 마련('24.7.19일)

○ 그간 국회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규율체계 마련

○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가상자산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 주요내용 >
▪ **(예치금 보호)**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탁
▪ **(가상자산 보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일정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처벌근거 마련**
➡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가능 * (과징금) 부당이득의 2배, (형사처벌)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

○ 법 시행을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구체적 보관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도 마련하여 시행

※ 가상자산 정책·제도 수립 및 불공정행위 조사 등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금융위(가상자산과)·금감원(가상자산감독·조사국) 조직도 신설('24.6월)

□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24.9월)

○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로 인해 **이용자 자산**에 대한 **관리 소홀 및 연락 두절**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이용자 자산의 **안전한 반환·이전**을 위한 **정책 필요성**↑

* 코인마켓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하였고, 3개사 영업 중단

○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업계 자율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설립하여 영업종료 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

*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정상 출금 지원, 과도한 출금수수료 부과 금지 등

□ 「가상자산위원회」* 출범('24.11.6일) 및 향후 과제 논의 본격화 등

* (목적)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 자문 수행(가상자산법 §5)
(구성)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과기부, 금감원 및 민간 전문가(9인) 참여

○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상자산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자문 및 범정부 협업 강화

- 1차 회의(11.6일)를 개최하여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포함, ▲가상자산 관련 향후 정책 추진과제* 등을 논의

*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블록체인 활성화 방안 등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 과정에서도 TF 논의를 통해 적극적인 민간전문가 의견수렴을 하는 한편,

- "韓-OECD 디지털금융 라운드테이블"* 개최('24.3월) 및 해외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해외 기관 및 글로벌 전문가들과도 적극 소통

* 「한국-OECD 라운드테이블: 아세안의 디지털 금융에 관하여(OECD-FSC-KIF Roundtable on Digital Finance in ASEAN)」 →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동향 등 논의(3.18~19일)

< 가상자산 관련 간담회 개최 현황(「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등 포함) >

회차	개최일자	논의내용
1	1.30일	○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구축」 및 「상장 관련 내부통제 마련 지원」 등
2	2.29일	○ 가상자산의 발행량·유통량 기준 마련 방안 등
3	3.18일	○ 한국-OECD 디지털금융 라운드테이블 개최
4	3.29일	○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논의
5	4.26일	○ NFT 가이드라인 등
6	5.31일	○ 스테이블 코인 관련 거시경제 이슈 등
7	6.25일	○ 금융위원장 주재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8	8.9일	○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동향 등
9	8.22일	○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에 대한 현장점검
10	9.2일	○ 부위원장-美 SEC 상임위원 면담
11	9.5일	○ 가상자산 관련 외국인 전문가 면담 – 글로벌 규제체계 동향 공유
12	9.20일	○ 미국 차기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 및 국내 대응 방안
13	11.6일	○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향후 정책과제 등 논의
14	12.5일	○ 英 FT 'Cryto & Digital Assets Summit Asia' 패널토론 참석
15	12.26일	○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OKX) 면담 – 상장기준, 내부통제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9/10*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단계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정안 부대의견에 따라 동 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평가업 · 자문업 규율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규제사항 연구용역 실시(’24.5월) ☞ Ⅱ-2-③-1-1-ⓐ 연구용역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등 회의체를 적극 운영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법정 자문기구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운영 ☞ Ⅱ-2-③-1-1-ⓑ 전문가 TF 등 현장의견 수렴 - 국회 등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수렴 * 디지털자산정책포럼 개최 “미국 차기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 및 국내 대응 방안” 토론회 (9.13일) 한국금융법학회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대적과제” 공동학술대회(11.8일) 한국 형사·법무정책 연구원 “사법적 측면에서의 디지털자산” 세미나(11.14일) 등
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	*7.5/10*	**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 (1·2분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하위규정 마련 및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논의 지속 등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기본적 규율체계 마련지원 - (3분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자율규제 등 시행(7.19.) - (4분기)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부처 협업 및 전문가 의견수렴 강화(11.9.) **ㅇ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가상자산규율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을 시행, 시장에 안착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 -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등을 적극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 국회의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정 이후에는 보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하위규정 제정안 마련 등을 진행하여 시행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6/10</td><td>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
  · 이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한 규율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 충분한 대표성 확보
  · 국정과제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동 TF를 적극 활용 중
- (적극성) ’22·23년 실적 평균(10회) 대비 ’24년 목표치의 증가율은 50%(15회)로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목표 설정
  ·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안건을 작성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글로벌 규제동향, NFT 등 ’24년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 진행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3년 실적</th><th>’24년 목표치</th><th>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r>
<tr><td>디지털자산 TF 및 간담회 등 개최·참석</td><td>14</td><td>15</td><td>TF 및 간담회 개최·참석 횟수</td></tr>
</table>

</td></tr>
<tr><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8.25/20</td><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및 워킹그룹 개최·논의</td><td>「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및 워킹그룹 회의 등 개최</td><td>완료</td></tr>
</table>

☞ II-2-③-1-1-ⓑ 전문가 TF 등 현장의견 수렴

ㅇ 일부완료·미흡 사유 (필요시 작성)

- 해당없음

</td></tr>
</table>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td>26.75/30</td><td>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디지털자산 TF 및 간담회 등 개최・참석</td><td>15</td><td>15</td><td>달성</td></tr>
</table>

<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등 관련 간담회 개최 현황 >

<table>
<tr><th>회차</th><th>개최일자</th><th>논의내용</th></tr>
<tr><td>1</td><td>1.30일</td><td>○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구축」 및 「상장 관련 내부통제 마련 지원」 등</td></tr>
<tr><td>2</td><td>2.29일</td><td>○ 가상자산의 발행량·유통량 기준 마련 방안 등</td></tr>
<tr><td>3</td><td>3.18일</td><td>○ 한국-OECD 디지털금융 라운드테이블 개최</td></tr>
<tr><td>4</td><td>3.29일</td><td>○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논의</td></tr>
<tr><td>5</td><td>4.26일</td><td>○ NFT 가이드라인 등</td></tr>
<tr><td>6</td><td>5.31일</td><td>○ 스테이블 코인 관련 거시경제 이슈 등</td></tr>
<tr><td>7</td><td>6.25일</td><td>○ 금융위원장 주재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td></tr>
<tr><td>8</td><td>8.9일</td><td>○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동향 등</td></tr>
<tr><td>9</td><td>8.22일</td><td>○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에 대한 현장점검</td></tr>
<tr><td>10</td><td>9.2일</td><td>○ 부위원장-美 SEC 상임위원 면담</td></tr>
<tr><td>11</td><td>9.5일</td><td>○ 가상자산 관련 외국인 전문가 면담 – 글로벌 규제체계 동향 공유</td></tr>
<tr><td>12</td><td>9.20일</td><td>○ 미국 차기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 및 국내 대응 방안</td></tr>
<tr><td>13</td><td>11.6일</td><td>○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향후 정책과제 등 논의</td></tr>
<tr><td>14</td><td>12.5일</td><td>○ 英 FT 'Cryto & Digital Assets Summit Asia' 패널토론 참석</td></tr>
<tr><td>15</td><td>12.26일</td><td>○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OKX) 면담 – 상장기준, 내부통제 등</td></tr>
</table>

☞ II-2-③-1-1-ⓑ 전문가 TF 등 현장의견 수렴

☞ II-2-③-2-2-1 한국-OECD 디지털금융 라운드테이블 개최(보도자료)

○ 추가 설명 사항 (필요시 작성)

- 국회 등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수렴

* 디지털자산정책포럼 개최 "미국 차기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 및 국내 대응 방안" 토론회 (9.13일)
한국금융법학회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대적과제" 공동학술대회(11.8일)
한국 형사・법무정책 연구원 "사법적 측면에서의 디지털자산" 세미나(11.14일) 등

</td></tr>
</table>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	*16.5/20*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정량)「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일) · 동 법 시행 준비 및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금감원에 가상자산 관련 부서 2개 신설(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 · 금융위원회 내 전담부서 신설(디지털금융정책관 가상자산과) ☞ II-2-③-3-1-ⓐ 가상자산법 시행(보도자료)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인 증진 정도 등** - (정성)「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규율을 마련 ·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조사권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동 업무 수행가능 →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업무 착수 ☞ II-2-③-3-1-ⓑ-1 불공정거래조사 시작(보도자료) II-2-③-3-1-ⓑ-2 현장실태 점검(보도자료) II-2-③-3-1-ⓑ-3 불공정거래 조치(보도자료) · 또한 동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글로벌 규제동향 연구 등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단계적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 마련 · 추가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설립하여 영업종료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이전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 ☞ II-2-③-3-1-ⓑ-4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보도자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이해관계자의 긍정적 반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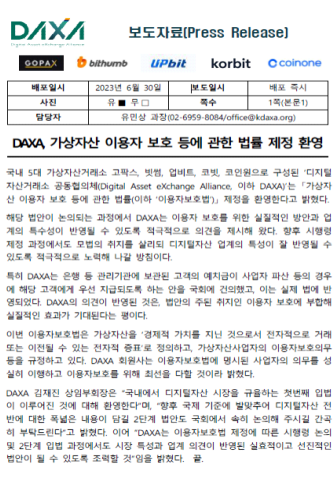 DAXA 보도자료(Press Release) GOPAX bithumb UPbit korbit coinone 배포일시: 2023년 6월 30일 / 보도일시: 배포 즉시 사진: 유 ■ 무 □ / 특수: 1쪽(본문1) 담당자: 유민상 과장(02-6959-8084/office@kdaxa.org) DAXA,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환영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DAXA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업계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모법의 취지를 살리되 디지털자산 업계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DAXA는 은행 등 관리기관에 보관된 고객의 예치금이 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 해당 고객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하는 안을 국회에 건의했고, 이는 실제 법에 반영되었다. DAXA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법안의 주된 취지인 이용자 보호에 부합해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이다. 이번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보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DAXA 회원사는 이용자보호법에 명시된 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번째 입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DAXA는 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논의 및 2단계 입법 과정에서도 시장 특성과 업계 의견이 반영된 실효적이고 선진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임을 밝혔다. 끝.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모법의 취지를 살리되 디지털자산 업계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DAXA 회원사는 이용자보호법에 명시된 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언론보도 내용1 > **(조선비즈, 10.16) 비트코인, 한국이 더 싸다... 거래량 감소에 김치프리미엄 '마이너스'** (···)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던 지난 3월 10%를 넘어섰던 '김치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진 상황… 미국 대선 등 여러 호재에도 김치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진 것은 지난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규제도 강화된 영향…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언론보도 내용2 >** **(SBS Biz, 10.16) 5대 거래소 3분기 예치금 이용료 160억 지급... 업비트 121억, 빗썸 37억** (···) 가상자산거래소 원화예치금을 기준으로 5대 거래소는 이자에 해당하는 이용료로 160억원을 지급... 업비트가 136만명에 121억, 빗썸이 67만명에 37억원 지급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언론보도 내용3 >** **(한경비즈니스, 8.3) '온라인 도박장' 오명 벗을까 ... 코인에 칼 빼든 정부**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사고팔 수 있었던 가상자산 시장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급등락을 반복했던 각종 코인의 가격이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관측

Ⅱ-3-①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내 금융사 및 금융 유관기관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역할·기능 강화방안** 마련**('24.3월)

* 25개 금융기관(11개 민간금융기관, 9개 공공금융기관, 5개 금융협회)으로 구성된 협의체('13년~현재)

** ①해외협력포럼 개최횟수를 연1회→2회로 변경하여 개도국 뿐 아니라 선진국과의 협력 모색, ②해외진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등

○ **한국 금융권**(K-금융)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고위급 해외방문 등을 통한 **금융외교·협력 대폭 강화**

< 주요 해외방문 사례 >

○ **금융위원장 일본 방문**('24.9월)을 통해 **양국 금융당국간 소통·협력체계 지속**
○ **금융위원장 폴란드 방문**('24.3월)에 이어 **폴란드 금융감독청장 방한**('24.11월)을 통해 **방산·원전 등 금융지원 발판 마련**
○ **부위원장 동남아시아**(싱가포르·태국, '24.2월), **EU**(유럽중앙은행(ECB)·리투아니아, '24.10월) **방문**을 통해 **K-금융 세일즈**

○ 국내 금융회사의 ASEAN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금융산업 ASEAN 진출 확대전략**」 **연구용역*** 수행('24.4월~12월)

* 국가별 시장현황 및 진출여건을 분석하고 진출유망국가를 중심으로 맞춤형 전략 수립 권고

⇨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등 그간의 금융산업 글로벌화 과제 지속 추진 결과, '22.6월 대비 '24.6월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의 총 자산규모는 14%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18% 증가***

* (총자산) 2,323억달러→2,655억달러 / (당기순이익) 10.1억달러→12억달러

○ '24년 이후 국내 금융회사 유럽진출 활성화 등 **K-금융 외연 지속 확장**

* 기업은행 폴란드법인 설립인가 취득('24.11.27.) → '25.下 개소예정
산업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 설립인가 취득('24.9.26.) → '25.下 개소예정
모인(핀테크 社) 리투아니아 현지법인 인가신청 → 금융당국 심사중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관련된 실제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금융사의 애로사항·개선 필요사항 검토를 포함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목표치를 더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검토

□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Ⅱ-3-①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방안 지속 추진 및 성과지표 검토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방안 지속 추진 및 성과지표 검토(연중)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8.75/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우리 금융회사의 아세안 국가 진출현황 분석*을 통해 진출수요를 파악하여 「금융산업 ASEAN 진출 확대전략」 연구용역 주제 선정 등 아세안 협력네트워크 강화 추진
* 아세안 지역 진출한 금융회사 점포는 '13년말(96개) 대비 80% 증가한 173개로 전체 해외 점포수의 37%에 해당
☞ III-3-①-I-1-ⓐ-1-(참고)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점포 개수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정례회의(월1회)에 참석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애로사항,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부지원 등 청취</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3/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금융사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분기별로 고위급 출장 계획을 반영하여 해외 금융당국과의 네트워크 형성 작업이 지속·강화되도록 계획 수립</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4.75/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해외 금융당국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현지 진출 국내 금융회사 애로사항 해소, 상호 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금융회사 동반진출 등이 이루어지므로, '해외 금융당국 회담 횟수'는 정책목표의 대표성을 가짐
- (적극성) 한정된 시간·자원을 고려하여 월1회 고위급 네트워킹 활동을 목표로 성과지표 설정</td></tr>
<tr><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7.75/20</td><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해외금융협력협의회 발전방안 발표</td><td>▶ 「2024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기능 강화방안」 발표(3.25.)</td><td>완료</td></tr>
<tr><td>금융산업 ASEAN 진출 확대전략 연구용역 착수</td><td>▶ 연구용역 착수(4월)</td><td>완료</td></tr>
<tr><td>금융산업 ASEAN 진출 확대전략 연구용역 완료</td><td>▶ 연구용역 완료(12월)</td><td>완료</td></tr>
<tr><td>고위급 출장을 통한 금융외교 강화</td><td>▶ 부위원장, K-금융 세일즈를 위해 싱가포르, 태국 방문(2월)
▶ 위원장, 폴란드에 K-금융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다(3월)
▶ 한·일 금융협력 강화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위원장 일본 방문 결과(9월)
▶ 부위원장, K-금융 EU수출 지원을 위해 독일·리투아니아 방문(10월)</td><td>완료</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III-3-①-II-1-1-(보도자료) '24 해금협 기능 강화방안 발표
III-3-①-II-1-2-(공문) 정책연구용역 계약체결 알림
III-3-①-II-1-3-(공문) 정책연구용역 검사결과 통보
III-3-①-II-1-4-(보도자료) 위원장 폴란드 방문, 부위원장 싱가포르·태국 방문 등</td></tr>
<tr><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td>26.5/30</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tr><td>해외 금융당국 회담 횟수</td><td>10회</td><td>19회</td><td>달성</td></tr></table>☞ III-3-①-II-2-1-(참고) 해외 금융당국 회담 횟수
○ 추가 설명 사항
- '24.8월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에 따른 해외금융당국 내방 증가 및 '24.9월 「한-베 금융협력포럼」 이후 베트남 금융당국과의 협력네트워킹 강화에 따라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를 크게 상회</td></tr>
<tr><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20점)</td><td>5.75/20</td><td>ⓐ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지속적인 금융산업 글로벌화 과제 추진을 통해 '22. 6월 대비 '24. 6월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총자산규모는 14%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18% 증가
- 기업은행 폴란드법인 설립인가 취득('24.11월), 산업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 설립인가 취득('24.9월) 등 국내 금융회사 유럽 진출 활성화
☞ III-3-①-III-1-(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일부 발췌)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해외 현지영업 여건 개선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의 수익기반 확대
-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확대로 현지 수출기업의 금융애로 완화</td></tr>
</table>

Ⅱ-3-②	외국계 금융사의 애로사항 해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24.1월)를 통해 국내영업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건의사항**과 **정책제안 청취**

- 다수 기관으로부터 개선의견이 제기된 망분리 규제* 관련, 금융보안체계의 선진화 방향을 담은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으로,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소프트웨어 및 생성형 AI 활용 필요성 증가 등으로 규제개선 필요성 제기

- **금융소비자 보호완화, 국제기준에 대한 예외적용 요구** 등* 수용 곤란한 과제는 **중장기 검토**

* 기업고객의 경우 소비자보호법 상 투자상품 설명서 제공의무 완화, BIS비율 상 위험가중치 산정 시 OECD 국가와 非OECD 국가 간 같은 기준 적용

- 또한, 12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준비태세** 및 **예정된 정책추진 의지**를 **공유**하여 외국계 금융회사의 시장에 대한 불안 해소

⇨ 국내·외 금융회사의 **영업애로 해소**를 위해 **소통**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금융제도 정비**한 결과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상승**

< 서울 및 부산의 국제금융센터 지수 >

	'19.9월	'20.9월	'21.9월	'22.9월	'23.9월	'24.9월
서울	36	25	13	11	11	11
부산	43	40	33	29	33	25

※ **GFCI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지수**

- 정의 : 연 2회(3월, 9월) 세계 도시별 금융 경쟁력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지수('07~)
- 주관 : 영국 Z/Yen,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 공동 주관('16년~)
- 평가지표 : 5대 평가항목(영업환경, 인적자본, 인프라, 금융산업 발전도, 도시평판)과 온라인 설문을 종합하여 매년 2회(3월, 9월) 발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사항 관련 구체적인 건의내용 및 검토 결과에 대한 작성이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금융소비자 보호완화 등 수용곤란 과제에 해당하는 외국계 금융회사 건의사항에 대해 향후 금융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애로해소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그러한 노력을 외국계 금융회사와 소통

□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Ⅱ-3-②	외국계 금융회사 건의사항 지속 검토 및 소통	외국계 금융회사 건의사항 지속 검토 및 소통 (연중)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8.25/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진입 현황은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 관련 애로사항 청취·해소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계획 수립
* ('16년) 168개 → ('23년) 171개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화 방향(금융연구원) 연구결과 참고
☞ Ⅲ-3-②-Ⅰ-1-ⓑ-(발표자료)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화 방향</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4/10</td><td>○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의견청취, 건의과제 검토, 다수업권에 해당하는 과제 공동 검토 등 추진일정을 구체적 계획하고 연내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설정</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4/10</td><td>○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해소는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추진과 직결되는 과제로 성과지표 '건의과제에 대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상정'은 정책목표를 잘 대표하며, 과제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냄
* 금융위원장, 서울·부산시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5인), 유관기관 위원(6인), 민간위원(10인)으로 구성</td></tr>
<tr><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7/20</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외국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등</td><td>▶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1월)</td><td>완료</td></tr>
<tr><td>건의과제 처리계획 검토</td><td>▶ 외국계 금융사 건의사항 검토(5월)</td><td>완료</td></tr>
<tr><td>주요 개선사례 정리 및 규제개선방향 발표</td><td>▶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8월)
▶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12월)</td><td>완료</td></tr>
</table>
☞ Ⅲ-3-②-Ⅱ-1-1-(보도자료)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Ⅲ-3-②-Ⅱ-1-2-(메모보고 및 개요)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영업 관련 검토회의
Ⅲ-3-②-Ⅱ-1-3-(보도자료)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Ⅲ-3-②-Ⅱ-1-4-(보도자료)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 주재</td></tr>
</table>

<table>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5.75/3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건의과제에 대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상정</td><td>1회</td><td>위원회 논의 및 규제개선</td><td>달성</td></tr>
</table>
ㅇ 추가 설명 사항
- 간담회 등을 통해 외국계 금융사 국내영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논의(6월)
☞ III-3-②-II-2-1-(문서)제2차 금융중심지추진 분과위원회 개최
- 건의과제 중 금융분야 신기술 활용을 저해하는 망분리 규제에 대해 개선 로드맵 발표(8월)
- 금융소비자 보호완화, 국제기준에 대한 예외적용요구 등 수용곤란 과제*는 중장기 검토
* 기업고객의 경우 소비자보호법 상 투자상품 설명서 제공의무 완화, BIS 비율 상 위험가중치 산정 시 OECD 국가와 비 OECD 국가 간 같은 기준 적용 등
- 또한, 12월에는 불안정한 정치상황 下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를 통해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준비태세를 공유하여 외국계 금융회사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시급한 애로사항 완화를 위해 노력
</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5.75/2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국내외 금융회사의 영업애로 해소를 위해 소통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금융제도 정비한 결과, 금융규제 등을 기준으로 세계 도시별 금융경쟁력을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상승*
* ('19) 서울 36위, 부산 43위 → ('24) 서울 11위, 부산 25위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외국계 금융회사와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
- 국내 금융회사와 외국계 금융회사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들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 제공 기여
</td>
</tr>
</table>

Ⅲ-1-①	온라인 금융상품·서비스의 다크패턴 제한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패턴 사용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연구**를 추진('24.4월~9월)

- **공정위**에서 旣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각 다크패턴 유형별 개선방안**을 검토

- 금융회사 등 **업계 협의** 등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중으로, 향후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25.상반기)

* (10.23일) 정책연구진, 금감원, 8개 업권 협회 의견수렴 회의

○ 금번 **금융권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소비자의 비합리적 선택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크패턴 사례>

❶ 모호한 표현	❷ 마케팅 수신 강제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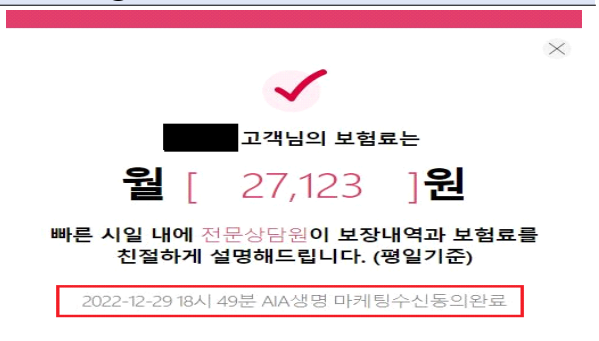
❸ 개인정보 동의 강요	**❹ 감정적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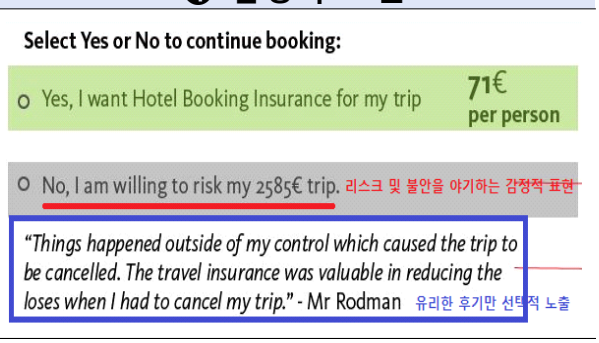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금융업권에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초안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가이드라인 보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가시적인 성과 발표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금융업권 특성을 잘 반영한 온라인 금융상품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

□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Ⅲ-1-①	온라인 금융상품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발표	온라인 금융상품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발표('25년 중)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7.67/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금융권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공정위에서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분석 후 참고자료로 활용
☞ Ⅲ-1-①-I-1-ⓐ-1-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별도의 사전 현장 의견 수렴 절차는 없음</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6/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3분기까지 “비대면(온라인)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다크패턴 사용제한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4분에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
<table>
<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
<tr><td>2/4분기</td><td>정책연구용역 착수 및 수행</td><td>4월</td></tr>
<tr><td>3/4분기</td><td>정책연구용역 완료 및 검토</td><td>9월</td></tr>
<tr><td rowspan="3">4/4분기</td><td>금융상품 다크패턴 사용제한 지침(가이드라인) 초안 마련</td><td>10월</td></tr>
<tr><td>지침 내용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td><td>10월</td></tr>
<tr><td>업계 의견에 따라 가이드라인 마련 중</td><td>12월</td></tr>
</table>
- (난이도) 전 금융업권의 온라인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하는 것으로, 다양한 온라인 금융상품 종류 및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난이도가 높음</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5.67/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의 업권 공유 여부가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를 판단하는 대표성 있는 지표라고 판단
- (적극성) 전 금융업권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종류(은행, 보험, 증권 등 포함)의 온라인 금융상품을 아우르는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하는 것은 도전성을 지님</td></tr>
<tr><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4.33/20</td><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 고</th></tr>
<tr><td>정책연구용역 실시</td><td>(9.30) “비대면(온라인)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다크패턴 사용제한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완료</td><td>완료</td></tr>
<tr><td>다크패턴 사용제한 지침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td><td>(10.23) 정책연구진, 금감원, 8개 업권 협회 의견수렴 회의</td><td>완료</td></tr>
<tr><td>다크패턴 사용제한 지침 발표</td><td>(10.23) 업계 수렴회의에서 다크패턴 지침 초안 공유</td><td>일부완료</td></tr>
</table>
☞ 예시: Ⅲ-1-①-Ⅱ-1-1-연구용역결과 보고서
Ⅲ-1-①-Ⅱ-1-2-업계 의견수렴 회의 개요</td></tr>
</table>

<table>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4.33/3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Ⅲ-1-①-Ⅱ-2-1-업계 의견수렴 회의 개요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다크패턴 제한 규율 가이드라인 마련</td><td>마련</td><td>마련</td><td>일부 달성</td></tr>
</table>
ㅇ 추가 설명 사항 (필요시 작성)
- 금융업권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금융권 온라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유했으므로, 성과를 일부 달성한 것으로 보았음
</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8/2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비대면(온라인)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다크패턴 사용 제한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이 마련되어, 업계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업계에 공유되었음
☞ Ⅲ-1-①-Ⅱ-1-1-연구용역결과 보고서
Ⅲ-1-①-Ⅲ-1-ⓐ-2-업계 의견수렴 회의 개요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금융권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소비자의 비합리적 선택에 따른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
</td>
</tr>
</table>

Ⅲ-1-②	2030 청년 대상 금융교육 추진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금감원 등 16개 교육기관은 대학생, 군장병 등 **계층**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24.1~9월 기간**중 **교육인원**은 **총 67만 3,005명**

* (유관기관) 금감원·예보·서금원·신복위·주금공·신보, (교육기관) 청교협·시교협·소비자보호재단, (금융협회) 은행연·투교협·생보협·손보협·저축은행중앙회·신협중앙회·여신협

<표> '24.1~9월 중 금융교육실적

구 분	청소년	대학생	군장병	고령층	취약층	기 타*	합 계
교육인원(명)	189,170	80,684	143,271	95,734	118,174	45,972	673,005

* 일반 성인, 교사, 금융교육 강사 등

○ 금융위·금감원·소비자보호재단 공동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진행** ('24.7.2.~11.30.)

- **청년들**의 **과도한 부채사용**을 **예방**하고 **건전한 자산관리 방법** 등을 전달하기 위해 **캠페인 영상***을 **제작.배포**(서금원, 투교협)

* 유튜버 '슈카'가 출연하는 숏폼 영상 시리즈(❶돈 모으기, ❷돈 지키기, ❸돈 불리기, ❹투자위험)

-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는 '**청년정책 박람회**' 등* **참여**를 통해 **금융교육 홍보부스 운영**(금감원, 서금원, 투교협 등)

*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8월), 청년정책 박람회(9월)

- **금융교육 콘텐츠 확산** 및 청년들의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금융권 공동 금융교육 캠페인 소문내기 이벤트*** 진행

* 총 13개 금융사(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광주은행, 교보생명, 한화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신한카드, 삼성카드, 웰컴저축은행, 투교협 등)가 각 금융회사 SNS 등을 통해 캠페인 및 금융교육 정보 공유

○ **청년들**의 **자산형성**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1:1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 실시**(금감원)

- 참가자 접수를 통해 **458명(자립준비청년 81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전문 재무설계사**가 **최대 2회 상담 제공**

○ 청년층의 **금융거래 목적·자금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teachable moment*)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생애주기상의 변화(취업·결혼·출산 등) 또는 일상적인 상황(주택구입, 신용카드 발급 등) 등

- **민간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받는 **대학 신입생** 및 **첫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적시성 있는 금융교육 콘텐츠** 제공('24.3월~)

○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제고를 위한 「**청년, 금융을 나답게**」 **캠페인** 전개('24.7~10월)

- **민간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금융교육 이수·인증 챌린지** 운영('24.10월), 전문가와 함께하는 **청년금융 토크콘서트** 개최('24.10.30) 등

> ⇨ **'24년 1~9월 기간 청년 22.3만명(대학생, 군장병)에게 금융교육 제공**
>
> ▸ **대면 교육 등 강화**
>
> ▸ **군 장병, 자립준비청년 등 청년 유형별 금융교육 강화**

○ 공교육 내 금융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사회과 교사 등 교육현장 관계자 대상 '금융과목 선택장려 및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설명회' 등 진행

○ 관계부처, 금융협회·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금융교육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청년 금융교육 제공 현황 점검 및 **의견 수렴** 진행

* (1차) '24.6.26일 (2차) '24.10.28일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8/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청년층의 금융이해력 전반, 금융지식, 금융행동, 금융태도 등에 대한 조사 실시 (2022 금융이해력 조사, ’23.3월)
- 해외사례 및 청년 행태 분석을 통한 ‘2030 청년층 금융교육 강화방안’ 마련(’23.12월)
☞ III-1-②-I-1-ⓐ-1-2022 금융이해력 조사
III-1-②-I-1-ⓐ-2-2030 청년층 금융교육 강화방안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연 2회의 ‘금융교육협의회’ 개최(23년 2차, 24년 1차)를 통한 관계 부처, 금융협회 등의 의견수렴 진행
☞ III-1-②-I-1-ⓑ-1-보도자료(23년 2차 금융교육협의회 관련)
III-1-②-I-1-ⓑ-2-보도자료(24년 1차 금융교육협의회 관련)</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6.67/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견수렴-민관협력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
<table>
<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세부 일정</th></tr>
<tr><td>1/4분기</td><td>주요 금융회사를 통한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시행 (카드, 은행)</td><td>’24.3월</td></tr>
<tr><td rowspan="3">2/4분기</td><td>주요 금융회사를 통한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시행 (증권, 보험)</td><td>’24.4월</td></tr>
<tr><td>청년 대상 금융교육 캠페인 용역 추진</td><td>’24.4월</td></tr>
<tr><td>금융교육협의회 개최</td><td>’24.6월</td></tr>
<tr><td rowspan="2">3/4분기</td><td>청년 대상 금융교육 캠페인 진행</td><td>’24.8월</td></tr>
<tr><td>서울시 청년주간 협업을 통해 금융교육 홍보</td><td>’24.9월</td></tr>
<tr><td>4/4분기</td><td>금융교육협의회 개최</td><td>’24.12월</td></tr>
</table>
- (난이도) 민간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정부부처 차원의 금융교육 캠페인을 시행한 최초사례로 도전적인 계획 수립</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5.33/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금융공공기관 등의 교육실적의 합으로 측정되는 성과지표는 청년 금융교육 사업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정량지표
- (적극성) 코로나-19 이후 회복된 금융교육 실적을 감안하여, 전국민 금융교육 60만명 중 1/4 수준인 15만명은 도전적인 목표치</td></tr>
</table>

<table>
<tr>
<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6.67/2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진계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1/4분기</td><td>주요 금융회사(신한카드, 국민은행)를 통한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시행('24.3월)</td><td>완료</td></tr>
<tr><td rowspan="2">2/4분기</td><td>'24년도 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6.26일)</td><td>완료</td></tr>
<tr><td>청년 대상 금융교육 캠페인 용역 추진(6-10월)</td><td>완료</td></tr>
<tr><td rowspan="2">3/4분기</td><td>청년의 날 행사 내 금융교육 홍보 부스 운영(9.21일)</td><td>완료</td></tr>
<tr><td>청년 대상 금융교육 캠페인 진행(토크콘서트 등, ~10.31일)</td><td>완료</td></tr>
<tr><td>4/4분기</td><td>'24년도 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10.30일)</td><td>완료</td></tr>
</table>
☞ Ⅲ-1-②-Ⅱ-1—1-보도자료(금융회사 협업 맞춤형 금융교육 관련)
Ⅲ-1-②-Ⅱ-1-2-보도자료(24년도 1차 금교협 및 캠페인 관련)
Ⅲ-1-②-Ⅱ-1-3-보도자료(청년의 날 관련)
Ⅲ-1-②-Ⅱ-1-4-보도자료(캠페인 토크콘서트 관련)
Ⅲ-1-②-Ⅱ-1-5-보도자료(24년도 2차 금교협 관련)
</td>
</tr>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5.33/3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Ⅲ-1-②-Ⅱ-2—1-금교협안건(24년도 금융교육 추진실적)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청년 금융교육 실적</td><td>15만 명</td><td>22.3만 명</td><td>달성</td></tr>
</table>
</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11/2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방문교육 등 대면교육을 전면 재개하여 군장병 대상 오프라인 교육실적 큰 폭으로 확대(91.6%↑)
☞ Ⅲ-1-②-Ⅲ-1—ⓐ-1-금교협안건(24년도 금융교육 추진실적)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고등학교 금융과목 선택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청년기·사회초년생의 금융이해도 제고 및 불법 사금융 등 금융피해 예방
☞ Ⅲ-1-②-Ⅲ-1—ⓑ-1-보도자료(금융과목 설명회 개최 관련)
</td>
</tr>
</table>

Ⅲ-2-①	금융·고용 복합 지원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금융-고용 연계자 대폭 증가**(전년 대비 +496%)

➡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연계자 수 변화(명): 3,218('23) ⇒ 19,195('24)$^{+15,977(+496\%)}$

① **(협업체계 마련) 금융위·고용부 합동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 및 **MOU 체결**을 시작으로, **온**(시스템)·**오프라인**(상호출장소) **협업체계** 구축

<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 및 금융위-고용부 MOU 체결(1.24일) >

행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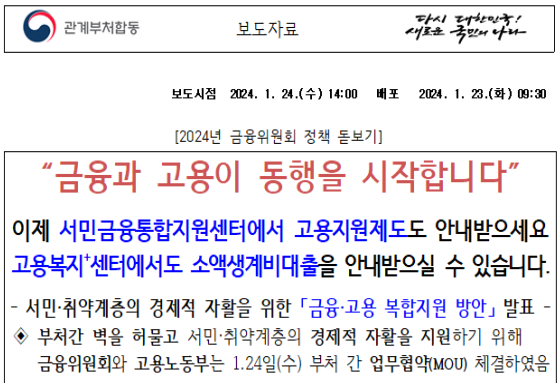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따시 도약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 24.(수) 14:00 배포 2024. 1. 23.(화) 09:30

[2024년 금융위원회 정책 돋보기]

"금융과 고용이 동행을 시작합니다"

이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제도도 안내받으세요
고용복지+센터에서도 소액생계비대출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 -

◈ 부처간 벽을 허물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1.24일(수) 부처 간 업무협약(MOU) 체결하였음

보도자료

- **(온라인) 단계별* 온라인 전산 연계**로 **업무 효율화** 및 **연계 실효성 제고**

* (1단계) **신속한**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고용부 자체 전산시스템(워크플러스)**을 이용(3월)
(2단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으로 **실시간 양방향 연계**가 가능하도록 전산 고도화(8월)

- **(오프라인)** 고객이 **한 공간에서 금융·고용 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 간 상호출장소(31개소)***를 운영(3월~)

* 각 센터 직원이 상대 센터에 주기적으로 출장, 상대 센터에서 발생하는 본인 분야 상담 진행

☞ 연계 체계 강화('24.3월) 이후 **월평균 금융-고용 연계자 수 256% 증가***

* ('23.6월~'24.2월 평균) 502명 → ('24.3~12월 평균) 1,789명(+1,287명)

< 연계체계 고도화에 따른 금융·고용 연계자 수 추이 >

(단위: 명)

연계 체계		연계 실적(건수)							월 평균 연계건수
온라인	오프라인								
수기 연계	고용센터 입점 서금센터 7개	'23.6월	'23.7월	'23.8월	'23.9월	'23.10월	'23.11월	⇨	502
		10	159	425	290	335	1,025		
		'23.12월	'24.1월	'24.2월					
		974	854	449					
워크플러스 연계	상호 출장소 개설(31개)	'24.3월	'24.4월	'24.5월	'24.6월	'24.7월	'24.8월	⇨	1,789 (+256%)
		1,013	1,760	1,776	1,939	1,644	1,608		
사보장 연계		'24.9월	'24.10월	'24.11월	'24.12월				
		2,198	2,325	1,970	1,659				

② **(연계대상 확대)** 서금센터에 방문한 **모든 무직자·비정규소득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1월 발표 → 4월 개시)

* 이전까지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고용지원제도 연계

- 나아가, 기존에는 **서민금융 이용자에** 한하여 제공되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서민금융진흥원)을 **금융→고용 연계자로도 확대** (6월 발표 → 10월 개시)

☞ 연계 대상 확대 이후 **월평균 금융-고용 연계자 수 143% 증가***

* ('24.1~3월 평균) 772명 → ('24.4~12월 평균) 1,875명(+1,103명)

☞ **취약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정책성과 개선**

** 연계자 중 연소득 2,500만원 이하자 비율: ('24.1~3월) 74.9% → ('24.4~12월) 83.1%(+8.3%p)

③ **(연계지원 확대)** 연계 고용제도 1종→ **5종 이상(청년지원제도 등)으로 확대**

- 더불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 요건 완화** 및 **금융-고용 상호교육**을 **24,916명**에게 실시('24.1~12월 누적)

☞ 요건 완화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월평균 연계건수 118% 증가***

* ('24.1~2월 평균) 652건 → ('24.3~12월 평균) 1,423건(+772건)

④ **(환류체계 도입) 고용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자**에 대하여 정책서민금융 상품 5종에 대한 **보증료 인하(0.1~0.5%p) 혹은 신용평가 가점(30점) 부여**

- 정책서민금융 연체자 등에게 **고용제도 재연계**(알림톡 발송·사후상담 진행)

☞ 고용 연계자 18,587명('24.3~12월) 중 **10.5%(1,943명)가 금융 인센티브 수혜**

☞ 정책서민금융 연체자 등 **501,509명에게 고용제도 재연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8.33/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23년도에 금융·고용 연계가 수기(↔전산)로 일부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 (3,218명)
☞ Ⅲ-2-①-I-1-ⓐ-1-’23년도 통계자료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네 번째 민생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의 금융-고용 복합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현장 국민 의견 청취(1.17)
☞ Ⅲ-2-①-I-1-ⓑ-1-보도자료(’24.1.17.)</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6.33/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민생토론회(1.17)에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이 발표된 이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연계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구체적 추진계획 설정
<table>
<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
<tr><td rowspan="2">1/4분기</td><td>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td><td>’24.1월</td></tr>
<tr><td>금융·고용 온라인 연계체계 구축(1단계), 금융·고용 복합지원 상담창구 마련, 상호 교육제공, 연계고용지원제도 확대, 취업자 인센티브 제공</td><td>3월</td></tr>
<tr><td>2/4분기</td><td>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 청년 고용지원 강화, 연체자·실효위기자 대상 고용지원제도 재연계</td><td>6월</td></tr>
<tr><td>3/4분기</td><td>금융·고용 온라인 연계체계 구축(2단계), 취업자 인센티브 제공</td><td>8월</td></tr>
<tr><td>4/4분기</td><td>복합지원 모니터링</td><td>지속</td></tr>
</table>
- (난이도) 금융위・고용부 간 MOU 체결(1,24)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양 부처 및 관련 기관 간 밀도 있는 협업이 필요하여 도전적인 과제라 판단</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5/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복합지원 상담창구(오프라인) 구축은 복합지원 안착과 대국민 상담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로, 충분히 대표성을 확보
- (적극성) 창구 마련에 서민금융센터·고용복지+센터 양 기관 간 협조 및 출장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신설 창구임을 고려할 때 난이도 있는 과제라 판단</td></tr>
</table>

<table>
<tr>
<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6.33/2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복합지원 상담창구 마련</td><td>(3월) 금융-고용 상호 출장소 31개소 신설</td><td>완료</td></tr>
<tr><td>금융·고용 온라인 연계체계 구축</td><td>(3월) 양방향 연계체계 구축 (1단계) (고용부 워크플러스 시스템 활용)
(8월) 실시간 양방향 연계 강화 (2단계)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td><td>완료</td></tr>
<tr><td>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td><td>(1월) 모든 무직자·비정규소득자 대상 고용지원 연계
(6월) 서금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대상자에 금융→고용 연계자 추가</td><td>완료</td></tr>
<tr><td>금융-고용 연계지원 확대</td><td>(1월~) 금융-고용 상호교육 제공
(6월) 청년고용지원제도 연계 추가</td><td>완료</td></tr>
<tr><td>인센티브 도입 및 고용제도 재연계</td><td>(3월) 보증료 인하 및 신용평가 가점 순차 도입
(6월) 연체자·실효위기자 재연계 알림톡 발송</td><td>완료</td></tr>
</table>
☞ Ⅲ-2-①-Ⅱ-1-1-보도자료(’24.1.24.)
Ⅲ-2-①-Ⅱ-1-2-보도자료(’24.6.27.)
Ⅲ-2-①-Ⅱ-1-3-보도자료(’24.10.28.)
</td>
</tr>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6/3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Ⅲ-2-①-Ⅱ-2-1- ‘24년 4월초 상호 출장소 현황(서금원)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복합지원 상담 창구 구축</td><td>10개 이상</td><td>31개</td><td>달성</td></tr>
</table>
- 서민금융센터와 고용복지+센터 간 상호출장소를 금융→고용 18개소, 고용→금융 13개소 설치
</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10/2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금융·고용 복합지원 연계자 수 ’23년 대비 445% 급증
: 3,218명(’23)→17,536명(’24.1~11월)
- 非복합지원자 대비 고금리대부잔액 감소율(%)↑
: 非복합지원자 10.9 ↔ 복합지원자 11.5
- 非복합지원자 대비 채무조정 3회 이상 연체자 비중(%)↓
: 非복합지원자 8.1 ↔ 복합지원자 2.2
☞ Ⅲ-2-①-Ⅲ-1-ⓐ-1-보도자료(’24.12.18.)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복합지원 만족도 조사 실시(이용자 2,222명 대상) 결과
: 이용자 81.2% 만족, 91.0% 재이용 의사 표시
☞ Ⅲ-2-①-Ⅲ-1-ⓑ-1-보도자료(ⓐ와 동일)
-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경진대회(공공기관 분야) 수상
: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 잇다’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체계 구축) 대상(대통령상) 수상
☞ Ⅲ-2-①-Ⅲ-1-ⓑ-2-보도자료(’24.11.28., 서금원)
</td>
</tr>
</table>

Ⅲ-2-②	금융·통신채무의 일괄 채무조정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통합 채무조정)**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상환하기 어려운 **취약층**을 위해 **신복위**에서 **금융·통신채무를 일괄하여 채무조정**

○ **신복위**에 **채무조정 신청**시 **익일부터 통신채무 추심이 중단**되며, 별도의 통신사 방문 없이 **신복위**에서 **원스톱**으로 **채무조정**

- 신복위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조사하여 **분할상환**(최대 10년), **원금감면**(최대 90%)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부담을 조정**

<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도입에 따른 변화 >

	현행	개선
① 추심	-	채무조정 신청 다음날 중단
② 지원절차	신복위 이용→ 통신사 신청(2단계)	신복위 직접 조정(원스톱)
③ 지원수준	5개월 분납	최대 90% 원금감면·10년 분할상환

○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 발표(6.21일), 시행 후 약 6개월간('24.6월~12월) 채무조정을 신청한 **38,037명의 채무자가 신청 다음날부터 통신사의 추심·독촉에서 벗어났으며**

- 심사를 거쳐 '24.12월말 현재 23,940**만명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안을 확정**

* 심사기간 소요(통상 2~3개월)로 신청 인원과 확정 인원간 시차가 있으나 현재 통합 채무조정 동의율은 99%로 신청자 대부분이 최종심사후 채무조정안 확정 예정

○ 이를 통해 채무자는 추심·독촉에 의한 **일상생활**에의 **단절**에서 **벗어나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

- 또한, 추심·독촉으로부터의 걱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구직활동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재기**를 위한 **환경 조성**

② **(성실상환·자활노력)** 채무조정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통합 채무조정 이용자**의 **성실상환·자활 의지 제고** 지원

○ 통신채무 **완납 전**이라도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전화 이용 재개**(3개월), **체크카드 발급**(6개월), **일시상환**(12개월)시 **추가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정상적인 경제·금융활동 재개**를 위한 채무자 **맞춤형 신용관리**

※ 신용회복위원회 맞춤형 신용관리 지원 내용
① (채무조정 신청시) 통장압류 해제, 체크카드 사용, 신용관리방법 안내
② (성실상환 4개월) 신용점수 상승방법, 신용·재무관리 진단보고서 및 솔루션 제공
③ (성실상환 9개월) 채무문제 조기해결 및 재기 방안, 여타 복합지원 상담

- 통신채무 조정자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로 **성실상환**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지원**

< 성실상환·자활노력 인센티브 >

구분	인센티브	지원내용
성실상환 유도	통신이용 재개	▸ 채무조정 3개월 성실상환자 통신 서비스 이용 재개
	체크카드 발급	▸ 채무조정 6개월 성실상환자 체크카드 발급(후불교통 가능)
	일시상환 추가감면	▸ 채무조정 12개월 성실상환자 일시상환시 15% 추가감면
자활의지 제고	신용복지 컨설팅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상환기간별 맞춤형 상담 콘텐츠 지원
	신용개선 격려금	▸ 40세미만 미취업청년 대상 신용도 개선 프로그램 이수후 신용점수 상승시 신용개선격려금 지급
	취업촉진 지원금	▸ 40세미만 미취업청년 대상 취업 컨설팅 후 직업훈련비, 면접비 지원을 통해 취업노력 유도
	고용·복지 연계	▸ 채무조정 이용자 대상 고용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등 복지 연계

○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상담 신청자 중 **1,530명이 고용·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제도, ·복지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사례1」 배달 일용직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통신채무조정을 신청
⇒ 상담 과정에서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희망하여 A씨에게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

사례2」 일용직으로 근무 중인 B씨는 통신채무조정 후 생활비 부족으로 복지상담 연계를 요청
⇒ **복지상담 연계**를 통해 4~6개월간 체납된 **공공요금(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요금) 지원**을 받게 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9/10*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상담 과정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 동시 연체한 채무자는 일상 단절, 구직어려움 등이 더욱 가중**되므로 금융·통신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통신비 납부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일선 창구로부터 지속 제기** ※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수요 사례 ▸ A씨는 코로나19시기 빚이 발생, 독서실 폐업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채무조정 이행중이나 배우자 허리디스크 치료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소액결제 100만원 이용, 연체 발생중 ▸ B씨는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핸드폰 요금도 연체(200만원)되어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이 추심을 피해다니며 가족들과도 연락두절된 상황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관계부처 공조) - **금융위(신복위)와 과기정통부(통신업계) 간 약 20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통합채무조정의 세부 프로세스를 마련 - 금융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 협업 금융·통신 재기지원 간담회 개최 및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24.6월) ○ (유관기관 협업) - **신복위-통신업권 간 통합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MOU** 체결('24.3월)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월 신복위·통신업계 현장 점검 회의 개최** ('24.7~12월) ☞ Ⅲ-2-②-Ⅰ-1-ⓑ-1 신복위·통신업계 MOU 보도자료 Ⅲ-2-②-Ⅰ-1-ⓑ-2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발표 보도자료
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	*8.67/10*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민당정협의('24.1월) →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추진」 발표**('24.2월) →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실시 ('24.6월)** → 신복위·통신업권간 실무협의('24.7 ~12월)을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은 채권미회수에 따른 손실을 우려한 통신업권의 반대로 그간 실현되지 못한 중장기과제였음 → **이동통신 3개사(SKT, KT, LGU+) 와 알뜰통신사업자(20개사) 및 휴대폰결제사(6개사)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채무조정안 실무논의**를 통해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참여를 독려하여 전체 시장점유율 98%을 참여**를 이끌어내었음 ☞ Ⅲ-2-②-Ⅰ-2-1 금융위·과기정통부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발표 보도자료 ☞ Ⅲ-2-②-Ⅰ-2-2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발표 보도자료

<table>
<tr>
<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
<td>8.67/10</td>
<td>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금융통신 일괄 채무조정'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취약층의 경제적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서 취약층 지원을 위한 확인가능한 대표성 있는 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십수년간 상담창구에서 금융·통신통합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통신업계등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하였으나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라는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음
</td>
</tr>
<tr>
<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6.67/2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 고</th></tr>
<tr><td>(1분기)
- 금융-통신 일괄 채무조정을 위한 통신업권 회의
- 금융-통신 일괄 채무조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td><td>· ('24.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과제로 발표
· ('24.2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추진' 보도자료 배포
· ('24.3월) 신복위-통신업계 간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체결</td><td>완료</td></tr>
<tr><td>(2분기)
- 금융-통신 일괄 채무조정 추진을 위한 세부방안 협의 및 채무조정 시행</td><td>· ('24.5.7일) 성실상환·자활노력 정책과제에 대한 추가 협의를 위해 대면회의 개최
· ('24.6.20)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 발표 및 시행</td><td>완료</td></tr>
<tr><td>(3~4분기)
- 금융-통신 일괄 채무조정 운영 현황 점검</td><td>· ('24.7~12월) 매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현황 점검, 고용·복지제도 연계, 통합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회선 개통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 개최</td><td>완료</td></tr>
</table>
☞ Ⅲ-2-②-Ⅱ-1-1 7월 실무회의 결과보고 ~
Ⅲ-2-②-Ⅱ-1-6 12월 실무회의 결과보고 총 6건
</td>
</tr>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6.67/3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금융·통신 일괄 채무조정</td><td>제도 시행</td><td>'24.6.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접수실시</td><td>달성</td></tr>
</table>
☞ Ⅲ-2-②-Ⅱ-2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발표 보도자료
</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16.67/2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금융·통신채무조정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존 채무조정자 대비 20·30대, 일용직·무직, 취약계층 비율이 높았으며, 금번 통신채무조정으로 청년·실업·저소득자의 경제적 재기에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

☞ Ⅲ-2-②-Ⅲ-1-ⓐ-1 통신채무조정 확정자 분석 (24.9월 기준)
☞ Ⅲ-2-②-Ⅲ-1-ⓐ-2 고용·복지제도 연계시행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 시행('24.6월) 이후 '24.12월말까지 약 6개월간 38,037명의 채무자가 신청 다음날 통신사의 추심·독촉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심사를 거쳐 23,940명의 채무가 감면조정
</td>
</tr>
</table>

		(감면액 242억, 감면율 48.6%)되어 채무조정 진행중 - 또한 통신채무 완납 전이라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있게 되었음 ('24.12월말기준 3개월이상 성실상환자 4,3783명) ☞ Ⅲ-2-②-Ⅲ-1-ⓑ-1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접수 현황 ☞ Ⅲ-2-②-Ⅲ-1-ⓑ-2 성실상환자 대상 회선 개통 시행

Ⅲ-2-③	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청년층의 자산형성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23.6월) 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며 **지속적인 의견수렴 진행**

< 기관장·부기관장 주재 청년도약계좌 관련 의견수렴 내역 >
①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24.1.18) ②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청년과 금융권의 대화**('24.2.23) ③ **청년정책 민생토론회**('24.3.5) ④ **청년도약계좌 100만명 개설 기념 강연회**('24.4.1) ⑤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24.5.22) ⑥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24.7.23) ⑦ **청년도약계좌 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24.8.29)

○ 의견수렴 및 운영 분석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행

청년도약계좌 주요 제도 개선사항

분류	개선 조치
①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확대	▸ **육아휴직 및 병역이행 청년 가입 허용** * 육아휴직 급여·수당('24.1.2.) 및 군 장병급여('24.3.25.)의 개인소득 인정
	▸ **가구소득 요건 개선** * 중위소득 180% 이하 → 250% 이하('24.3.12.)
② 만기유지 부담 완화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출산 추가** * 특별중도해지시, 금리·기여금·세제혜택 수령 가능('24.2.29.)
	▸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지원 확대** * ① 중도해지이율 개선('24.4.8.) : 1.0%~2.4% → 3.8%~4.5% ② 이자소득세 비과세 유지('24.12.1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③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24년말 약관 개정)
③ 자산형성 지원효과 강화	▸ **정부기여금 매칭한도 확대** * 월 40·50·60·70만원 → 월 70만원('24년말 약관 개정)

○ 제도개선 결과 '24년말 기준 **157만명**(가입대상자 4명 중 1명 가입, 추정) **가입, 계좌 유지율 86.4%**으로 **성과지표**를 **초과달성**

- 나아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 상당수는 **소득 대비 저축액**이 증가* 하는 등 **계획적인 자산관리 습관을 형성**하였다고 **긍정 평가**(금융연)

* 조사 참여 청년 중 약 50%가 소득 대비 저축액이 증가하였다고 평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8.67/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청년도약계좌의 초기운영 및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청년 자산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방향’(금융연구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자립기반 마련 지원방안’(KDI) 연구용역 진행
☞ Ⅲ-2-③-Ⅰ-1-ⓐ-1-금융연구원 연구용역
Ⅲ-2-③-Ⅰ-1-ⓐ-2-KDI 연구용역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제도개선 방안 발굴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청년 등이 함께한 현장 의견수렴 다수 진행
※ 1.18일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
7.23일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간담회 등
- 다양한 배경의 청년으로 구성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수요자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
☞ Ⅲ-2-③-Ⅰ-1-ⓑ-1-240118 보도자료(현장 의견수렴)
Ⅲ-2-③-Ⅰ-1-ⓑ-2-240723 보도자료(청년도약계좌 1년)
Ⅲ-2-③-Ⅰ-1-ⓑ-3-포커스그룹 운영결과</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8/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청년도약계좌의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규정 개선, 관계기관 협의 등 전반에 걸쳐 추진계획이 구체적
<table>
<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
<tr><td rowspan="2">1/4분기</td><td>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지원</td><td>3월</td></tr>
<tr><td>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가구소득 요건 완화, 군 장병 가입 지원)</td><td>3월</td></tr>
<tr><td rowspan="2">2/4분기</td><td>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td><td>4~6월</td></tr>
<tr><td>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 지원</td><td>6월</td></tr>
<tr><td rowspan="2">3/4분기</td><td>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td><td>7~9월</td></tr>
<tr><td>청년도약계좌 관련 청년의견 수렴</td><td>9월</td></tr>
<tr><td rowspan="2">4/4분기</td><td>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td><td>10~12월</td></tr>
<tr><td>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3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td><td>12월</td></tr>
</table>
- (난이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은 예산·세제 당국 및 국회 협조가 필요한 도전적인 계획</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8/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가입유지율은 청년도약계좌의 실질적인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
- (적극성) 청년의 1년 만기 일반적금의 가입유지율은 45%로, 긴급한 자금수요의 가능성이 높은 청년의 생애주기 특성상 가입유지율 73%는 도전적인 목표</td></tr>
</table>

<table>
<tr>
<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6.67/2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진계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 rowspan="3">1/4분기</td><td>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지원('24.2~4월)</td><td>완료</td></tr>
<tr><td>가구소득 요건 완화(약관 개정, 3.12일)</td><td>완료</td></tr>
<tr><td>군 장병 가입 지원(시행령 개정, 3.25일)</td><td>완료</td></tr>
<tr><td>2/4분기</td><td>중도해지이율 개선(약관 개정, 4.8일)</td><td>완료</td></tr>
<tr><td>3/4분기</td><td>청년도약계좌 관련 청년의견 수렴(7.23일)</td><td>완료</td></tr>
<tr><td>4/4분기</td><td>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지원(조특법 법률개정, 12.10일)</td><td>완료</td></tr>
</table>
※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가입 신청·계좌 개설 지원 중
☞ Ⅲ-2-③-Ⅱ-1-1-240205 보도자료(연계가입 지원)
Ⅲ-2-③-Ⅱ-1-2-240312 보도자료(가구소득 군장병)
Ⅲ-2-③-Ⅱ-1-3-240522 보도자료(중도해지이율)
Ⅲ-2-③-Ⅱ-1-4-240723 보도자료(청년의견 수렴)
Ⅲ-2-③-Ⅱ-1-5-조세특례제한법 법개정문
</td>
</tr>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6.67/3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Ⅲ-2-③-Ⅱ-1-2-241031 보도자료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td><td>73%</td><td>86.4%(11월말 기준)</td><td>달성</td></tr>
</table>
※ 가입유지율 통계는 익월말 최신화되는 관계로 11월말 실적(대외 미공개) 제출
※ 증빙자료는 대외 공개된 9월말 실적(88%)
ㅇ 추가 설명 사항 (필요시 작성)
- 청년의 1년 만기 일반적금의 가입유지율(45%), 청년희망적금 1년 경과시 유지율(80%) 고려시 '24년 실적은 양호하다는 평가
</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14.33/2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 51만명('23말) → 157만명('24말)
☞ Ⅲ-2-③-Ⅲ-1-ⓐ-1-241227 보도자료(가입실적)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상당수가 소득 대비 저축액이 늘어나는 등 계획적인 자산관리 습관 형성했다는 긍정 평가(금융연)
- 만기 유지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안이 청년층에게 매력적이었다는 언론의 긍정 평가
☞ Ⅲ-2-③-Ⅲ-1-ⓑ-1-240522 보도자료(금융연 평가)
Ⅲ-2-③-Ⅲ-1-ⓑ-2-240527 언론보도
</td>
</tr>
</table>

Ⅲ-3-①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부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채무당사자의 관계인을 대상으로한 ‘**지인추심**’으로부터 **가족·지인등을 직접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을 **관계인을 확대*** 시행(’24.7.5.)

* (기존) 채무당사자 본인 → (확대) 기존 + 가족, 지인 및 직장동료 등 채무자당사자 관계인
※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24.10.10.)

○ **(대부업법 개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 이득 제한**** 등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지원 강화**

* 성착취 추심,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대부계약 등에 대해서는 원금·이자 무효화

*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를 제한하고 수취한 이자를 무효화

○ **(무효화 소송)** ’24.2월부터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8명을 대상**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변호사 선임 비용 등)

* 민법(§103)에 따른 무효화 소송 8건 무효화 소송 지원 중(6건 진행 중, 2건 준비 중)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미흡 및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 다소 저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등 피해구제 방법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강화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 대부업법 시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조치 추진

○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실태조사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용자 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

□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Ⅲ-3-①	홍보 강화	홍보 컨텐츠(광고 영상, 유튜브 숏츠 등) 제작(25.1분기)
		채무자대리인제도 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대응방법 홍보(연중)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 피해 및 채무자대리인 이용제도 안내 관련 보도자료 배포('25.1월, 10월)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대상 채무자대리인 제도 안내 관련 워크샵 개최(반기별)
	대부업법 및 하위규정 시행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5.7월)
		대부업법 시행('25.7월)
	적극적 피해구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25.하반기)
		채무자대리인 지원실적 지속 점검(분기별)
		채무자대리인 이관 절차 개선('25.1분기)
		금감원 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담인력 확대('25.1분기)
		채무자대리인 신청창구 확대 - 서금원('25.1분기), 법률구조플랫폼('25.12월)
	선제적 대응	'25년 채무자대리인 운영방안 발표('25.1월)
		채무자대리인 자진취하 자에 대한 재신청 안내(반기별)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실태조사 연구용역('25.3분기)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7/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채무자대리인 운영실적, 이용자 실태조사 분석
☞ Ⅲ-3-①-I-1-ⓐ-1 채무자대리인 운영실적 보도자료
☞ Ⅲ-3-①-I-1-ⓐ-2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대상 실태조사(2개)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대상 워크샵('24.7.15., '24.11.27.)
-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24.9.6.)
☞ Ⅲ-3-①-I-1-ⓑ-1 채무자대리인 운영실적 보도자료 (ⓐ-1과 동일)
☞ Ⅲ-3-①-I-1-ⓑ-2 2024년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2개)</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2.67/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연초 전년도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차년도 운영방향 수립을 위해 실제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table><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tr><td rowspan="2">1/4분기</td><td>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확대 운영계획 수립·발표</td><td>2월</td></tr><tr><td>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기관별 협업 홍보</td><td>3월</td></tr><tr><td rowspan="2">2/4분기</td><td>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td><td>5월</td></tr><tr><td>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오프라인 홍보</td><td>6월</td></tr><tr><td>3/4분기</td><td>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운영현황 점검</td><td>7월</td></tr><tr><td>4/4분기</td><td>채무자대리인 이용자대상 실태조사용역 실시</td><td>11월</td></tr></table>- (난이도)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중 지원대상 확대 과제는 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도입하는 과제이자 사업 운영 도중 도입하는 과제로 추진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의견조율, 예산 집행의 정당성, 전산시스템 개선 등의 사전 준비 사항이 위해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시행할 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추진계획 일정을 고려하여 연초부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관련 심의*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 24.7.5일부터 본격 시행
* 사업 운영 적정성 관련 심의, 예산 집행 관련 사전 심의 등</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4/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서민·취약계층의 불법 채권추심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
- (적극성) '20~'23년 채무자대리인 지원 추세*, 예산 집행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 지원 실적(건): ('20) 893→ ('21) 4,747→ ('22) 4,473→ ('23) 3,236
** '23년도 예산 부족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td></tr>
<tr><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7.33/20</td><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운영계획 발표</td><td>'24년 채무자대리인 운영계획 발표('24.2.1.)</td><td>완료</td></tr>
<tr><td>ⓑ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홍보</td><td>연중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홍보
('24.2.6, '24.3.29, '24.7.4, '24.9.11, '24.11.13, '24.12.17 등)</td><td>완료</td></tr>
<tr><td>ⓒ운영 현황 점검회의</td><td>불법사금융·취약계층 금융공급 등 소비자보호 점검회의('24.3.8)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 사항 등 점검('24.3.29)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워크샵('24.7.15., '24.11.27.)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24.11.13.)</td><td>완료</td></tr>
</table>
☞ Ⅲ-3-①-Ⅱ-1-ⓐ-1 ' 24년 채무자대리인 운영계획 발표
Ⅲ-3-①-Ⅱ-1-ⓑ-1 (보도자료)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본격 나서
Ⅲ-3-①-Ⅱ-1-ⓑ-2 (보도자료)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에 주의하세요!
Ⅲ-3-①-Ⅱ-1-ⓑ-3 (보도자료) 서민 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등 점검
Ⅲ-3-①-Ⅱ-1-ⓑ-4 (보도자료)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인에게도 확대 제공
Ⅲ-3-①-Ⅱ-1-ⓑ-5 (보도자료) 추석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Ⅲ-3-①-Ⅱ-1-ⓑ-6 (보도자료)불법사금융,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Ⅲ-3-①-Ⅱ-1-ⓑ-7 (보도자료)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단속·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Ⅲ-3-①-Ⅱ-1-ⓒ-1 불법사금융·취약계층 자금공급 등 점검회의
Ⅲ-3-①-Ⅱ-1-ⓒ-2 (보도자료)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등 점검
Ⅲ-3-①-Ⅱ-1-ⓒ-3-1 (공문)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워크샵
Ⅲ-3-①-Ⅱ-1-ⓒ-3-2 (공문)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워크샵
Ⅲ-3-①-Ⅱ-1-ⓒ-4 (보도자료)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
</td></tr>
<tr><td>Ⅱ-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td>23/30</td><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채무자대리인 법률구조실적</td><td>3,236건</td><td>2,934건</td><td>일부 달성</td></tr>
<tr><td>채무자대리·소송대리 등 실제 지원실적</td><td>86.4%</td><td>90.1%</td><td>달성</td></tr>
</table>
☞ Ⅲ-3-①-Ⅱ-2 2024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 (2개)
(잠정 실적으로 추후 수정예정)
</td></tr>
<tr><td>Ⅲ-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td>10/20</td><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불법사금융업자 수사의뢰 실적(건)*
: (' 21) 613 → (' 22) 355 → (' 23) 398건 → (' 24) 401건
*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 채무자대리인 신청 등을 수행하는 금감원은 대상 대부업자 등이 불법사금융업자임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수행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2023년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대상 실태조사결과 약 75%가 채무자대리인이 도움*되었다고 응답할 만큼 높은 만족도를 보임
☞ Ⅲ-3-①-Ⅲ-1-1 ' 24년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
- 최고금리(연 20%) 초과 불법 대부계약,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소송대리를 통해 경제적 피해구제 지원
- 채무당사자의 관계인을 대상으로한 '지인추심'으로부터 가족·지인등을 직접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을 관계인을 확대* 시행
*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24.10.14.)
☞ Ⅲ-3-①-Ⅲ-1-2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td></tr>
</table>

Ⅲ-3-②	신·변종 보이스피싱 대응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❶ **(통장협박)** 소상공인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구제제도상 **지급정지절차**를 **악용**하는 사례 발생

➡ 통장협박 피해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24.8.28일 시행)

<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사례 >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매장 내에 게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A씨의 계좌로 신원 미상의 송금인으로부터 30만원이 입금되었고, 당일 저녁 은행에서 A씨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며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하였다.
이후 A씨는 사기범으로부터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만원을 보내라는 협박문자를 받았지만,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지급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약 2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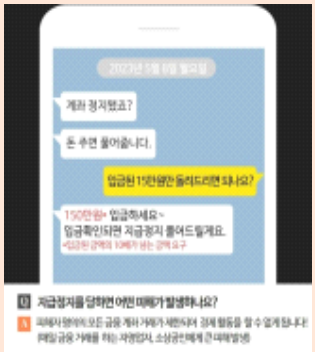

○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예: 협박문자 등)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대상을 확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개정하여 이의제기 대상에 통장협박피해자를 추가

○ 금융회사는 이의제기에 대해 검토하여 해당 계좌가 **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지급정지**를 해제

* 금융회사는 명의인 정보, 거래내역, 합의금 요구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다만, 계좌잔액 중 **피해금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유지**(일부 지급정지)하여 피해자에 대한 환급절차가 가능하도록 보완

* 분쟁소지가 있는 금액만 지급정지 후 입출금, 전자금융거래가 허용되도록 함

❷ (간편송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 방식으로 **이전하여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 발생

* 상대방 계정이나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상대방 계좌로 송금 가능한 금융서비스

➡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간** 계좌정보 등을 **공유**하여, 범인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24.8.28일 시행)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를 개정하여 금융실명법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함

<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 >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는 평소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송금이 가능한 간편송금 방식을 자주 사용했다. 어느 날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 A씨는 사기범의 요구로 간편송금 방식으로 피해금을 범인에게 송금하였다.
A씨는 뒤늦게 보이스피싱 당한 것을 알고, 피해금이 입금된 수취계좌의 지급정지 신청을 하려 했으나, 해당 계좌를 몰라서 간편송금업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후,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기범은 이미 피해금을 인출하여 도주한 이후였다.

< 간편송금을 악용한 피해금 흐름 및 정보공유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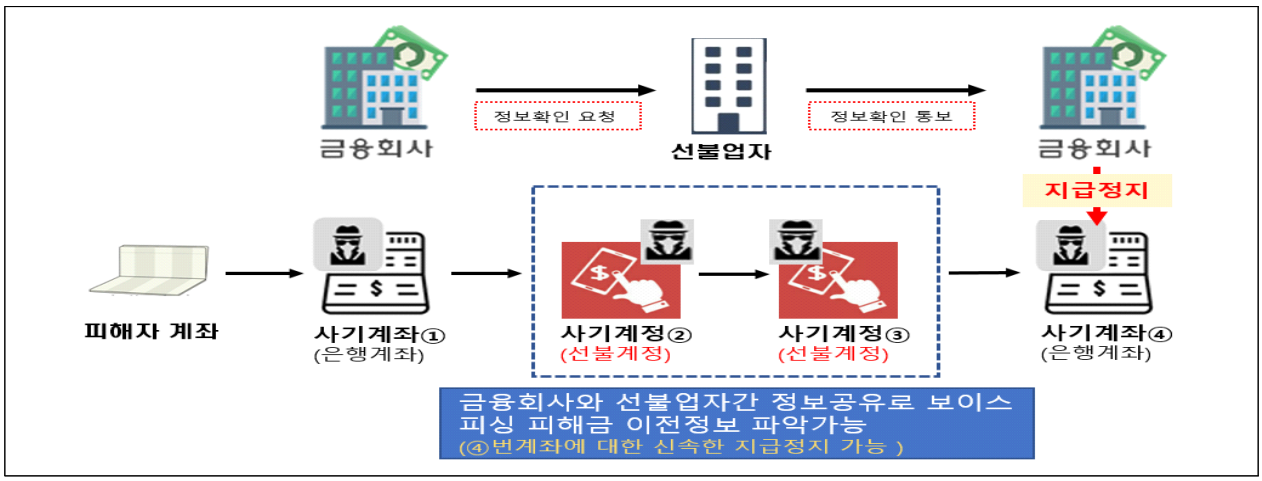

❸ **(여신거래 안심차단)**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자신도 모르게 비대면으로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

- 이에 이용자가 사전에 비대면 대출 차단을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8.23일, '24년말 누적 가입자수는 약 25만명)

* 이용자가 가입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은행·금투·보험·여신·저축은행 등 4,012개 금융권에서 실시간으로 신규 여신거래 즉시 차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7.67/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법령개정) 간편송금, 통장협박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23.2월)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법령개정 추진
- (안심차단) 보이스피싱 유형 중 거의 매년 과반을 차지하는 대출사기형에 대한 대책 필요
☞ Ⅲ-3-②-Ⅰ-1-ⓐ-1-(보도자료)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Ⅲ-3-②-Ⅰ-1-ⓐ-2-보이스피싱 유형별 통계(경찰청)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법령개정) 시행령 개정안 세부사항 규정을 위한 금감원·업권 의견수렴 회의 진행(이의제기절차, 정보공유 의무 시스템 구축 등)
- (안심차단) 시스템 도입 첫날 금융위원장 참석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국민 홍보 및 향후 개선필요 사항 등 현장의견 수렴
☞ Ⅲ-3-②-Ⅰ-1-ⓑ-1-통장협박 이의제기 요건 및 증빙 관련 회의 개요
Ⅲ-3-②-Ⅰ-1-ⓑ-2-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간 정보공유 방안 회의 개요
Ⅲ-3-②-Ⅰ-1-ⓑ-3-(보도자료) 나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이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5/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24.2월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및 ' 24.8월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설정하여 이행완료
<table>
<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
<tr><td>1/4분기</td><td>「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td><td>'24.2월</td></tr>
<tr><td>2/4분기</td><td></td><td></td></tr>
<tr><td>3/4분기</td><td>「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td><td>'24.8월</td></tr>
<tr><td>4/4분기</td><td></td><td></td></tr>
</table>
- (난이도)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24.2월) 이후 시행(' 24.8월)되기까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세부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시행령 개정 필수적</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6.33/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통장협박에 대한 신속한 구제 진행 및 선불업자-금융회사 간 정보공유 의무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바, 동 성과지표는 해당 정책목표를 대표하고 있음
- (적극성) 개정한 법안이 금융회사 일선에서 원활히 수용될 수 있도록 업권별 의견수렴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바, 동 성과지표 달성에 충분한 적극성이 요구되었음</td></tr>
</table>

<table>
<tr>
<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7.67/2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td><td>2.1일 국회 통과*
*개정조항 수 : 12개
(§2조의5①,④, §2조의6, §2조의7, §4조①, §7조①,§8조①,②,§11조의2, §13조①,§15조③,§18조①)</td><td>완료</td></tr>
<tr><td>「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td><td>8.19일 국무회의 통과</td><td>완료</td></tr>
</table>
☞ Ⅲ-3-②-Ⅱ-1-1-(보도참고) 통장협받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Ⅲ-3-②-Ⅱ-1-2-(보도자료)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d>
</tr>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5.33/3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Ⅲ-3-②-Ⅱ-2-1-(보도자료)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 마련</td><td>시행령 개정</td><td>시행령 개정</td><td>달성</td></tr>
</table>
</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14/2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한달만에 약 9만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하였으며, '24.12월말기준 약 25만명 가입
-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한 60대 이상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과반(53.6%)을 차지하여 대출사기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Ⅲ-3-②-Ⅲ-1-ⓐ-1-(보도자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8.23.) 이후 89 817명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Ⅲ-3-②-Ⅲ-1-ⓐ-2-여신금융안심차단서비스 가입자 통계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기존 법령 하에서는 통장협박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어려워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줄곧 제기되었으나, 금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사기이용계좌 추적의 사각지대였던 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역시 금번 개정을 통해 신속한 추적 및 예방이 가능해짐
- 한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통해 명의도용 대출을 차단할 수 있게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비대면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금융회사 간 법적 분쟁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
☞ Ⅲ-3-②-Ⅲ-1-ⓑ-1-관련 언론보도
</td>
</tr>
</table>

Ⅲ-3-③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 활성화	부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STR)가 **전년 대비** 22.3%(▲3,582건) **증가**

-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24.12.3.) 및 **「자금세탁동향 REVIEW**」 2회 발간**('24.4월·11월)을 통해 **FIU－가상자산사업자 간 소통을 강화**하여 **STR 보고 건수와 보고 품질 향상**

* 우수 분석·보고사례 공유, 요청사항 전달 및 사업자 건의·애로사항 청취 등
** 국내외 STR 사례 등을 바탕으로 최신 자금세탁 동향·패턴을 금융회사에 안내

< 전체 및 가상자산 STR 건수·증가율·비중 >

구분	전체 STR (A)	가상자산 STR (B)	비중 (B/A)
'22년	822,644 -	10,797 -	1.2%
'23년	906,462 (▲10.2%)	16,076 (▲48.9%)	1.7%
'24년	1,084,143 (▲19.6%)	19,658 (▲22.3%)	1.8%

< 「자금세탁동향 REVIEW」 2회 발간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STR 건수는 전년 대비 22.3% 증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보고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활성화

□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Ⅲ-3-③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시 불공정거래 관련 안건 추가 (가상자산과 합동 간담회 실시)	’25년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 1년 경과 이후 간담회 실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6.33/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5.33/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table>
<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
<tr><td>1/4분기</td><td>STR 보고기관 간담회 개최(은행권)</td><td>3월</td></tr>
<tr><td rowspan="2">2/4분기</td><td>STR 보고기관 간담회 개최(가상자산사업자)</td><td>4월</td></tr>
<tr><td>STR 보고기관 간담회 개최(증권, 보험업권)</td><td>6월</td></tr>
<tr><td rowspan="2">3/4분기</td><td>STR 보고기관 간담회 개최(은행권)</td><td>7~8월</td></tr>
<tr><td>STR 보고기관 간담회 개최(가상자산사업자)</td><td>9월</td></tr>
<tr><td>4/4분기</td><td>STR 보고기관 간담회 개최(증권, 보험업권)</td><td>10~11월</td></tr>
</table></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5.33/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td></tr>
<tr><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3.33/20</td><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 rowspan="6">STR 보고기관 간담회 개최 실적</td><td>(3.27) 은행업권 간담회</td><td rowspan="6">완료</td></tr>
<tr><td>(5. 8) 가상자산업권 간담회</td></tr>
<tr><td>(7.16) 증권업권 간담회</td></tr>
<tr><td>(10.22) 카지노업권 간담회</td></tr>
<tr><td>(11.19) 은행업권 간담회</td></tr>
<tr><td>(12. 3) 가상자산업권 간담회</td></tr>
</table>
-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 활성화>
☞ Ⅲ-3-③-Ⅱ-1-1~6 STR 보고기관 간담회</td></tr>
<tr><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td>24/30</td><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Ⅲ-3-③-Ⅱ-1-1~6 STR 보고기관 간담회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STR 보고기관 간담회 개최</td><td>6회</td><td>6회</td><td>달성</td></tr>
</table></td></tr>
<tr><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td>10/20</td><td>ⓐ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 활성화> ’23년 16,076건 → ’24년 19,658건으로 전년 대비 22.3%(▲3,582건) 증가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td></tr>
</table>

Ⅳ-1-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	매우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밸류업 지원**) **상장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2.26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 (**지원체계 구축**) 거래소 "**밸류업지원부**", "**밸류업자문단***" 신설(3.7일)

  * 학계·투자자·기업·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밸류업 지원방안 전반을 자문

- (**인센티브**)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및 **8종 인센티브** 방안* 발표(4.2일)

  * 매년 5월 10여개 기업을 선정하여 세무·회계·공시 등에 있어 인센티브 부여

· 정부 세법개정안을 통해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발표(7.25일)

  * [법인세] 밸류업 공시기업의 주주환원 확대에 대해 5%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밸류업 공시기업의 주주환원 증가에 비례해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14% → 9%, 최고 45% → 25%)

- (**밸류업 공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마련(5.27일)

· 1월 13일 현재, 총 104개 기업(본공시 : 94, 예고공시 : 10)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 42% 이상

- (**교육·홍보**) 중소기업 대상 밸류업 공시 **맞춤형 컨설팅*** 및 **영문번역**, 공시담당자·이사회 대상 **교육·안내**** 프로그램 개시(5.28일)

  * 11.20일 기준, 총 59개사(코스피 9, 코스닥 50) 대상 컨설팅 지원
  ** 사내·사외이사 대상 설명회(6.24, 10.17.), 기업 공시담당자 간담회(5.10.) 및 설명회(9.27.) 등 5회

·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 **IR**, **기업 설명회** 등 지속 개최*

  * [IR] 증권사·자산운용사·외국계회사 등 대상 IR 개최, 싱가포르·런던·뉴욕 등 현지IR 등 5회
    [설명회] 대표기업/중견기업/성장기업, 금융회사/10대그룹 등 대상 설명회 등 38회

② **(밸류업 투자유도)** 기업의 **밸류업 노력·성과**에 대해 **시장의 평가**

및 **투자**를 **유도**하여 **선순환*** **체계 구축**

* 밸류업 노력·성과 우수기업으로의 투자유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투자유도가 인센티브가 되어 기업의 계속적인 밸류업 노력으로 연결

-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밸류업 계획 수립·시행·소통 여부를 고려하며 투자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3.14일)

- (**투자지표 비교**) 기업별 주요 **투자지표**(ROE·PBR·PER·배당성향 등)를 **비교 공표하는** 통합홈페이지 개설(5.27일)

- (**밸류업 지수 및 연계 ETF**) 밸류업 우수·기대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9.24일), 연계 ETF·ETN 및 선물 상장(11.4일)

- (**밸류업 펀드***) 거래소·증권금융·예탁원·코스콤·금투협회 공동으로 **밸류업 펀드**를 **조성**하여, **밸류업 공시기업** 및 **밸류업 ETF** 등에 **투자**

* 1차 펀드(2천억 규모) : 11.4일 조성, 11.20일 투자 개시(현재 1,330억원 집행)
2차 펀드(3천억 규모) : 12.20일 조성, 12.23일 투자 개시(현재 1,500억원 집행)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9.5/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23.3월 일본 거래소의 「자본비용·주가를 고려한 경영」 관련 상장기업의 “자본효율성·주가 개선계획” 공시·이행 사례 및 인센티브 제도 등 분석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2차(‘24.2.7일·5.2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기관투자자·학계 등으로 구성된 기업 밸류업 자문단을 신설하여 시장의 의견 수렴
☞ Ⅳ-1-①-I-1-ⓐ-1-(참고자료) 밸류업 지원방안 일본사례 분석
Ⅳ-1-①-I-1-ⓑ-1-(보도자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1차 세미나 개최
Ⅳ-1-①-I-1-ⓑ-2-(보도자료) 기업밸류업 자문단 구성 및 Kick-off 회의 개최</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9.25/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원방안에서 제시한 인센티브 마련, 공시 가이드라인 발표, 밸류업 지수 및 ETF 개발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분기별 구체적인 계획 수립
<table>
<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
<tr><td rowspan="2">1/4분기</td><td>「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마련·발표</td><td>’24.2월</td></tr>
<tr><td>스튜어드십 코드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반영</td><td>’24.3월</td></tr>
<tr><td rowspan="3">2/4분기</td><td>기업 밸류업 우수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td><td>’24.4월</td></tr>
<tr><td>「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제정</td><td>’24.5월</td></tr>
<tr><td>기업 밸류업 공시·정보 플랫폼 구축</td><td>’24.5월</td></tr>
<tr><td rowspan="2">3/4분기</td><td>중소 상장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영문번역 서비스 제공</td><td>‘24.7월</td></tr>
<tr><td>관련 투자지수(가칭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td><td>’24.9월</td></tr>
<tr><td>4/4분기</td><td>관련 투자지수 기반 ETF 출시</td><td>‘24.12월</td></tr>
</table>
- (난이도) ‘24년 최초 시행 사례인만큼 도전적인 정책 추진을 요했으며,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어려운 증시 환경 하에서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9.25/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밸류업 지수”는 기업의 밸류업 노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투자를 나타내는 대표 수단이며, “IR 실적”은 국내·외 투자자 대상 밸류업 노력을 성실히 홍보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서 밸류업 추진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절
- (적극성) 종목 선정기준 마련, 밸류업 공시기업 우대방안 마련 등 전에 없던 지수를 새로 개발하는 도전적인 지표에 해당하며, 통상 연 2~3회인 IR 실적 대비 6회라는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td></tr>
</table>

<table>
<tr>
<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9/20</td>
<td>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마련·발표</td><td>('24.2.26.) 방안 마련·발표</td><td>완료</td></tr>
<tr><td>스튜어드십 코드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반영</td><td>('24.3.14.)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개정</td><td>완료</td></tr>
<tr><td>기업 밸류업 우수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td><td>('24.4.2.)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방안 발표</td><td>완료</td></tr>
<tr><td>「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제정</td><td>('24.5.27.)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마련</td><td>완료</td></tr>
<tr><td>기업 밸류업 공시·정보 플랫폼 구축</td><td>('24.5.25.) 공시·투자지표 비교 통합페이지 개설</td><td>완료</td></tr>
<tr><td>중소 상장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영문 번역 서비스 제공</td><td>('24.6.1.~) 컨설팅 55개사 영문번역 2개사</td><td>완료</td></tr>
<tr><td>관련 투자지수(가칭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td><td>('24.9.24.) 밸류업 지수 개발</td><td>완료</td></tr>
<tr><td>관련 투자지수 기반 ETF 출시</td><td>('24.11.4.) 밸류업 지수 연계 ETF(12종목) 출시</td><td>완료</td></tr>
</table>

☞ Ⅳ-1-①-Ⅱ-1-1-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Ⅳ-1-①-Ⅱ-1-2-(보도자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기관투자자 간담회(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Ⅳ-1-①-Ⅱ-1-3-(보도자료) 기업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밸류업 인센티브 발표)
Ⅳ-1-①-Ⅱ-1-4-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Ⅳ-1-①-Ⅱ-1-5-(보도자료) 2024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결산
Ⅳ-1-①-Ⅱ-1-6-(보도자료) 2024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결산
Ⅳ-1-①-Ⅱ-1-7-(보도자료) 한국거래소,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Ⅳ-1-①-Ⅱ-1-8-(보도자료) 밸류업 ETF 발행사 대표 간담회(밸류업 ETF 12종목 신규상장)

</td>
</tr>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8/30</td>
<td>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Ⅳ-1-①-Ⅱ-2-1-(보도자료) 한국거래소,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Ⅳ-1-①-Ⅱ-2-2-(보도자료) 2024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결산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기업밸류업 관련 신규 투자지수 (Index개발)</td><td>개발</td><td>개발</td><td>달성</td></tr>
<tr><td>기업밸류업 관련 국내외 투자자 대상 IR 횟수</td><td>6회</td><td>10회</td><td>달성</td></tr>
</table>

</td>
</tr>
</table>

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	*18.75/20*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24.5월말 밸류업 공시 시행 이후 102사*,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 41% 이상의 기업이 밸류업 공시 참여(12.31. 기준) * 본공시 94개사, 예고공시 8개사 - 기업간담회(33회), 교육·설명회(43회), 중소기업 대상 1:1컨설팅(55개사) 등 밸류업 지원 노력 추진 ☞ Ⅳ-1-①-Ⅲ-1-ⓐ-1-(보도자료) 2024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결산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기업의 주주환원·소통 문화 확산* 및 증시 체질개선을 통한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기여 * '24년 자사주매입 전년대비 2.3배 증가(10.6조원↑, '09년 이후 최고치), 자사주소각 2.9배 증가(9.1조원↑, 최근 7년 중 최대), 상장기업 현금배당 45.8조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 ☞ Ⅳ-1-①-Ⅲ-1-ⓑ-1-(보도자료) 2024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결산

Ⅳ-1-②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 다양화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ATS 운영방안 >

□ 금감원·거래소·예탁원·금투협·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 TF(6차 실무회의) 및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거쳐 **「ATS 운영방안」 마련·발표**(5.9일)

○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발표(6.19일)

*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투자자 주문을 집행(양 시장 중 택1)할 기준을 마련하고 따를 의무

○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위해 **공개매수의무** 면제*, 거래소 **손해배상 공동기금 공동활용** 등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9.13일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 거래소와 동일하게, ATS 내 주식 취득으로 5% 이상 보유한 경우 공개매수 면제

○ 증권사·투자자·기업 대상, "**ATS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 개최(10.22일)

<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

□ 금감원·금투협 등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방안 검토**

□ 제도화 방안 마련 前, 비상장주식 플랫폼 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수용**('24.3월) 및 **법령정비 기한 연장**('24.9월, ~'25.3월까지)

○ 혁신금융서비스 기간 중 비상장주식 플랫폼 **운영성과**, **소비자보호** 측면 등을 **지속 점검**하고, **관련 부가조건**을 **정비**('24.9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5~7등급 과제의 경우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ㅇ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는 높으나, **계량적인 성과** 제시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향후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시, 보다 **구체화된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

□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Ⅳ-1-②	ATS 및 비상장주식 플랫폼 관련 운영실적 등 계량화된 성과지표 추가	'25.上 중 플랫폼 운영경과 등을 토대로 적절한 성과지표 모색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8.25/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해외 주요국(미국·EU·일본·호주 등)의 ATS 도입사례 분석
- NXT의 주식투자자 대상 투자기회 설문조사 실시 (‘24.2월, 한국 갤럽)
☞ Ⅳ-1-②-I-1-ⓐ-1-(참고자료) ATS 해외 사례
Ⅳ-1-②-I-1-ⓐ-2-넥스트레이드 시장운영방안 세미나 발표 자료(p.5)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금감원·거래소·예탁원 등 유관기관 공동 TF(실무회의 6차) 및 세미나(‘24.5.9.)를 거쳐 ATS 운영방안 마련
☞ Ⅳ-1-②-I-1-ⓑ-1-(보도자료)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발전을 위한「ATS 운영방안」마련</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6/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 T/F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방안 발표 및 후속 자본법령 정비 등까지 제도개선 전과정에 걸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table>
<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
<tr><td>1/4분기</td><td>자본시장 거래 인프라 다양화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 T/F 운영</td><td>’24.1~3월</td></tr>
<tr><td rowspan="3">2/4분기</td><td>자본시장 거래 인프라 다양화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 T/F 운영</td><td>4월</td></tr>
<tr><td>ATS 운영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td><td>5월</td></tr>
<tr><td>「ATS 운영방안」마련</td><td>6월</td></tr>
<tr><td rowspan="2">3/4분기</td><td>비상장주식 제도화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td><td>8월</td></tr>
<tr><td>「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방안」마련</td><td>9월</td></tr>
<tr><td rowspan="2">4/4분기</td><td>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논의 참여</td><td>11월</td></tr>
<tr><td>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td><td>12월</td></tr>
</table>
- (난이도) 기존에 없던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를 최초로 도입하는 사례이며, 관련 법령・제도 정비도 병행되는 만큼 추진 목표의 난이도가 높으나, 제도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기별로 세부 계획을 이행</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5/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를 다양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 및 플랫폼의 운영방안 수립과 제도 정비가 목표인만큼,「ATS 운영방안」및「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방안」마련은 대표적인 성과지표에 해당
- (적극성) 투자자의 기회 확대 및 편익 증대 등을 위해 전에 없던 새로운 인프라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지표 달성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 연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이 수반됨</td></tr>
</table>

<table>
<tr>
<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6/2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실무 T/F 운영</td><td>'23년 12.14일, 12.28일
'24년 1.19일, 1.26일, 2.27일, 4.26일</td><td>완료</td></tr>
<tr><td>의견수렴 위한 토론회 개최</td><td>'24.5.9일 세미나 개최</td><td>완료</td></tr>
<tr><td>「ATS 운영방안」 마련</td><td>'24.5.9일 운영방안 발표</td><td>완료</td></tr>
<tr><td>「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방안」 마련</td><td>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수용('24.3월) 및 법령정비 기한 연장('24.9월, '25.3월까지)</td><td>진행중</td></tr>
<tr><td>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td><td>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수용('24.3월) 및 법령정비 기한 연장('24.9월, '25.3월까지)</td><td>진행중*
* 법령정비 기한('25.3월)까지 운영과정상 제도보완 필요사항 추가검토</td></tr>
</table>
☞ Ⅳ-1-②-Ⅱ-1-1-(보도자료)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발전을 위한 ATS 운영방안 마련
Ⅳ-1-②-Ⅱ-1-2-ATS 운영방안
</td>
</tr>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2/3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Ⅳ-1-②-Ⅱ-2-1-ATS 운영방안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ATS 운영방안 마련</td><td>방안 마련</td><td>방안 마련</td><td>달성</td></tr>
<tr><td>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방안 마련</td><td>방안 마련</td><td>방안 마련</td><td>진행중</td></tr>
</table>
ㅇ 추가 설명 사항 (필요시 작성)
-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방안의 경우, 법령정비 기한(~'25.9월)까지 운영과정상 제도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마련할 예정
</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9.5/2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해당사항 없음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ATS 출범시 주식 거래시간 확대, 시장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 신규호가 도입 등 투자자 편익 증대가 기대됨
☞ Ⅳ-1-②-Ⅲ-1-ⓑ-1-(보도자료) 다가온 ATS 시대, 新투자풍속 전망... "퇴근 후 주식부업 뛸 수 있겠네요" ('24.5.14., 헤럴드경제)
</td>
</tr>
</table>

Ⅳ-2-①	불공정거래 사전감시·사후제재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❶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으로 내부자 등의 **신고 활성화 기반** 마련

- 자진신고 또는 **타인 위반행위** 진술·증언시 형벌·과징금 **감면**제도 시행('24.1월) 및 상한액 확대 등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24.2월)

- '24년 **신고포상금 총 1억 9,440만원**(6건) **지급**하는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 지급건수 대폭 **상승***

* (포상금 총 지급액) '14~'23년 연평균 약 7,161만원 → '24년 1억 9,440만원
(건당 포상금 지급액) '14~'23년 약 1,884만원 → '24년 3,240만원
(지급건수) '14~'23년 약 3.8건 → '24년 6건

❷ 불공정거래에 대한 유기적 ·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간 **협업·정보공유** 강화

- **증선위를 중심**으로 기관 간(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건 전반을 관리·협의**

* 조사·심리기관협의회: 증선위원(주재), 금감원, 거래소, 검찰[분기당 1회+필요시]
실무협의체 :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주재 실무협의(격주+수시 개최)

- '24년 **조사 · 심리기관협의회 3회, 실무협의체 20회** 개최, **공동조사 신규 3건** 선정

❸ 증선위를 통한 **엄중한 제재조치**를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 및 **투자자보호 강화** 지속 추진

- '24년 **11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치**(고발 · 통보, 과징금 등)하였으며, 특히 **불법공매도**에 대하여 **거액의 과징금**(463억원) 부과

❹ **제재수단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통과('24.9)**

-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행위자 대상 최대 **5년**의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를 신설('24.9. 법통과)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8/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통계를 매달 업데이트하며 현황 점검 및 참고자료로 활용
☞ IV-2-①-I-1-ⓐ-1-자본시장조사 관련 주요통계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개최를 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 추진
- 민간전문가(교수, 변호사 등 5명)가 포함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치 안건 검토를 통해 안건처리의 신뢰성 · 투명성 제고
☞ IV-2-①-I-1-ⓑ-1-(보도자료)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 IV-2-①-I-1-ⓑ-2-(보도자료)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 IV-2-①-I-1-ⓑ-3-(보도자료)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 IV-2-①-I-1-ⓑ-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금융위원회 고시)</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6.75/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전감시·사후제재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의 회의체 등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함
<table>
<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
<tr><td rowspan="2">1/4분기</td><td>공동조사 사건 발굴 및 진행 상황 점검</td><td rowspan="2">1분기</td></tr>
<tr><td>실무협의체 개최를 통해 상시 협업체계 운영</td></tr>
<tr><td rowspan="2">2/4분기</td><td>공동조사 사건 발굴 및 진행 상황 점검</td><td rowspan="2">2분기</td></tr>
<tr><td>실무협의체 개최를 통해 상시 협업체계 운영</td></tr>
<tr><td rowspan="2">3/4분기</td><td>공동조사 사건 발굴 및 진행 상황 점검</td><td rowspan="2">3분기</td></tr>
<tr><td>실무협의체 개최를 통해 상시 협업체계 운영</td></tr>
<tr><td rowspan="2">4/4분기</td><td>공동조사 사건 발굴 및 진행 상황 점검</td><td rowspan="2">4분기</td></tr>
<tr><td>실무협의체 개최를 통해 상시 협업체계 운영</td></tr>
</table>
- (난이도) 전년도 대비 협업 체계 강화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난이도가 적절히 설정됨</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7.25/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기관 협의체 실행 건수와 공동조사 발굴 건수로 목표치 설정
- (적극성) 실무협의체 신설 및 전년도 대비 상향된 공동조사를 목표로 하여(2건→4건) 불공정거래 감시·제재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 추진</td></tr>
</table>

<table>
<tr>
<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6.75/20</td>
<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공동조사 사건 발굴 · 점검 등 실무협의체 개최</td><td>(24.1.1.~12.31.) 총 20회</td><td>완료</td></tr>
</table>
☞ IV-2-①-II-1-1-실무협의체 회의(제20차)</td>
</tr>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4.5/30</td>
<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IV-2-①-II-2-1-실무협의체 회의(제5차)
☞ IV-2-①-II-2-2-실무협의체 회의(제9차)
☞ IV-2-①-II-2-3-실무협의체 회의(제15차)
☞ IV-2-①-II-2-4-실무협의체 안건(제20차)
(내부검토 진행중인 자료로 일부만 증빙 첨부)
☞ IV-2-①-II-2-5-공동조사 계획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실무협의체 개최 건수</td><td>10회</td><td>20회</td><td>달성</td></tr>
<tr><td>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발굴 건수</td><td>4건</td><td>3건</td><td>-</td></tr>
</table>
ㅇ 추가 설명 사항 (필요시 작성)
- 금융위 · 금감원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既착수된 공동조사 건을 우선 처리(공동조사 사건 종결 : '23년 1건 → '24년 3건)</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16/20</td>
<td>ⓐ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포상금 총 지급액('14~23년 연평균 약 7,161만원 →'24년 1억 9,440만원) 및 건당 지급액 증가 ('14~23년 약 1,884만원→'24년 3,240만원)
-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및 자진신고제 도입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적발에 긴요한 내부자 등의 신고 활성화 기반을 마련
☞ IV-2-①-III-1-ⓐ-1-(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IV-2-①-III-1-ⓐ-2-(보도자료) 24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
☞ IV-2-①-III-1-ⓐ-3-(보도자료) '24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11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치하여 불공정거래 근절을 도모
☞ IV-2-①-III-1-ⓑ-1-(보도참고)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자 모집 관련 부정거래 등 적발
☞ IV-2-①-III-1-ⓑ-2-(보도참고)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 IV-2-①-III-1-ⓑ-3-(보도참고) 글로벌 IB 등의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
☞ IV-2-①-III-1-ⓑ-4-(보도참고) 나스닥 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 부정거래 행위 등 적발
☞ IV-2-①-III-1-ⓑ-5-(보도참고) SNS 리딩방 이용 선행매매 등 부정거래 행위 다수 적발 및 신속조치
☞ IV-2-①-III-1-ⓑ-6-(보도참고) 정치테마주 풍문 유포 부정거래 행위 등 적발</td>
</tr>
</table>

Ⅳ-2-②	공매도 제도개선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❶ **충실한 공론화***를 거쳐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내·외 투자자**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 민당정협의회(2회), 유관기관 전문가 토론(2회), 개인투자자 열린토론(3회) 등
** 전산시스템 가이드라인(8월, 금감원),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9월, 금감원)

- 국회와의 **민당정협의회**(6.13., 금융위원장)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개선·금지연장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6.13, 부위원장)

-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후, **기관·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 **제도개선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설명회**** 등을 통해 지원

* 공매도 전산화 T/F(금감원·거래소 등)에 기관투자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컨설팅 제공
** 7~8월 중 14회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기관투자자 의견을 청취하고 의문점을 해소

➡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국내·외 투자자 **이해 제고**

❷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처벌 강화**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10.22. 자본법 개정, 3.31. 시행)

-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인의 **공매도 내부통제기준**과 **증권사**의 **확인**을 의무화

-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릴 경우 **대차**(기관)와 **대주**(개인)의 **상환기간**(90일 연장 · 총12개월), **담보비율**(105%)을 통일

➡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하여, **재개**를 위한 **기반** 마련

❸ '24.1~10월 중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277.3억원**을 부과하고, **글로벌IB** 전수조사를 통해 **2,112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 적발

➡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적발·제재**하여 **근절**을 위해 **노력**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8/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무차입공매도 적발 사례·유형 등 파악 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
☞ Ⅳ-2-②-I-1-ⓐ-1. 글로벌 IB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제재
Ⅳ-2-②-I-1-ⓐ-2.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진행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개인투자자, 전문가, 기관투자자,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고 논의과정을 공개하는 토론회 3차례 개최
- 민당정협의회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 발표
☞ Ⅳ-2-②-I-1-ⓑ-1. 1차 열린토론
Ⅳ-2-②-I-1-ⓑ-2. 2차 열린토론
Ⅳ-2-②-I-1-ⓑ-3. 3차 열린토론
Ⅳ-2-②-I-1-ⓑ-4. 민당정협의회 개최</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7.75/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 및 발표, 법령개정 및 후속조치의 각 과정을 구체적으로 수립
<table>
<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
<tr><td>1/4분기</td><td>일반투자자 대상 공매도 간담회</td><td>3월</td></tr>
<tr><td rowspan="3">2/4분기</td><td>공매도 제도개선 3차 토론회 개최</td><td>4월</td></tr>
<tr><td>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 적극 참여</td><td>4~5월</td></tr>
<tr><td>공매도 금지 관련 금융위 의결</td><td>6월</td></tr>
<tr><td rowspan="2">3/4분기</td><td>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 적극 참여</td><td>7~9월</td></tr>
<tr><td>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td><td>9월</td></tr>
<tr><td>4/4분기</td><td>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 적극 참여</td><td>10~12월</td></tr>
</table>
- (난이도) 국내・외 투자자 관심이 많아 사회적으로 합의된 결론 도출이 어려운 사안이며, 법률 개정 등 국회 협의 필요 사항까지 포함하여 수립</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7/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충실한 공론화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국내·외 투자자를 설득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성과지표가 과제를 대표
- (적극성) 국내·외 투자자 관심이 많고 장기간 이슈가 제기되어 온 사안에 대해 대표성 있는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는 내용의 성과지표로, 적극적 목표설정</td></tr>
</table>

<table>
<tr>
<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5.75/2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일반투자자 대상 공매도 간담회</td><td>'24.3.13일 제1차 열린토론
'24.4.23일 제2차 열린토론
'24.6.10일 제3차 열린토론</td><td>완료</td></tr>
<tr><td>공매도 제도개선 3차 토론회 개최</td><td>'24.3.13일 제1차 열린토론
'24.4.23일 제2차 열린토론
'24.6.10일 제3차 열린토론</td><td>완료</td></tr>
<tr><td>공매도 금지 관련 금융위 의결</td><td>'24.6.13일 금융위 의결</td><td>완료</td></tr>
<tr><td>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td><td>'24.9.26일 자본법 국회 통과
'24.9.27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4.11.5일 자본법 시행령 개정</td><td>완료</td></tr>
</table>
☞ Ⅳ-2-②-I-1-ⓑ-1. 1차 열린토론
Ⅳ-2-②-I-1-ⓑ-2. 2차 열린토론
Ⅳ-2-②-I-1-ⓑ-3. 3차 열린토론
Ⅳ-2-②-II-1-1. 공매도 금지 연장 의결
Ⅳ-2-②-II-1-2.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Ⅳ-2-②-II-1-3. 자본법 시행령 개정
</td>
</tr>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4.25/3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Ⅳ-2-②-I-1-ⓑ-1. 1차 열린토론
Ⅳ-2-②-I-1-ⓑ-2. 2차 열린토론
Ⅳ-2-②-I-1-ⓑ-3. 3차 열린토론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간담회·토론회 개최</td><td>2회</td><td>3회</td><td>달성</td></tr>
</table>
</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12.5/2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후속 시행령·규정 입법예고
☞ Ⅳ-2-②-II-1-2.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Ⅳ-2-②-III-1-ⓐ. 하위법령 입법예고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공론화를 통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 저해 우려를 해소하고, 공매도 재개 기반을 마련
☞ Ⅳ-2-②-III-1-ⓑ. 언론기사
</td>
</tr>
</table>

Ⅳ-2-③	신탁·랩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신탁·랩**의 **만기 미스매치** 투자시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완료**('24.11.12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

- 또한, 제도개선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업계 모범규준인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도 함께 시행

【 신탁·랩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관련 제도개선 내용】

1.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4.11.12. 시행)

□ 신탁·랩 **장단기 미스매치** 관련 ①**고객**의 **사전동의** 등을 **의무화**하고, ②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를 강화(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

① (**고객 동의**) 미스매치 투자시 **고객**의 **사전동의** 절차 마련

② (**리스크관리 강화**)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상품 만기**를 **준수**하여 투자하는 등 **내규 마련 의무화**

2.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24.11.12. 규정 개정안과 동시 시행)

□ 금융투자업규정에서 마련토록 한 **리스크관리 내규** 관련 **업계 모범규준**으로, **권유-체결-운용-사후관리** 등 全과정에 관하여 **규율**

< 신탁·랩 운용시 내부 절차 주요 내용 >

항 목	내 용
만기 운용지시	· 계약서류에 가중평균만기 적시 의무화 · 가중평균만기 90일 초과시 투자자 동의 의무 · 미스매칭 시 발생 가능 위험 설명의무 부과
편입자산 평가	· (상장채무증권) 둘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의 평균값 · (비상장채무증권) 민평가가 있을 경우 해당 가격/민평가가 없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정가격
모니터링 기준 수립	· 거래금리 적정성 등 판단 관련 괴리율등 내부 기준 수립 의무화 · 이상 의심거래 발생 시 내역 및 사유 관리

자산 재조정등	· 투자자가 정한 만기 준수 운용 의무 명시 · 시장상황 변화 시 자산 재조정 등 실시
평가가액 제공	· 투자자 평가가액 제공 요청시 시가우선 제공
상시감시체계 구축	· 상시감시 방법, 이상의심거래 관리방법 및 보고절차, 사후 조치 방안 등 관련 세부기준 수립·운영 의무화
투자자 통지	· 시장상황 변동에 대한 투자자 통지기준 수립·운영 의무화

○ **신탁·랩**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이 **만기 미스매치**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고 투자를 하는 등 **투자자보호 강화**

- 또한, 부수적으로 향후 자금시장 경색과 같은 **경제 충격** 발생시 혼란없이 **투자자 환매 요청**에 **대응**하는 등 **시장안정**에도 **기여**

⇨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동 제도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

*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24.8월) : "고객자산에 대한 운용·관리 및 정보공시 의무와 같은 **사전규제 조항**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은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은 우수하나, 성과지표를 단순하게 규정 개정으로 설정한 것은 개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규정 개정 이후 제도안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위법·위규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 추진

□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Ⅳ-2-③	위법·위규사항에 대한 조치	위법·위규사항 확정시 제재 등 조치(연내)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7.5/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금감원 검사를 통해 신탁·랩 관련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상 문제점을 조사
☞ Ⅳ-2-③-I-1-ⓐ-1-채권형 랩·신탁 검사 결과(금감원)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추진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을 감안하여 일부 조문 수정 반영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협회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 지원
☞ Ⅳ-2-③-I-1-ⓑ-1-규정변경예고 보도자료</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4.5/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서 실행이 구체화되는 만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추진 계획을 수립
<table>
<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
<tr><td rowspan="2">1/4분기</td><td>신탁·랩 관련 투자자보호 등 추진방향 발표</td><td>'24.2월</td></tr>
<tr><td>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td><td>3월</td></tr>
<tr><td>2/4분기</td><td>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개정 작업</td><td>~6월</td></tr>
<tr><td>3/4분기</td><td>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개정 작업</td><td>~9월</td></tr>
<tr><td>4/4분기</td><td>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고시·시행</td><td>11월</td></tr>
</table>
- (난이도)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에 대한 투자자보호 등 규율은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제도 설계부터 관련 규정 개정, 현장 안착을 위한 모범규준 제정 등을 전 개선 추진하는 것으로 난이도가 높은 과제</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4.25/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서 실행이 가능하므로, 규정 개정 추진이 성과 측정 대표성이 있음
- (적극성) 방안 마련 및 규정 개정·시행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목표 설정</td></tr>
<tr><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5.5/20</td><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신탁·랩 관련 투자자보호 추진방향 발표</td><td>('24.1.17.) 금융위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발표</td><td>완료</td></tr>
<tr><td>금융투자업 규정 개정</td><td>('24.11.12.) 규정 개정안 시행</td><td>완료</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Ⅳ-2-③-Ⅱ-1-1-금융위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2-③-Ⅱ-1-2-규정 개정안 시행 보도자료</td></tr>
<tr><td>Ⅱ-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td>22.25/30</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Ⅳ-2-③-Ⅱ-2-1-규정 개정안 시행 보도자료
<table><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tr><td>신탁·랩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td><td>규정 개정</td><td>규정 개정안 시행</td><td>달성</td></tr></table></td></tr>
<tr><td>Ⅲ-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td>11/20</td><td>ⓐ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규정 개정에 맞춰 업계 공동으로 적용할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안착
☞ Ⅳ-2-③-Ⅲ-1-ⓐ-1-모범규준 보도자료(금투협)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투자자들이 만기 미스매치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고 투자를 하는 등 투자자보호 강화
▪ 신탁·랩 돌려막기 관행 막는다… 고객 사전 동의 받아야(한국일보, 2024.3.19.)
▪ 랩·신탁 만기 미스매치 투자시 사전동의… 신탁업 투자자보호 정비(서울경제, 2024.3.19.)
▪ 증권사 신탁·랩 만기 불일치 운용시 고객 동의 받아야… 리스크 절차도 강화(MTN뉴스, 2024.3.19.)
▪ '만기 미스매칭'땐 고객 동의… 미래에셋·교보증권 선제적 규정 마련(SBS Biz, 2024.9.13.)
-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동 제도개선을 긍정적 평가
☞ Ⅳ-2-③-Ⅲ-1-ⓑ-1-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국회입법조사처)</td></tr>
</table>

Ⅳ-3-①	상장 공모펀드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24개 자산운용사, 3개 증권사, 6개 수탁기관, 한국거래소 등 **34개사**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24.11.13.)됨에 따라, 거래소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25년 2분기** 중 상장 공모펀드 상품이 **출시**되어 거래될 예정

- 투자자들은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 중인 증권사 모바일앱(MTS)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기존 우량 공모펀드를 **저렴한 비용**으로 주식·ETF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어 **편익이 확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의 실행 효과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5.2분기 서비스 개시 이후 서비스 실행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Ⅳ-3-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의 실행 효과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	‘25.2분기 서비스 개시 이후 서비스 실행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법제화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7.5/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24.1.) 중 p.11의 ETF와 공모펀드의 수수료 차이 및 해외의 ETF의 지수연동 관련 규정 등
☞ Ⅳ-3-①-Ⅰ-1-ⓐ-1-(별첨) 기관·상품·인프라 혁신을 통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23년 중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동 방안을 마련하여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24.1.) 발표
☞ Ⅳ-3-①-Ⅰ-1-ⓑ-1-(보도자료) 공모펀드가 일반 국민들의 대표적인 투자수단이 되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6.5/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분기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
<table>
<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
<tr><td>1/4분기</td><td>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td><td>'24.1월</td></tr>
<tr><td rowspan="2">2/4분기</td><td>상장 공모펀드 실무 TF 구성·논의</td><td>4월</td></tr>
<tr><td>상장 공모펀드 운영방안 초안 마련</td><td>5월</td></tr>
<tr><td rowspan="2">3/4분기</td><td>상장 공모펀드 관련 운용사 추가협의</td><td>7월</td></tr>
<tr><td>상장 공모펀드 관련 샌드박스 신청</td><td>9월</td></tr>
<tr><td>4/4분기</td><td>상장 공모펀드 관련 샌드박스 지정</td><td>12월</td></tr>
</table>
- (난이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자본시장법령 특례를 적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을 신설하고,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는 과제이므로 난이도가 상당함</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6.75/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을 출시
- (적극성)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일부 배제하고 새로운 규율체계를 적용</td></tr>
<tr><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5.25/20</td><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td><td>('24.1.3.) 방안 발표</td><td>완료</td></tr>
<tr><td>상장 공모펀드 실무 TF 운영</td><td>(연중) 협회 등과 상시 협의</td><td>완료</td></tr>
<tr><td>상장 공모펀드 관련 샌드박스 지정</td><td>('24.11.13.) 샌드박스 지정</td><td>완료</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Ⅳ-3-①-Ⅱ-1-1-(보도자료) 공모펀드가 일반 국민들의 대표적인 투자수단이 되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Ⅳ-3-①-Ⅱ-1-2-(보도자료) 공모펀드 상장 샌드박스 현장 간담회</td></tr>
<tr><td>Ⅱ-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td>22.75/30</td><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Ⅳ-3-①-Ⅱ-2-1-(보도자료) 금융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4건 의결
<table><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tr><td>(장외)공모펀드 상장거래 추진</td><td>2건</td><td>34건</td><td>달성</td></tr></table>ㅇ 추가 설명 사항 (필요시 작성)
-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로 다수의 회사(34개사)가 샌드박스로 지정</td></tr>
<tr><td>Ⅲ-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td>9.25/20</td><td>ⓐ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투자자들은 상장 공모펀드는 향후 ETF처럼 낮은 비용(판매수수료·판매보수)으로 거래될 수 있음
☞ Ⅳ-3-①-Ⅲ-1-ⓐ-1-(보도자료) 공모펀드 상장 샌드박스 현장 간담회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투자자들은 은행·증권사 창구에서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증권사 모바일앱(MTS)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상장 공모펀드를 간편하게 거래 가능
☞ Ⅳ-3-①-Ⅲ-1-ⓑ-1-(보도자료) 공모펀드 상장 샌드박스 현장 간담회</td></tr>
</table>

Ⅳ-3-②	전환사채(CB) 불공정거래 방지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발표**('24.1.23, 간담회) 및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 완료 → '24.12.1일**부터 **시행중**

- **(공시 강화)** 최대주주가 **공시를 회피**하여 **전환사채를 확보**한 뒤 부당한 이익추구* 사례有 → 투명한 공시**를 통해 예방[규정 개정]

* 주가를 낮추는 방식 등으로 전환가액을 낮춰 주식전환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

** ❶ 발행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를 매입한 뒤 최대주주에게 재매각
→ 발행회사가 전환사채 매입시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선
❷ 회사가 최대주주에게 헐값에 콜옵션(전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
→ 콜옵션의 구체적 행사자, 정당한 대가 수수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개선

- **(리픽싱 합리화)** 발행기업의 **임의적**이고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조정**에 따른 **기존주주 이익침해** 방지*[규정 개정]

* ❶최초 전환가액의 70% 이하 리픽싱을 하기 위한 요건강화(정관에 사유를 기재해두면 가능→주주총회 절차 필수화)
❷증자·주식배당시 전환권 가치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조정 허용

<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관련 언론보도 내용 >

<이데일리(1.23)> "개미들 피눈물... 금융위, '비리온상' CB 손 본다"

(···) <u>CB를 악용한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CB 제도개선에 나섰다.</u> 투자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공시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전환가액 산정·조정이 없도록 제한하며, 적발시 엄벌하는게 골자다.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략)

<한겨레(1.24)> '지배력 확장 꼼수' 대주주에 넘긴 콜옵션, 앞으론 공시해야

(···) <u>금융위원회는 이런 행태를 규율하기 위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을 23일 발표했다.</u> 전환사채는 향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주식으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환가액이 낮을수록 적은 돈으로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특성으로 인해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24.1월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규정 개정(’24.12.1일~)이 다소 지연되어 구체적·가시적 성과 창출이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금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되어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정책효과가 시현될 수 있도록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개선과제 발굴

□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Ⅳ-3-②	구체적·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	제도개선 사항 집행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필요시 추가과제 발굴(연중)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7.5/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그간의 전환사채 제도개선 경과, 발행 현황, 불공정거래 사례 등을 파악
☞ Ⅳ-3-②-1-1-ⓐ-1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24.1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 Ⅳ-3-②-1-1-ⓑ-1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 보도자료</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6.25/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전환사채 제도개선을 위하여 기업·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통해 연내 마무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및 계획 설정
<table><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tr><td>상반기</td><td>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마련</td><td>‘24.상반기</td></tr><tr><td>하반기</td><td>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관련 규정 개정</td><td>‘24.하반기</td></tr></table>- (난이도)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계획함으로써 이행난이도가 적절함</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6.75/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성과지표는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적절한 성과지표로서 대표성 및 목표 적극성이 인정</td></tr>
<tr><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4.75/20</td><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tr><td>관련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td><td>(‘24.1.23) 간담회 개최</td><td>완료</td></tr><tr><td>관련 규정 개정</td><td>(‘24.12.1) 규정개정 완료</td><td>완료</td></tr></table>☞ Ⅳ-3-②-2-1-1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 보도자료
☞ Ⅳ-3-②-2-1-2 전환사채 제도개선 관련 규정 개정 보도자료</td></tr>
</table>

<table>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2.5/3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Ⅳ-3-②-2-2-1 규정변경예고 보도자료
Ⅳ-3-②-2-2-2 전환사채 제도개선 관련 규정 개정 보도자료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정 개정</td><td>규정 개정</td><td>규정 개정</td><td>달성</td></tr>
</table>
</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13.75/2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전환사채 관련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을 통해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전환사채 등이 중소·벤처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발전·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Ⅳ-3-②-3-1-ⓑ-1 연합인포맥스 기사 "금융위, '깜깜이·꼼수' CB 규정 손질...개정안 내달 시행"
☞ Ⅳ-3-②-3-1-ⓑ-2 조선비즈 기사 "금융위, CB·BW 악용 막는다...리픽싱 최저한도 넘기려면 주총 특별결의로만"
☞ Ⅳ-3-②-3-1-ⓑ-3 이데일리 기사 "CB 만기 전 취득 후 재매각, 앞으로 의무공시한다"
</td>
</tr>
</table>

Ⅳ-3-③	주주·기업가치 제고 위한 자사주 제도개선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유관기관**(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경제·금융단체**(상장협, 코스닥협, 금투협 등)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24.1월)

*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23.6.5.,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24.1.30,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 (주요내용) 상장기업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하여 소위 "자사주 마법" 금지, 자사주 관련 공시 강화 등

○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완료 및 시행 중** ('24.12.31~)

- **(자사주 마법 해소)**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법령에 **마련**[시행령 개정]

- **(공시 강화) 자사주 보유*** 및 **처분**** 관련 **공시**를 **강화**하여 편법적 활용에 대한 **시장의 견제** 유도

* 발행주식 5% 이상 자사주 보유시 사유, 추가매입·소각·매각계획 등 공시[시행령 개정]
** 제3자에 자사주 처분시 목적, 상대방 선정사유, 일반주주 권익영향 등 공시[규정 개정]

- **(왜곡 해소) 취득방식**(신탁* vs 직접취득) 간 **규제차이**를 이용한 규제우회 방지를 위해 신탁취득 관련 **규제 강화*** [규정개정]

* 회사가 신탁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자사주를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방식
** 신탁도 사전에 정한 금액에 미달하여 취득한 경우 직접취득과 동일하게 페널티 부과 (사유서 제출, 1개월 경과 후 새로운 자사주 매입 허용)

<참고: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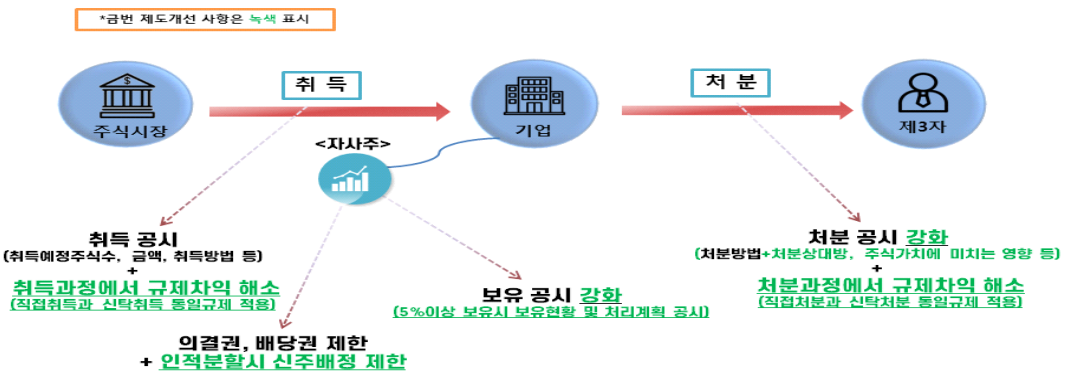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8.75/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법무부·공정위 등 관계부처,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그간의 자사주 제도개선 경과, 기업보유 현황, 해외사례 등을 파악
☞ Ⅳ-3-③-1-1-ⓐ-1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24.1월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 Ⅳ-3-③-1-1-ⓑ-1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 보도자료</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6.25/10</td><td>○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하여 기업·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통해 연내 마무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및 계획 설정
<table><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tr><td>상반기</td><td>주권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방안 마련</td><td>‘24.상반기</td></tr><tr><td>하반기</td><td>주권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방안 관련 하위규정 개정</td><td>‘24.하반기</td></tr></table>- (난이도) 자사주 마법 해소 등 그간 문제로 지적된 사항들의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의견을 조율하고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도 병행하는 등 적절한 난이도 설정</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5.5/10</td><td>○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성과지표는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적절한 성과지표로서 대표성 및 목표 적극성이 인정</td></tr>
<tr><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6/20</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tr><td>관련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td><td>(‘24.1.30) 간담회 개최</td><td>완료</td></tr><tr><td>관련 하위규정 개정</td><td>(‘24.12.31) 규정 개정</td><td>완료</td></tr></table>☞ Ⅳ-3-③-2-1-1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 보도자료
☞ Ⅳ-3-③-2-1-2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관련 시행령 등 개정 보도자료</td></tr>
</table>

<table>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3/3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Ⅳ-3-③-2-2-1 입법예고 보도자료
Ⅳ-3-③-2-2-2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관련 시행령 등 개정 보도자료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주권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td><td>규정 개정</td><td>규정 개정</td><td>달성</td></tr>
</table>
</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12.75/2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자사주 마법 해소), 공시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주주의 편법적인 자사주 활용을 방지하여 일반투자자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
☞ Ⅳ-3-③-3-1-ⓑ-1 연합인포맥스 기사 " '자사주 마법' 봉쇄...개정안 이달 말부터 시행"
☞ Ⅳ-3-③-3-1-ⓑ-2 문화일보 기사 "대주주 지배력만 높이는 '자사주 마법' 그만...인적분할시 신주배정 제한"
☞ Ⅳ-3-③-3-1-ⓑ-3 경향신문 기사 "대주주 지배력 높이는 '자사주 마법' 막는다...31일 시행
</td>
</tr>
</table>

Ⅳ-3-④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독립성 강화 등 기업 내부관리체계 개선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추진경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향 발표(부위원장 주재 간담회, 4.2.) 이후, 기업계·회계업계 등 관계기관 T/F 운영(6회)

※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등이 6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17년 외감법 전면개정시 도입

- 회계업계가 제기해온 회계투명성 저해 우려에 대해서 금융위원장 주재 회계업계 간담회(10.31.)를 통해 의견수렴 및 정책취지 설명

⇒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업계, 회계업계의 합의**를 도출하여,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 발표**(12.30.)

○ (**향후 계획**) **'25년 중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평가에 착수**

⇒ '25.상반기 중 유예신청 기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10월 **증선위에서 유예대상을 결정**하면, 빠르면 **'26년부터** 주기적 지정이 **유예**

○ (**기대효과**) '감사인 지정 유예'라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는 **선순환적 효과**

-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감독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부담 완화**

-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 및 감독**할 수 있도록 유도함에 따라 **일반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에 기여

- **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 제고**를 통해 나아가 근본적으로 **회계투명성 및 회계신인도를 개선**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이 해소되는 등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성과가 기대

* 국책연구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은 고질적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낮은 회계투명성,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등을 지목('23.2월)

<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관련 언론보도 내용 >

<문화일보(12.30)>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 유예

(···) 금융위는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핵심지표들을 정량화해 절대평가로 우수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전체 1000점 중 800점 이상 획득하면 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등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지원조직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등이 주요 평가대상이다.**

<내일신문(12.30)> 금융위, 주기적 지정제 3년 유예 검토

(···) 금융당국이 기업과 회계업계의 의견을 수렴, 일정 평가기준 이상의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 3년간 지정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더라도 감사독립성 등이 훼손되지 않을 만큼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적 허용 기준을 마련했다.**

<아시아경제(12.31.)> "주기적 지정제 유예기준 공개...35~40곳 통과 가능성"

(···) 감사위원의 회계전문성이 높을수록, 전담지원조직이 전문적일수록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750여개 중 5~10%인 35~40개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보다 많은 80개 기업 정도는 기업이 노력하면 기준점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시아경제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007면 경제

'주기적 지정제' 유예 기준 공개… 35~40곳 통과 가능성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한해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주기적 지정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해주는 정책의 세부기준이 31일 공개됐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이 많을수록, 감사위원의 회계전문성이 높을수록, 감사전담지원조직이 전문적일수록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날 이같은 내용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

주기적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상장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된 2018년 후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다. 2024년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749개다.

세부기준은 정량평가된 방식으로 구성됐다. 당국은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한 회사가 원칙적으로 지정유예 대상이 되도록 했다. 감사기능 독립성에 '가장 높은 300점'이 부여됐고, 감사지원조직 실효성(250점), 감사기구 전문성(200점),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150점), 재체 노력(100점) 등으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외부표창(50점)에 따른 가점, 사회적 물의(50점)에 의한 감점 요인이 덧붙여졌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많고 위원 회계전문성 높을수록 심사 통과 가능성 높아져

태현수 금융위 자본시장국 회계제도팀 팀장은 "특정 지표 하나가 전체 결과를 좌우하지 않도록 구성했다"며 "독립성이 있다면 기업이 주기적 지정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감사기능 독립성의 비중이 가장 높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도 개시 전 감사제약 제결 여부를 따지는 이유는 회계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게 연초 시즌이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장의 회계 전문성도 높이 산다. 전담 지원조직의 실효성을 높이고 '깜깜이' 식 지인 추천 대신 기업이 사인선임 및 공모를 투명하게 진행해도 목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평가실무는 감사인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지배구조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ESG기준원이 지원할 예정이다.

태현수 팀장은 "자체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전체 750여개 중 5~10% 정도인 35~40개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확정적 수치는 아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1분기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에 대한 법령개정 및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친다. 이후 6~7월 중 지정유예를 원하는 회사 신청을 받아 3분기 중 평가위원회 평가와 증선위 의결을 거쳐 유예 대상을 결정한다.

차민영 기자

문화일보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016면 경제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 유예

회계·감사 지배구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기업에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 이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회계법인 등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 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 당시 도입됐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 4월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한 기업의 경우 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회계업계에서 회계투명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해 '면제' 대신 3년간 '유예' 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선정 대상 기업은 엄격히 제한된다.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정 외감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1년 이상 지정 감사를 받은 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있어도 안 된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모두 749개로 이 중 600개 정도 기업이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현수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35~40곳 정도 기업의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80개 정도 기업은 노력하면 기준점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핵심지표들을 정량화해 절대평가로 우수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전체 1000점 중에서 800점 이상을 획득하면 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 등 감사 기능 독립성(300점)과 감사기구 전문성(200점), 감사 지원조직 실효성(250점),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150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체 노력(100점)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다. 별류업 우수기업 선정 등 외부표창을 받았을 경우 50점 가점, 위법·부당 행위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50점이 감점된다.

박정경 기자

내일신문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010면 금융

감사 독립성·전문성 우수기업 '지정감사 3년 유예'

당국,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기준 발표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기업 749곳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대상 중 5~10% 가능
'감사 지원조직 실효성' 평가 배점 높아

감사 독립성과 전문성 등 외부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회계개혁의 골자로 손꼽히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당국이 일정 기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독립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주기적 지정제를 전면 상장기업에 일률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기업과 회계계의 의견을 수렴, 일정 평가기준 이상의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지정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제 적용에 예외를 둔 것으로 재계 회계개혁의 결혼이 아쉬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더라도 감사독립성 등이 훼손되지 않을 만큼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적 허용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한 기업에 3년간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인데, 우수기업으로 평가·선정되면 의무감사인 기간이 9년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평가기준은 5대 분야, 17개 항목으로 전체 1000점 중 800점 이상을 받으면 된다.

신청대상은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경우다. 최근 3년 내 결격 사유(횡령·배임,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다.

신청이 가능한 7천750사의 상장기업 중 올 12월 기준 금융당국이 평가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발한 결과 5~10% 가량이 기준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현수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은 "5~10%인 정수가 높게 나와 무난히게 유예 대상이 될 것 같고, 최대로 보면 노력 여하에 따라 80곳 정도가 기준점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만은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5가지 평가분야는 △감사기능 독립성(최대 300점) △감사기구 전문성(210점) △감사지원 조직 실효성(250점)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150점)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100점)이다.

감사기능 독립성 중 감사위원을 1인 분리선출하면 100점, 2인 이상이면 300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다. 감사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면 50점을 받는다. 2023년 기준 감사위원 1인을 분리선출하는 점수는 152개사, 2인 이상은 87개였고 나머지는 0개. KOSPI 200 기준 감사위원이 전원 사외이사인 기업 비중은 91.1%다. 감사기구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장의 회계전문성이 100점, 회계·재무전문가 규모 50점, 회계전문성 확보 여부 50점이다.

감사 지원조직의 실효성은 250점으로 배점이 두 번째 높은 분야다. 감사위원회의 지원조직 평가·임면 동의 권한이 있으면 80점, 감사 전담지원조직 규모 50점, 전담지원조직 전문성(회계전문가 규모) 40점 등이다.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은 경직된 선임·교체절차 투명성이 14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태 팀장은 "기업들이 90점 차이로 에서 특정 항목에만 기준을 충족한 게 아니라 가장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을 두고 있다"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면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들은 모든 평가분야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지정 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6~7월 중 지정 유예를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내년 3분기 중 평가위원회 평가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예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민기기자 ceirin@mail.com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8/1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전문연구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저조한 회계투명성과 지배구조 등을 지적 →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도록 정책방향 마련 필요
- 국회정무위 및 감사원도
☞ Ⅳ-3-④-I-1-ⓐ-1-자본연 보고서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계, 회계업계, 투자자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필요성 논의(4.2.)
☞ Ⅳ-3-④-I-1-ⓑ-1-간담회 실시</td></tr>
<tr><td>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7/10</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계획 단계부터 구체화 단계까지 의견수렴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이전에 체계적으로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계획의 구체성 존재
<table><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일정</th></tr><tr><td>2/4분기</td><td>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등 인센티브 발표</td><td>4월</td></tr><tr><td>3/4분기</td><td>우수 지배구조 평가 세부기준 등 발표</td><td>8월</td></tr><tr><td>4/4분기</td><td>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td><td>12월</td></tr></table>- (난이도) 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지정제 완화를 주장하는 기업계와 회계투명성을 위해 지정제 고수를 주장하는 회계업계 간의 치열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만큼 평가 세부기준에는 상당한 난이도가 존재</td></tr>
<tr><td>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7.75/10</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시행령 개정은 발표된 방안을 구체화하여 시행 준비가 완료된 것이라는 점에서 대표성이 있음
- (적극성) ‘25.10월 유예대상이 결정될 예정이나,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 개정시기를 이보다 이른 시점인 ’24년까지로 과감하게 설정</td></tr>
<tr><td>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5.75/20</td><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tr><td>우수 지배구조 평가 세부기준 등 발표</td><td>12.30. 보도자료 배포</td><td>완료</td></tr><tr><td>실무 T/F 운영 실적</td><td>5.2, 6.11., 6.18, 9.10, 11.12, 12.19. 등 총 6회 유관기관 T/F 운영</td><td>완료</td></tr><tr><td>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td><td>방안 발표 후 입법예고 준비 중</td><td>일부완료</td></tr></table>☞ Ⅳ-3-④-II-1-1-방안 발표 등</td></tr>
</table>

<table>
<tr>
<td>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td>
<td>22/30</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6회에 걸친 관계기관 T/F 논의를 거쳐 ‘24.12.30. 방안 발표 (Ⅳ-3-④-II-2-1- ‘방안 발표 등)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4년 목표치</th><th>‘24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td><td>개정 완료</td><td>방안 발표 후 입법예고 준비중</td><td>일부 완료</td></tr>
</table>
ㅇ 추가 설명 사항
- 주기적 지정유예에 대한 기업계와 회계업계의 <u>입장 차이가 첨예</u>했던 만큼 ‘24년 내 <u>합의된 방안 마련도 큰 의의</u>가 있음
-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기업계, 회계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u>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상황</u>
- ‘25.10월 중 지정유예를 결정할 것인 만큼 <u>’25년 상반기 중 외부감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음</u>
</td>
</tr>
<tr>
<td>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td>
<td>15.25/2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현재 기준 80개* 전후의 기업들이 지정감사를 유예받음으로써 지정감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다만, 절대평가방식인 만큼 지배구조 개선 여하에 따라 유예규모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음)
* 금융위, 상장협, 금감원, ESG기준원 공동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 예시: Ⅳ-3-④-III-1-ⓐ-1-(언론기사)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정감사 부담 완화
- 기업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는 한편, 우리나라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이 해소되어 자본시장 선진화도 기여
☞ 예시: Ⅳ-3-④-III-1-ⓑ-1-(보도자료)
</td>
</tr>
</table>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Ⅰ-3-①	잔여예산 활용방안 마련	데이터 오류 등 환급 누락 차주에 추가 지급(‘25.2월말)
		보조금 정산 이후 국고 반납(‘25.6월)
Ⅰ-4-①	분기별 추진계획의 구체성 보완 필요	’25년 자체평가 계획 수립시 분기별 추진계획 상세화(‘25.3월)
Ⅱ-3-①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방안 지속 추진 및 성과지표 검토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방안 지속 추진 및 성과지표 검토(‘25년중)
Ⅱ-3-②	외국계 금융회사 건의사항 지속 검토 및 소통	외국계 금융회사 건의사항 지속 검토 및 소통(‘25년중)
Ⅲ-1-①	온라인 금융상품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발표	온라인 금융상품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발표(‘25년 중)
Ⅲ-3-①	홍보 강화	홍보 컨텐츠(광고 영상, 유튜브 숏츠 등) 제작(25.1분기)
		채무자대리인제도 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대응방법 홍보(‘25년 중)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 피해 및 채무자대리인 이용제도 안내 관련 보도자료 배포(’25.1월, 10월)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대상 채무자대리인 제도 안내 관련 워크샵 개최(반기별)
	대부업법 및 하위규정 시행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5.7월)
		대부업법 시행(’25.7월)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적극적 피해구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25. 하반기)
		채무자대리인 지원실적 지속 점검(분기별)
		채무자대리인 이관 절차 개선('25.1분기)
		금감원 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담인력 확대 ('25.1분기)
		채무자대리인 신청창구 확대 - 서금원('25.1분기), 법률구조플랫폼('25.12월)
	선제적 대응	'25년 채무자대리인 운영방안 발표('25.1월)
		채무자대리인 자진취하 자에 대한 재신청 안내(반기별)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25.3분기)
Ⅲ-3-③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시 불공정거래 관련 안건 추가 (가상자산과 합동 간담회 실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실시('24.7.19.) 1년 경과 이후 간담회 실시('25년 하반기)
Ⅳ-1-②	ATS 및 비상장주식 플랫폼 관련 운영실적 등 계량화된 성과지표 추가	'25.上 중 플랫폼 운영경과 등을 토대로 적절한 성과지표 모색
Ⅳ-2-③	위법·위규사항에 대한 조치	위법·위규사항 확정시 제재 등 조치(연내)
Ⅳ-3-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의 실행 효과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	'25.2분기 서비스 개시 이후 서비스 실행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법제화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
Ⅳ-3-②	구체적·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	제도개선 사항 집행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필요시 추가과제 발굴(연중)

[붙임] 2024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 사무를 담당

□ 핵심기능

혁신금융	▪ 혁신·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주력산업 경쟁력제고 ▪ 모험자본 공급저변 확대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 핀테크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혁신금융서비스 육성 ▪ 인터넷 전문은행 등 신규 플레이어의 금융산업 진입 촉진
포용적 금융	▪ 금융소비자보호와 불합리한 금융회사 관행 개선 ▪ 정책서민금융 운용 · 중금리 대출 활성화 ▪ 자영업자·고령층·청년층을 위한 지원
금융안정	▪ 금융안정 상시점검·대응체계 운영 ▪ 체계적·안정적 가계부채 관리 ▪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신뢰금융	▪ 불법사금융·금융사기 근절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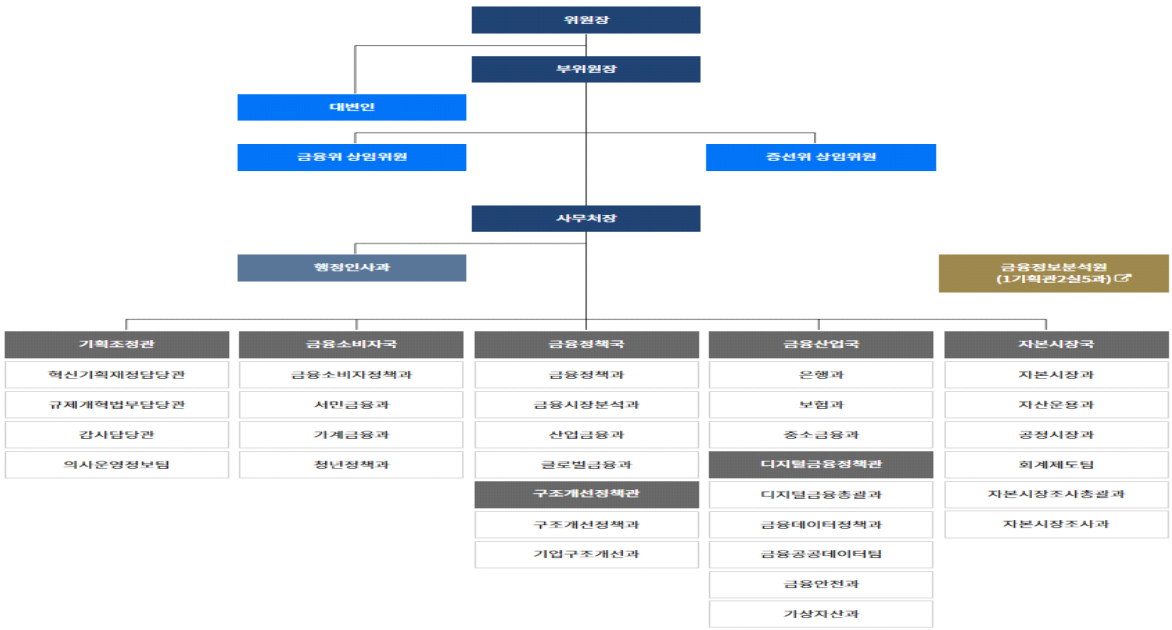

2. 전략적 목표체계

임무	1. 금융산업의 선진화 2.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3. 건전한 신용질서·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 4. 금융소비자 보호

비전	1. 혁신적 금융 2. 포용적 금융 3. 신뢰받는 금융

전략목표	I.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II.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III.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IV.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성과목표	1.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1. 금융서비스 고도화 등 금융권 혁신 지원	1.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
	2. 금리경쟁을 촉진하여 금리부담 완화	2. 핀테크 기업 육성 등 미래금융 대비	2. 서민·청년층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2. 불공정거래 근절 및 투자자 보호 강화
	3.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3. 금융산업 글로벌화 추진	3. 금융범죄 방지 및 피해구제	3. 일반 투자자 권리 및 신뢰성 제고
	4. 기업 성장 위한 금융지원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Ⅰ.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성과지표	가계부채 잔액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가계신용
- 조사기관 : 한국은행
- 조사대상 : 금융회사 등
- 조사방법 : 한국은행에서 금융회사 등의 가계신용 통계 취합
- 측정산식 : 가계대출 + 판매신용

□ '24년 측정결과

○ '24.3분기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13.8조원으로 전년 동기(1878.4조원) 대비 1.9%(+35.4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가계신용은 '20~'21년 저금리 등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22~'23년에는 고금리·고물가 등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 '24년에는 기준금리인하·부동산 상승 등 어려운 관리여건 속에서도 DSR 중심의 여신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 연도별 가계신용 증가규모(전년 대비 증가율) (단위: 조원, %) :
('20)+128.9(8.1%) ('21)+133.4(7.7%) ('22)+4.7(0.3%) ('23)+17.9(1.0%) ('24.3Q)+35.4(1.9%)

최근 5년간 가계신용 잔액/증가율(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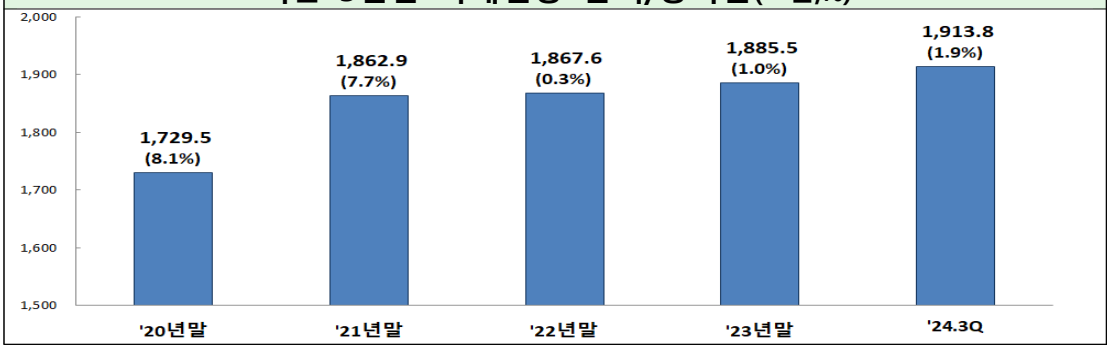

□ 성과분석

○ **거시경제 · 부동산 상황**에 맞춰 **적기 대응**하였습니다.

-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연초**부터 **대출금리**가 **하락**하였고, **수도권 중심 부동산 상승**으로 4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어,

-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규제수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관리**를 유도하였습니다*.

* 4월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규제를 강화한 9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
월별증감(조원): (4)+4.1 (5)+5.3 (6)+4.2 (7)+5.2 (8)+9.7 (9)+5.2 (10)+6.5 (11)+5.0 (12)+2.0

○ 그 결과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로 **관리**하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년 연속 하향 안정화***되었습니다.

* 가계부채/GDP 비율(%) : ('21)98.7 → ('22)97.3 → ('23)93.6 → **('24.3Q)90.8**

· **우리나라**의 **GDP/가계부채 비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글로벌 4위)이나 지속적인 **안정화 노력**으로 **대외 신인도**가 **제고**되었습니다.

○ **상반기** 중 **지속 상승**하던 **서울 APT**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규제 강화** 이후 **9월 하락 전환***하는 등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였고,

* 전월比 실거래가 증가율(%): ('24.1)+0.3 (2)0.5 (3)0.1 (4)0.7 (5)0.9 (6)1.6 (7)2.2 (8)1.5 **(9)△0.01**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정책효과 및 금융권 자율관리 등에 기인

- 이는 **한국은행이 10월, 11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한은, 10.11일 기준금리 인하 결정 배경 中)

* 주택가격 및 가계대출도 거시건전성정책이 원활히 작동하면서 당분간은 가계부채 리스크가 관리되고 있다고 보았음(한은, 11.28일 기준금리 인하 결정 배경 中)

[참고: **한국은행은 8월 기준금리 동결(3.50%) 배경 중 하나로 부동산 상승을 지**목]

▪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질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現 상황에서는 **금리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

□ 향후 추진계획

ㅇ ‘25년에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로 **관리**하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겠습니다.

- **금융권**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및 **리스크 관리기조**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성과지표	금융업권 총자산(조원)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금융업권 총자산(조원)
- 조사기관 : 금융감독원
- 조사대상 : 최근 5년간 금융업권(은행, 보험, 저축은행, 증권) 총자산
- 조사방법 : 각 회사 및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
- 측정산식 : 합산

□ '24년 측정결과

○ 2024년 9월말 기준 금융업권 총자산은 **6,651.5조원**입니다.

- 현재 산출 가능한 9월말 기준 통계로 **전년말 대비 310.5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금융업권 총자산 변동 추이>

(단위 : 조원)

분류 \ 시기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9월
은행	2,935.0	3,167.2	3,467.7	3,776.6	4,115.1	4,302.9	4,503.7
보험	1,155.2	1,239.0	1,321.4	1,358.7	1,310.1	1,224.6	1,256.9
증권	439	483	609	621	608.0	686.9	770.8
저축은행	69.5	77.2	92.0	118.2	138.6	126.6	120.1
계	4,598.7	4,966.4	5,490.1	5,874.5	6,171.8	6,341.0	6,651.5

□ 성과분석

○ **예금·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가장 **적합**한 **예금·보험상품**에 **가입**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예금 약 5.5만 건, 보험 약 12.4만 건 등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상품에 가입

- **소비자**가 **요청**시 요양기관이 보험회사로 **실손보험 청구**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하였습니다.

* (병원) '24.10.25일부터, (의원·약국) '25.10.25일부터 시행

* '25.1.31일 기준, 요양기관 4,407개 참여 확정(병원 917개, 보건소 3,490개), 앱 회원 가입자 수 10만명, 청구완료건수 11.3만건(제3자 청구 1.6만건 포함)

○ **금융혁신 가속화**를 통한 **미래금융 기반 강화**를 위해 **핀테크 지원강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고금리 기조 등 핀테크 기업의 투자·경영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및 투자여력을 확대**하였습니다.

*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지원(2,597억 공급) 및 「핀테크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지속(누적 3,694억 투자), 네트워킹 기회 제공(오픈 네트워킹 데이, 핀테크위크) 등 지원체계 고도화

* 샌드박스 희망 기업들이 신속하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운영 절차를 개선('24.5월)

-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마련('24.4월)하여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4대 목표, 15대 과제**를 마련하고 신용정보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중**('24.9월~)입니다.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인 아세안**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역할·기능**을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신규진출 및 영업확장**을 지원하였습니다.

* 「한-아세안 금융협력포럼」 개최, 현지 금융당국 면담, 양해각서(MOU) 체결 등 K-금융 세일즈를 위한 지원활동 전개

** 해외금융당국과 「금융협력포럼」개최, 해외사업 관련 모든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통합DB 구축 추진

□ 향후 추진계획

ㅇ 디지털 신기술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 확대 등 **금융혁신을 지속** 해 나가겠습니다.

ㅇ **미래금융 기반 강화**를 위해 핀테크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 국내 금융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ㅇ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을 **의원 및 약국**에도 **적용**('25.10.25일~) 하여 **더 많은 국민**이 **보험금**을 **편하게 청구**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금융교육 실적(단위: 만명)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금융교육 실적
- 조사기관 : 금융감독원
- 조사대상 : 금융교육협의회 소속기관
- 조사방법 : 금융교육협의회 소속기관의 금융교육 실적 취합
- 측정산식 : 합산

□ '24년 측정결과

○ '24.1월~9월 기간 중 금융감독원 등 **금융교육협의회 소속 16개 교육기관***의 **교육인원**은 총 **67만 3,005명****입니다.

* ·(유관기관) 금감원·예보·서금원·신복위·주금공·신보, (교육기관) 청교협·시교협·소비자보호재단, (금융협회) 은행연·투교협·생보협·손보협·저축은행중앙회·신협중앙회·여신협

** 이수여부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실적(134.9만명)과 금융회사를 통한 초·중·고 1사1교 금융교육(11.7만명, 상반기 기준) 제외

- **대면교육을 전면 재개**함에 따라 **고령층**(120.4%↑)과 **군장병**(91.6%↑) 대상 교육 증가 등 **'24년 1~9월 교육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0.2%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금융교육 실적

(단위 : 만명, %)

구 분	'21년	(1~9월)	'22년	(1~9월)	'23년	(1~9월, A)	'24.1~9월 (B)	증감율 ((B-A)/A)
청소년	19.7	9.7	26.8	13.1	31.1	16.4	18.9	15.1
대학생	13.6	7.7	19.9	9.9	21.8	9.6	8.1	△16.2
군장병	0.6	0.3	5.1	3.5	11.1	7.5	14.3	91.6
고령층	1.2	0.4	4.4	3.2	10.0	4.3	9.6	120.4
취약층	10.6	7.7	11.7	9.7	14.6	10.8	11.8	9.3
기 타	2.4	1.4	5.7	4.5	7.4	3.0	4.6	52.2
합 계	**48.1**	**27.1**	**73.6**	**43.9**	**96**	**51.6**	**67.3**	**30.2**

□ **성과분석**

○ 다양한 **금융소비자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금융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활용**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 '**초등 늘봄학교**',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 등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통한 **금융교육**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 '**FSS 어린이 금융스쿨**[1](금감원), '**Play BOOKiT**[2](은행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6개월간 17차시에 걸쳐 실시되는 온라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24년 6~7월 신청자 모집 결과 400명 정원에 총 3,400명이 지원(8.5:1)

2) 금융교육을 위한 추천도서 및 관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교육 실시

  - 아울러, **아동.청소년층**의 **금융교육**에 대한 **흥미 유발**을 위해 **체험형 교육 콘텐츠***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 금융뮤지컬 공연, 보드게임,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온라인 게임 등

- **(금융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실습**을 통한 **디지털 금융교육***과 사례소개 중심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강화**하였으며,

* 모바일뱅킹 이용법 및 간편결제, 마이데이터 등 핀테크 서비스 활용법 등

  - **북이탈주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책자, 동영상** 등을 **제작.배포**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대상 **체험형 다회차 금융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 특히, '24년도에는 **청년의 금융역량 제고**에 초점을 두고 **금융교육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청년 금융역량 캠페인)** 금융위, 금감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재단이 공동으로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24.7.2.~11.30.).

* '24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의결안건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방안'에 의거

  - 구체적으로, **캠페인 영상 배포**(서금원, 투교협), **금융교육 홍보 부스 운영**(금감원, 서금원, 투교협 등), **금융권 공동 금융교육 캠페인 소문내기 이벤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총 13개 금융사(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광주은행, 교보생명, 한화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신한카드, 삼성카드, 웰컴저축은행, 투교협 등)가 각 금융회사 SNS 등을 통해 캠페인 및 금융교육 정보 공유

-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1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420명**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사회초년생 금융교육) 군 병사 월급 인상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군장병 금융교육을 확대**하였으며,

  * 불법사이버 도박,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군장병 피해사례 빈발 주제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콘텐츠 제작·활용

  •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실생활 중심의 금융 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 대학생 '실용금융 강좌'(금감원), '정책금융 강좌'(신용보증기금), '금융투자캠프'(투교협) 등

□ 향후 추진계획

○ 아동·청소년, 청년, 취약계층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의 품질**과 **실시율**을 **제고**하여 **교육 인원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29년까지 교육 인원수 100만명으로 확대

- 특히, '25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는 만큼 **학교 관계자·금융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청소년 대상 교육**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 또한, '24년중 **금감원**에서 관계기관들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적극 활용**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정례적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 ·청소년 : 여가부, 늘봄학교 : 교육부, 군장병 : 수방사, 전북도 등

성과지표 |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
- 조사기관 : 한국은행
- 조사대상 : 바금융법인기업
- 조사방법 : 한국은행에서 관련 통계 취합(자금순환표)
- 측정산식 : 채권발행 + 지분증권

□ '24년 측정결과

○ **'24년 1~3분기**의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비중"은 전년 **동기 실적***을 **0.3~1.6% 상회**하여,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 '23년도 1분기 52.2%, 2분기 52.4%, 3분기 52.0%

<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비중 추이(%, 한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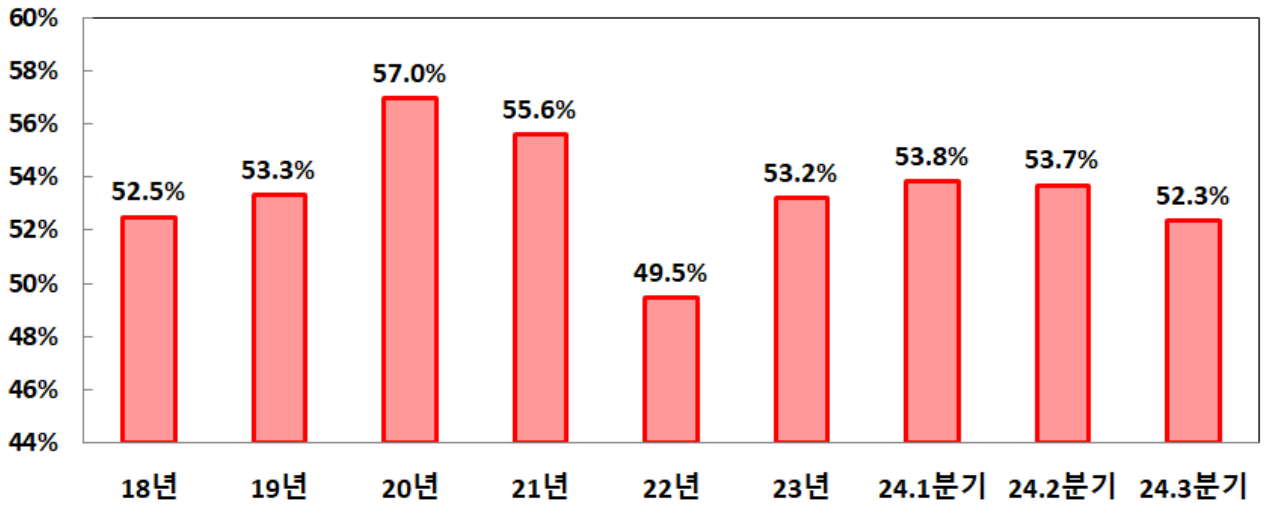

□ **성과분석**

1 상장기업의 **기업 가치** 및 **주주환원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거래 인프라**를 **개선**하여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을 조성하였습니다.

❶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2.26일)하고,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밸류업 **공시·정보 플랫폼** 구축, **밸류업 지수** 및 **연계 ETF** 개발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였습니다.

⇨ **상장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소통**하고 **주주가치 존중기업**이 **시장**의 **평가·투자**를 받도록 지원하여,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❷ 증권 **거래시간 연장**, **신규호가** 도입, **수수료 인하** 등 「**ATS 운영방안**」을 **마련**(5.9일)하고,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발표 등 **ATS 출범**을 위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 복수시장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증권거래 혁신** 및 **투자자 편의**를 증진하고, **인프라 다양화**를 통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2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❶ **포상금** 개편·**리니언시** 도입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조기 포착**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엄정대응**하였습니다.

⇨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과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합니다.

❷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처벌 강화**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완료**하였습니다.
(10.22. 자본법 개정, 3.31. 시행)

⇨ 불법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 저해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매도 재개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❸ **신탁·랩**의 만기 미스매치 투자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11.12. 규정 개정안 시행)

⇨ 투자자들이 **만기 미스매치**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고 투자하고, **경제 충격**시 **시장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공모펀드의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회계제도**를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❶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샌드박스로 지정**('24.11.13.)됨에 따라, **'25년 2분기** 중 **상장 공모펀드**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 투자자들은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증권사 모바일앱(MTS)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기존 우량 공모펀드를 **저렴한 비용**으로 주식·ETF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❷ 대주주의 지배력이 전환사채 등을 통해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공시*** **및 전환가액 조정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 공시

** 전환가액을 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하려는 경우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종전에는 정관으로도 조정 가능) 등

⇨ 불공정거래 예방을 통해 **일반주주 보호**가 강화되고, 전환사채 등이 **중소·벤처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발전·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❸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고 **공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자사주 보유현황, 목적, 처리계획 외에 자사주 처분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

⇨ 자사주가 **주주환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❹ 기업과 회계업계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유예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12.30. 발표)

⇨ 주기적 지정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감사품질**을 **개선**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합니다.

□ 향후 추진계획

❶ 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지속 독려**하면서, **세제지원, 우수기업 표창, 지수리밸런싱, 백서발간** 등 잔여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❷ '25.3월 **ATS**가 **원활히 출범·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25. 상반기 중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❸ '25.3월말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준비·시행**하겠습니다.

❹ 거래소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25년 2분기** 중 **상장 공모펀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과 협력**하겠습니다.

❺ **금년 중**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 및 유예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 보완**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